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31호

2023. 11. 30.(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3-3297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4

제2023-3299호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 22

◈ 고 시

제2023-512호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8

제2023-51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49

제2023-520호 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52

제2023-52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72

제2023-522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75

제2023-52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까치산역) ····· 80

제2023-52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82

제2023-52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85

제2023-527호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8

제2023-528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60

제2023-529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78

제2023-531호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2

◈ 공 고

제2023-325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 187

제2023-327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88

제2023-3277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89

제2023-328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94

제2023-3284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197

제2023-3285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00
제2023-3291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205
제2023-329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 206
제2023-3298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07
제2023-330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24
제2023-3304호 측량업 등록 공고 ····· 226
제2023-331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227
제2023-3314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228
제2023-3319호 2023년~20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 229

◈ 서울특별시교육청

[훈 령]

제21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230

[입법예고]

제2023-3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233

◈ 구 고 시

제2023-1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255
제2023-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대문구) ····· 267
제2023-2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 270
제2023-201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272
제2023-12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금천구) ····· 281
제2023-199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고시(강남구) ····· 286
제2023-200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강남구) ····· 287

◈ 구 공 고

제2023-1468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종로구) ····· 295

제2023-10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중구) ····· 299
제2023-179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열람공고(노원구) ····· 301
제2023-17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마포구) ····· 302
제2023-217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구로구) ····· 314
제2023-19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 316
제2023-191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 317
제2023-205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송파구) ····· 318

◈ 사업소고시

제2023-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20
제2023-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21
제2023-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21

◈ 기 타

제2023-37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22
제2023-3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23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7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023. 3. 13.)」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선정 시 공통으로 적용할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을 마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사업 관리주체 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인평가서 작성 양식과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방법 등 규정
○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등 규정
-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중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나. 수행계획 및 방법의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 시행일 : 공고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전화: 02-2133-1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2133-1078

(2) 이메일: jinhwanpark@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도로시설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및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주택) ▸건설기술 ▸건설기술 자료실 ▸지침/방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1.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나. 기술인평가서(양식2)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CD 또는 DVD (책임기술인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라. 청렴서약서(양식4)
   마.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	소계	70		
	1)기술인 등급·경력	35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2)유사용역수행 실적	2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4)직무 적정성	5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반영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1)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
	2)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10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수	우	미	양	가
수행 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조직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기술인 등급·경력 환산점수: "수행실적 평가" 참여기술인 등급·경력 평가점수 × 35/21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환산점수: "수행실적 평가"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 × 20/49

다) 업무중첩도 환산점수: "수행실적 평가" 업무중첩도 평가점수 × 10/10

라) 직무적정성 환산점수: "수행실적 평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및 업무정지 평가점수 × 5/7

2) 책임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별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가.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다.
2)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4)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5)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 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나. 감점기준
1)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가)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나) 칼라 사용 위반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3)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 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4)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1)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2)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며, 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실명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조직의 경험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자료작성 불필요

라) '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 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 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 요구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 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15-1, 15-2 …, 15-15)

다)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첨부 2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대상 구조물에 대한 이해 포함)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진단 대상 구조물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

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사업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용역대상 구조물의 특수성 및 안전진단 필요성, 안전진단 주안점 등을 사업책임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점검 전담팀(참여기술인 및 등급 명시)의 구성과 인력투입계획 그리고 장비투입계획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별 진단항목 및 진단방법을 기술하는 경우 기본과업 범위 내의 진단을 우선 기술하되, 필요시 선택과업 범위 내의 진단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구분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진단방법 작성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며, 공용중인 시설의 진단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당해 과업수행에 따른 품질, 진단 현장의 교통통제 및 고소작업 등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기술하고 용역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1) 책임기술인은 당해 과업의 준비과정에서 파악된 용역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분석, 보수보강 및 장래 유지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용역기간, 용역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진단기술 발전, 과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 및 용역 결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당해 용역을 시행하면서 추진할 개선사항을 제안형식으로 제시한다.

(4) 당해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 제시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표지, 목차포함 총 15쪽 이내)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5-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검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절------취------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23.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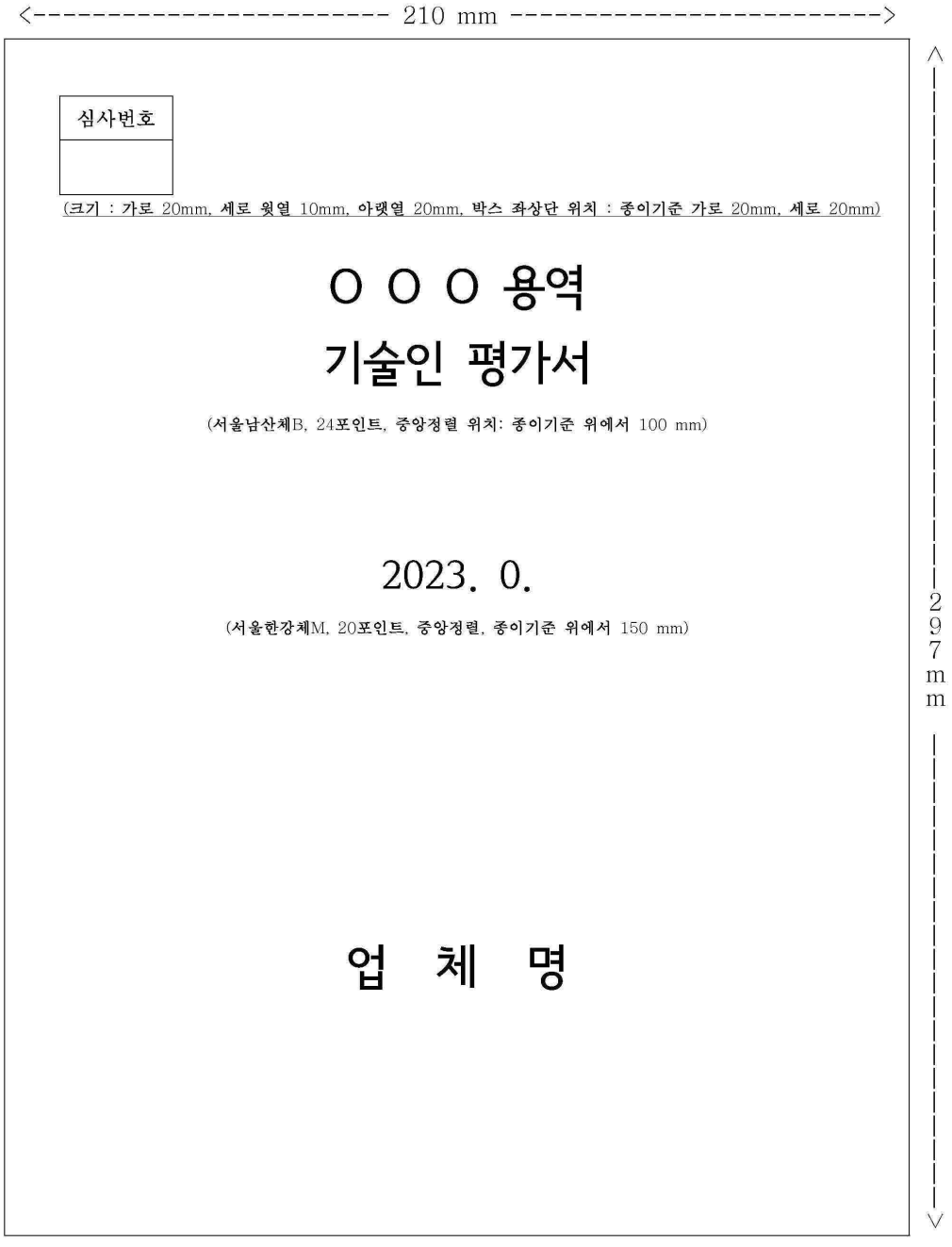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 용역
기술인 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3. 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297mm

210mm×297mm
(백상지(80g/㎡))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수행계획서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당해 과업의 성격 및 범위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이해, 과업수행상 주안점 등을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과업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음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개술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 ○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 ○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9호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민방위경보통제소 지휘체계 및 구성원 임무(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및 보고체계(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복무(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담당관(전화: 02)2133-4528, 팩스: 02)2133-4901, 이메일: joal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mail: joalim@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사이렌장비·동시전파장비·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 경보통제소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를 두고,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통제소장”이라 한다)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장이 맡는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이하 ” 경보상황실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을 두어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경보상황실에는 상황조장과 상황조원을 배치한다.

제2장 지휘체계 및 임무

제4조(지휘체계) ① 비상기획관은 통제소를 지휘·감독한다.

② 민방위담당관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비상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통제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보상황반의 업무는 해당 근무일 상황조장이, 경보운영반 업무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황조장은 상황조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조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보운영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경보상황실 행정지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통제소장)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2. 경보상황실이 설치된 시설 내 대외업무 수행
3. 그 밖에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6조(상황조장) 상황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실 내에서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
2. 상황조원에 대한 지휘 · 감독 및 개별임무 지정 및 기록 · 관리
3. 상황조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
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 · 인수
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7조(상황조원) 상황조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 내의 유선 · 위성 경보장비, 방송장비, 직통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 · 점검 · 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
3.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별표 5, 별표 7의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및 경보해명 방송문안 비치 · 숙지
4.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
5.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6. 그 밖에 민방위 경보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보운영반) 경보운영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발령 · 전달, 자체 규정 · 매뉴얼 정비 및 업무계획 수립
2. 경보시설 점검, 사이렌장비 신 · 증설
3. 시 · 구 · 동 경보요원 교육
4. 통제소 행정지원, 물품구매 등 일반서무
5. 통제소가 속한 청사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
6. 그 밖에 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경보전달체계

제9조(선조치 후보고)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예하 부대장 포함)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이 요청되면 상황조장(상황조장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조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상황조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 가동상태 유지
3.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 · 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1조(민방공 경보 발령) ① 수도방위사령관 등 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

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시장, 구청장 또는 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경보발령 시 조치) 상황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받으면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대상지역일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지역이지만 중앙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미울림 사이렌장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구·동 경보사이렌에 경보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중앙경보통제소에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별표 3에 따른 경보방송 및 별표 4에 따른 텔레비전 문자방송 요청
3.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단, 중앙경보통제소 실시 시에는 생략)
4.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사이렌 음성방송 실시
5.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직통전화, 단체문자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6. 수도방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상황전파체계 유지 및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

제13조(보고체계) ① 중앙경보통제소로부터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요청으로 국지적인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보 오보 시 조치) 통제소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경보발령을 요청한 지역군부대장에게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3.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별표 7에서 정한 경보해명 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
4.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

제15조(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통제소장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시장 또는 구청장은 통제소장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 경보 보고 등) 재난 경보에 따른 보고, 오보 시의 조치 등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통제소 운영 및 복무

제17조(경보상황실 운영 등) ① 경보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② 경보상황실은 각조 4명 4개조로 편성하며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인사이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조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조 3명으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보상황실 근무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상황근무자 근무시간 중 주간 근무시 11:00~13:00 중 1시간, 야간근무시 01:00~05:00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 중이라도 제18조의 비상소집 사유 발생시 10분 이내에 정위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제4조의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상황근무자는 근무시간 20분전에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합동근무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반영한다.

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
2. 경보시설의 이상유무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3. 상황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⑤ 경보운영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⑥ 통제소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매월 별도의 근무명령에 따라 정하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다.

⑦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비상소집 및 근무)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비상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선·위성망 운영점검 및 시험경보 전달점검
2. 경보방송 점검
3. 경보사이렌 장비 특별점검
4. 무정전전원장치 가동 상태 점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근무자 복무) ① 통제소 직원은 별표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청사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가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때에는 통제소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출입자 통제 및 보안대책)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통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장은 통제소를 상시 출입하는 민간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대장을 관리한다.

③ 통제소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통제소를 출입하는 상시근무자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 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며, 임시출입증은 일일단위로 지급 및 반납한다.

제21조(시설물의 주·야간 경계 및 순찰) ① 통제소가 속한 청사의 주·야간 순찰은 청원경찰이 실시한다.

② 순찰함은 주요지점에 설치하고, 순찰시계 등을 활용한다.

③ 통제소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

제22조(장비관리 등)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통제소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내의 경보시설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3조(장비점검) 통제소장은 경보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특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경보망 점검) ① 상황조장은 통제소 내의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사이렌 장비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매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1호 및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조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시까지 대체 경보전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근무 상황조장과 경보운영반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유관기관의 협조)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위 경보 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수도방위사령부, 지역군부대, 경찰, 소방, KT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이렌 신규설치 및 장소 변경)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신 주거단지가 조성된 경우
2. 주변여건의 변화로 가청지역의 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3. 사이렌이 설치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그 밖에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렌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여건 등

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이렌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이렌의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시공은 통제소장이 행한다.

제27조(다른 규정의 적용)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수칙

□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우리 근무자는 천만 서울시민의 불침번임을 자각하고 시대적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민방위 기수로서

○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성실, 충직하게 근무한다.

1.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요원은 지휘계통과 통제소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근무교대자는 상황 및 각종비품의 인계 · 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완벽한 경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통제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무자는 근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7. 근무자는 장비 및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 근무일지

담당자	민방위경보팀장	민방위담당관	결재

20 년 월 일 요일

근무자	구 분	주 간 (09:00 ~ 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조 장				
	조원 1				
	조원 2				
	조원 3				

[전체시스템 현황]

구분	경보통제대 (1,2)	주제어시스템	운용관리시스템	DB시스템	통합예비시스템
상태					
구분	동시전파장비				프로그램제어장치 (PLC)
	서 버	IP 교환기	네트워크	음성변환장치	
상태					

[개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상태]

○ 경보통제대

– 단말점검

사이렌장비		경보통제대 (1,2)	주제어장비			음성 (T/D)	점검자
번호	명 칭		스피커 테스트	앰 프 테스트	디 지 털 제어설정		

(별지 제1호서식) 2면

– 시험(해제)발령

시 간	발령원	운영단말	응답단말	이 상 단 말 명	상 태	비 고

○ 동시전파장비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 간	발령원	방 송 종 류	이 상 유 무	상 태	비 고

○ 운용관리시스템

– 운영이력

구 분	시험경보발령조회	실제경보발령조회	장비이력통계	관리자로그인
상 태				
비 고				

– 정보통신망

구 분		장 애 내 역	상 태	비 고
중앙경보통제소				
유 선	디지털회선			
	음성회선(T/D)			
위 성	DATA			
	음 성			

– 네트워크 장비

구 분		라우터	스위칭허브	터미널서버	방화벽	POE스위치	이중화제어반
상 태	주						
	예비						
비 고							

(별지 제1호서식) 3면

○ 주제어시스템

구 분	장 애 내 역	상태	비고
주 장비 감시			
무인단말장비 감시			
디지털포인트 감시			
아날로그포인트 감시			
버튼 키·기타 등			
프린터(1,2) 감시			
인증키 배분			

○ 정보표시반

구 분	장 애 내 역	상 태	비 고
전 광 판			

○ 무정전전원장치

구 분	1 호 기	2 호 기	비 고
출력(전압/전류)			
연 결 단 자			

[주요기관 직통전화]

구 분		국 가 정보원	시 경	중 부 경찰서	충 무 파출소	56사 219연대	KT 강북 운용본부	가로등 관제센터
점검시간								

[특기사항]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일지

□ 상황개요

○ 제　　목 :

○ 일　　시 :

○ 지　　역 :

○ 상황내용(6하원칙 작성)

□ 경보발령 결과

□ 진행사항

일　시	조치 및 보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유선 장애 일지

담당자	민방위경보팀장	민방위담당관	결재

20 년 월 일 요일

전용회선 번호	단말기명	상 태	전화국 의뢰			조치사항
			신고시간 복구시간	신고자	접수자	

(별지 제4호서식)

출 입 자 통 제 부

일자	방 문 자			용 무	출 입 시 간		결 재		
	소속(주소)	성 명	직 위		부터	까지	담당자	상황조장	민방위 경보통제 소장

[별지 제5호서식]

단말점검카드

단 말 점 검 카 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결과
1. 주요기능 상태			
가. 단말제어장치(MCU) 동작 상태			
나. 수동울림조작반(SEI) 동작 상태			
다. 데이터통신장치(DSU) 동작 상태			
라. 직류전원공급장치(PSU) 동작 상태			
2. 유선 및 위성 시험 경보발령 기능			
가. 유선을 이용한 경보전달 상태			
나. 위성을 이용한 경보전달 상태			
다. 경보별 사이렌 울림 상태			
라. 음성방송 수신 상태			
마. 경보별 울림결과 확인			
3. 앰프 및 스피커 동작 상태			
가. 앰프, 스피커 시험기능			
나. 앰프출력 상태			
다. 앰프사용 설정여부			
4. 각종 환경감시 기능			
가. 온도, 습도, 도어 등 각종센서 동작 상태			
나. 환풍기 동작상태			
5. 경보사이렌 관리 기능			
가. 비밀번호 설정여부			
나. 키패드 및 점검키 기능			
다. 전화기 기능			
라. 이벤트 등 기록 관리 기능			
6. 각종 선로 상태			
가. 전원선로 상태			
나. 전용회선 수신레벨, 전송선로 상태	dB,	dB,	dB,
다. 접지선로 및 지선상태			
7. 정류기 및 축전지 상태			
가. 정류기 상태			
나. 상전 OFF시 축전지 동작 상태			
다. 축전지 전압, 충전케이블 상태	V,	V,	V,
8. 특기사항			
점검일자 / **통제소 담당자 서명**	/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2호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4호(2023.05.18.)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망우리묘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망우리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산57-1 일대

3. 공원면적 : 354,749㎡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망우리공원과(☎02-2094-6822)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산57-1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354,749.0	237,247	1	906.1	1,247.3	4	354,749.0	238,240	1	906.1	1,247.3	25	증)993㎡
기반시설	소 계	34,604	11,810				1	35,383	12,589				1	증)779㎡
	도 로	34,604	11,810 (22,794)					35,085	12,291 (22,794)					증)481㎡
	교 량						1						1	
	광 장							298	298					증)298㎡
조경시설		10,205	10,205				2	10,495	10,495				2	증)290㎡
휴양시설		3,648	3,648				1	3,572	3,572				22	감)76㎡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2,417	2,417					2,417	2,417					
운동시설														
관리시설		3,508	907	1	906.1	1,247.3		3,508	907	1	906.1	1,247.3		
그밖의 시설		208,260	208,260					208,260	208,260					
녹지·기타		92,107						91,114						감)993㎡
공원시설률 (법정 20% 이상)		237,247 / 354,749.0 x 100 = 66.88%						238,240 / 354,749.0 x 100 = 67.16%						
공원건폐율 (법정 20% 이내)		906.1 / 354,749.0 x 100 = 0.26%						906.1 / 354,749.0 x 100 = 0.26%						

2.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건축면적	연면적	(기)							건축면적	연면적	(기)	
합계				354,749.0	237,247		1	906.1	1,247.3	4			354,749.0	238,240		1	906.1	1,247.3	25	증)993㎡
기반시설	소계			34,604	11,810					1			35,383	12,589					1	증)779㎡
	도로		전지역	34,604	11,810 (22,794)							전지역	35,085	12,291 (22,794)						증)481㎡
	교량	③	망우동 산54-1							1	③	망우동 산54-1							1	
	진입광장										나	전지역	298	298						증)298㎡
											나-1	망우동93-2도	(156)	(156)						
											나-2	망우동93-2도	(142)	(142)						
조경시설	소계			10,205	10,205					2			10,495	10,495					2	증)290㎡
	잔디밭	다	망우동 58	9,901	9,901						다	전지역	10,191	10,191						증)290㎡
											다-1	망우동 58	(9,901)	(9,901)						
											다-2	망우동 94-16전	(290)	(290)						
	13도창의 군탑	①	망우동 56	300.0	300.0					1	①	망우동 56	300.0	300.0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건축면적	연면적	(기)							건축면적	연면적	(기)	
	기념탑	②	망우동 56-1	4.0	4.0	석재				1	②	망우동 56-1	4.0	4.0	석재				1	
휴양시설	소계			3,648	3,648					1			3,572	3,572					22	감)76㎡
	마을마당	마	망우동 108-1 일대	3,325	3,325						마	망우동 108-1 일대	3,325	3,325						
	휴게소	아	2개소	323	323						아	4개소	247	247						감)76㎡
											아-1	망우동 94-16전	(40)	(40)						
		아-2	망우동 111	(206)	(206)						아-2	망우동 111								폐지
		아-3	망우동 산57-1	(117)	(117)						아-3	망우동 산57-1	(117)	(117)						
											아-4	망우동 94-14전	(77)	(77)						
											아-5	망우동 93-1전	(13)	(13)						
	장의자	⑥	시설부지내							1	⑥	시설부지내							20	
	파고라										⑦	시설부지내							1	
	연식파고라										⑧	시설부지내							1	
	앉음벽										⑨	시설부지내				58m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건축면적	연면적	(기)							건축면적	연면적	(기)	
편익시설	소계			2,417	2,417								2,417	2,417						
	주차장	바	망우동 57-1	692	692						바	망우동 57-1	692	692						
		바-2	망우동 산51-2 일대	1,725	1,725						바-2	망우동 산51-2 일대	1,725	1,725						
관리시설	소계			3,508	907		1	906.1	1,247.3				3,508	907		1	906.1	1,247.3		
	관리사무소	2	망우동 57-1	3,508	907		1	906.1	1,247.3		2	망우동 57-1	3,508	907		1	906.1	1,247.3		
그밖의시설	소계			208,260	208,260								208,260	208,260						
	묘지	사	망우동 57-1	208,260	208,260						사	망우동 57-1	208,260	208,260						
녹지	소계			92,107									91,114							
	녹지			92,107									91,114							감)993㎡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441.0	11,810.0 (22,794)				
변경					3,757.0	12,291.0 (22,794)				
당초	대로	계			532.0	(18,685)				
당초		3류	2	35	532	(18,685)	주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망우로
당초	중로	계			227.0	(4,109)				
당초		3류	1	20	190.0	(3,751)	진입로	대로3-2(망우로)	서측경계	도시계획 도로
당초		2류	2	12	37.0	(358)	진입로	대로3-2(망우로)	중로3-1	도시계획 도로
당초	소로	계			2,682	11.810.0				
변경					2,973	12,291.0				
당초		2류	1	5.5	429	2,611	보차도	대로3-2(망우로)	대로3-2(망우로)	
당초		3류	4	4	175	700	진입로	중로3-2	도자구역	
당초		3류	7	6	34	204	보차도	중3-1	서측경계	
당초		3류	8	9	551	5,187	진입로	대로3-2(망우로)	동측경계	
당초		3류	9	3	430	1,295	보차도	소로3-8	서측경계	
당초		3류	10	2	353	706	산책로	소로3-7	남측경계	
당초		3류	11	2	322	644	산책로	소로3-8	소로2-1	
당초		3류	12	1.5	322	275	산책로	소로3-8	소로3-9	
당초		3류	13	1.5	15	22	산책로	소로3-8	동측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류	14	6	21	119	산책로	대로3-2(망우로)	중로3-2	
당초		3류	15	1.5	30	47	산책로	대로3-2(망우로)	소로3-4	
신설		3류	16	2.0	80	160	산책로	소로3-23	소로3-1	
신설		3류	17	1.5	8	13	산책로	소로3-1	소로3-16	
신설		3류	18	1.5	8	13	산책로	소로3-1	소로3-16	
신설		3류	19	0.9	10	9	산책로	소로3-16	소로3-18	
신설		3류	20	1.5	6	10	산책로	소로3-19	소로3-16	
신설		3류	21	0.9	12	11	산책로	소로3-16	소로3-22	
신설		3류	22	1.2	35	42	산책로	소로3-23	소로3-16	
신설		3류	23	2.0	42	83	산책로	소로3-7	소로3-7	
신설		3류	24	0.9	5	5	경사로	소로3-23	소로3-23	
신설		3류	25	1.2	32	39	산책로	소로3-26	광장	
신설		3류	26	2.0	40	82	산책로	소로3-1	소로3-7	
신설		3류	27	1.5	3	5	산책로	소로3-26	소로3-25	
신설		3류	28	0.9	10	9	산책로	소로3-1	소로3-26	

조성계획도(변경전)

망우리묘지공원

SCALE=1/4,000

Scale : 1/4,000(A1)

0 25 50 100

구 분	구분명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54,749.0	237,247	4	
기반시설	소 계		34,604	11,810	1	
	도 로	㉮	34,604	11,810 (22,794)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반영
	교 량	㉯			1	
조경시설	소 계		10,205	10,205	2	
	천 디 탑	다	10,205	10,205		
	13도참의군탑	①			1	
	기 념 탑	②			1	
휴양시설	소 계		3,649	3,649	1	
	마 을 마 당	마	3,325	3,325		
	휴 게 소	아	323	323		
		아-2	206	206		
		아-3	117	117		
	참 의 자	⑥			1	
편익시설	소 계		2,417	2,417		
	주 차 장	바	692	692		
		바-2	1,725	1,725		
관리시설	소 계		3,500	907		
	관리사무소	2	3,500	907		
그 밖 의 시 설	소 계		208,260	208,260		
	묘 지	사	208,260	208,260		
녹 지	소 계		92,107			
	녹 지		92,107			

조성계획도(변경후)

망우리묘지공원

SCALE=1/4,000

구 분	구 분 명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54,749.0	238,240	25	
기반시설	소 계		35,383	12,589	1	
	도 보	㉮	35,085	12,291 (22,794)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반영
	교 량	①			1	
	진입광장	나	298	298		
		나-1	(156)	(156)		
		나-2	(142)	(142)		
조경시설	소 계		10,495	10,495	2	
	잔 디 밭	다	10,191	10,191		
		다-1	(9,901)	(9,901)		
		다-2	(290)	(290)		
	13도참의군탑	①			1	
	기 념 탑	②			1	
휴양시설	소 계		3,572	3,572	22	
	미 룸 마 당	마	3,325	3,325		
	휴 게 소	아	247	247		
		아-1	(90)	(40)		
		아-3	(117)	(117)		
		아-4	(77)	(77)		
		아-5	(13)	(13)		
	정 의 자	⑥	–	–	20	
	파 고 라	⑦	–	–	1	
	연 식 파 고 라	⑧	–	–	1	
	망 원 백	⑨				
편익시설	소 계		2,417	2,417		
	주 차 장	바	692	692		
		바-2	1,725	1,725		
관리시설	소 계		3,508	907		
	관리사무소	2	3,508	907		
그 밖 의 시 설	소 계		208,260	208,260		
	묘 지	사	208,260	208,260		
녹 지	소 계		91,114			
	녹 지		91,114			

세부결정계획도(변경전)

SCALE=1/400

망우리묘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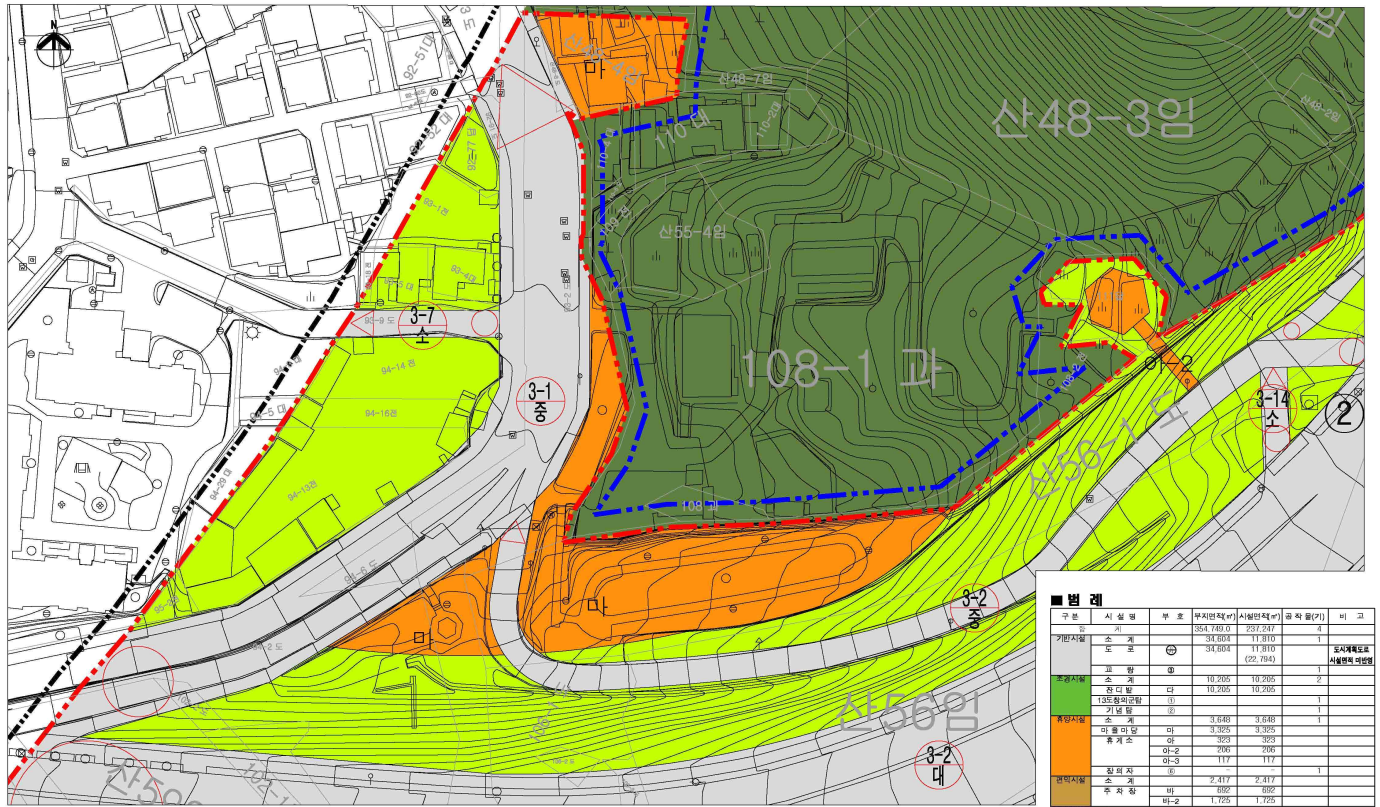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54,749.0	237,247	4	
기반시설	소 계		34,604	11,810	1	
	도 로	㉮	34,604	11,810 (22,794)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반영
	교 량	㉯			1	
조경시설	소 계		10,205	10,205	2	
	천 디 딤	다	10,205	10,205		
	13도참의군림	①			1	
	기 념 탑	②			1	
휴양시설	소 계		3,649	3,649	1	
	마 을 마 당	마	3,325	3,325		
	휴 게 소	바	323	323		
		바-2	206	206		
		바-3	117	117		
	참 의 지	⑥			1	
편익시설	소 계		2,417	2,417		
	주 차 장	바	692	692		
		바-2	1,725	1,725		
관리시설	소 계		3,509	907		
	관리사무소	2	3,509	907		
그 밖 의 시 설	소 계		208,260	208,260		
	묘 지	사	208,260	208,260		
녹 지	소 계		92,107			
	녹 지		92,107			

세부결정계획도(변경후)

망우리묘지공원

SCALE=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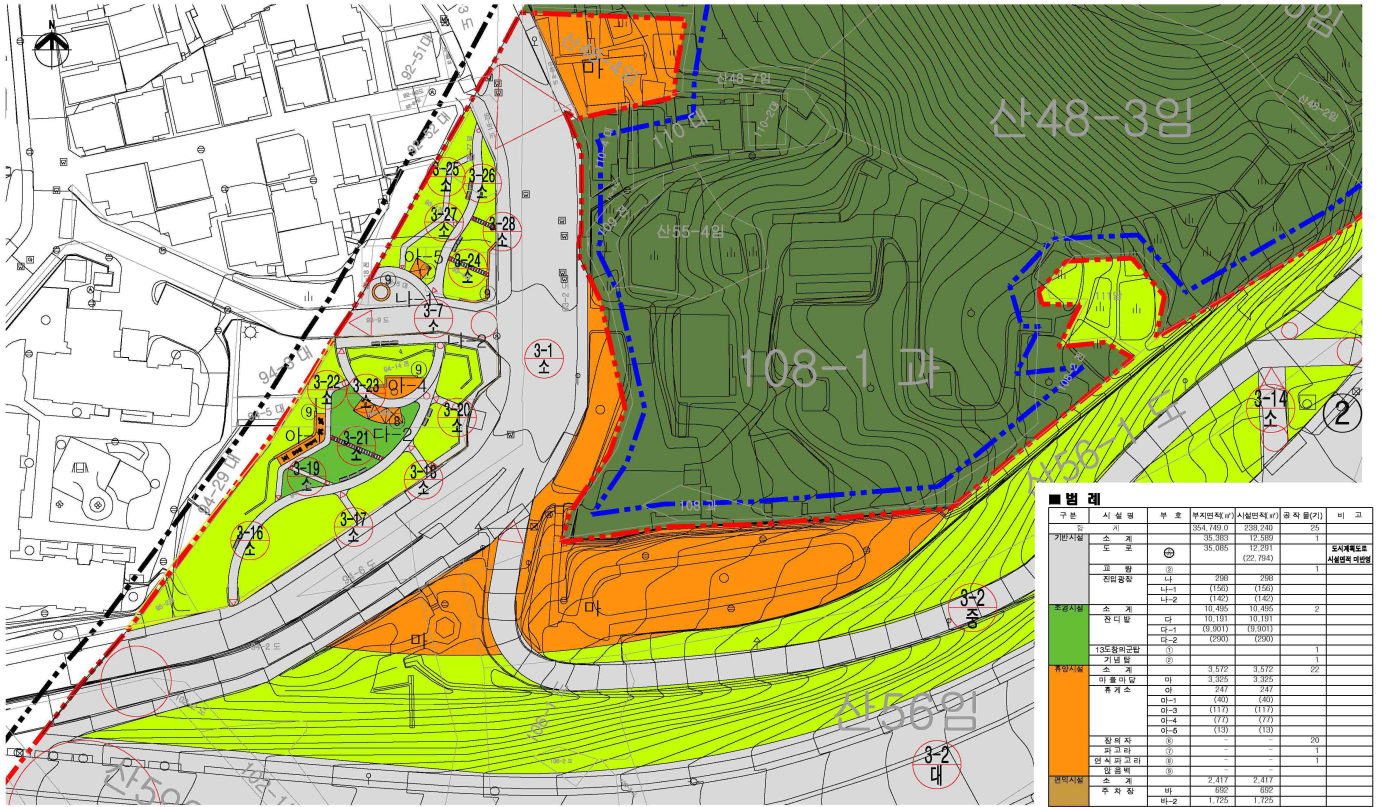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354,749.0	238,240	25	
기반시설	소계		35,383	12,589	1	
	도로	㉮	35,085	12,291 (22,794)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반영
	교량	㉯			1	
	친림광장	나	298	298		
		나-1	(156)	(156)		
		나-2	(142)	(142)		
조경시설	소계		10,495	10,495	2	
	참디팝	다	10,191	10,191		
		다-1	(9,901)	(9,901)		
		다-2	(290)	(290)		
	135참의근탑	①			1	
	기념탑	②			1	
휴양시설	소계		3,572	3,572	22	
	아름아담	아	3,325	3,325		
	휴게소	아	247	247		
		아-1	(40)	(40)		
		아-3	(117)	(117)		
		아-4	(77)	(77)		
		아-5	(13)	(13)		
	장의자	⑥	-	-	20	
	파고라	⑦	-	-	1	
	연사교고리	⑧	-	-	1	
	암콤벡	⑨	-	-		
관리시설	소계		2,417	2,417		
	주차장	바	692	692		
		바-2	1,725	1,725		
관리시설	소계		3,500	907		
	관리사무소	2	3,500	907		
그밖의 시설	소계		208,260	208,260		
	묘지	사	208,260	208,260		
녹지	소계		91,114			
	녹지		91,114			

구분	구분명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2.12.29.)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5호(’22.12.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금천구	시흥동 871	시흥동 871번지 일대	79,341.1	·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동 871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금천구	시흥동 871	시흥동 871번지 일대	88,326.3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2. 1. 28.	79,341.1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2. 1. 28.(기존구역) 2023. 11. 30.(추가구역)	88,326.3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9) 또는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시흥동 871 (시흥동 87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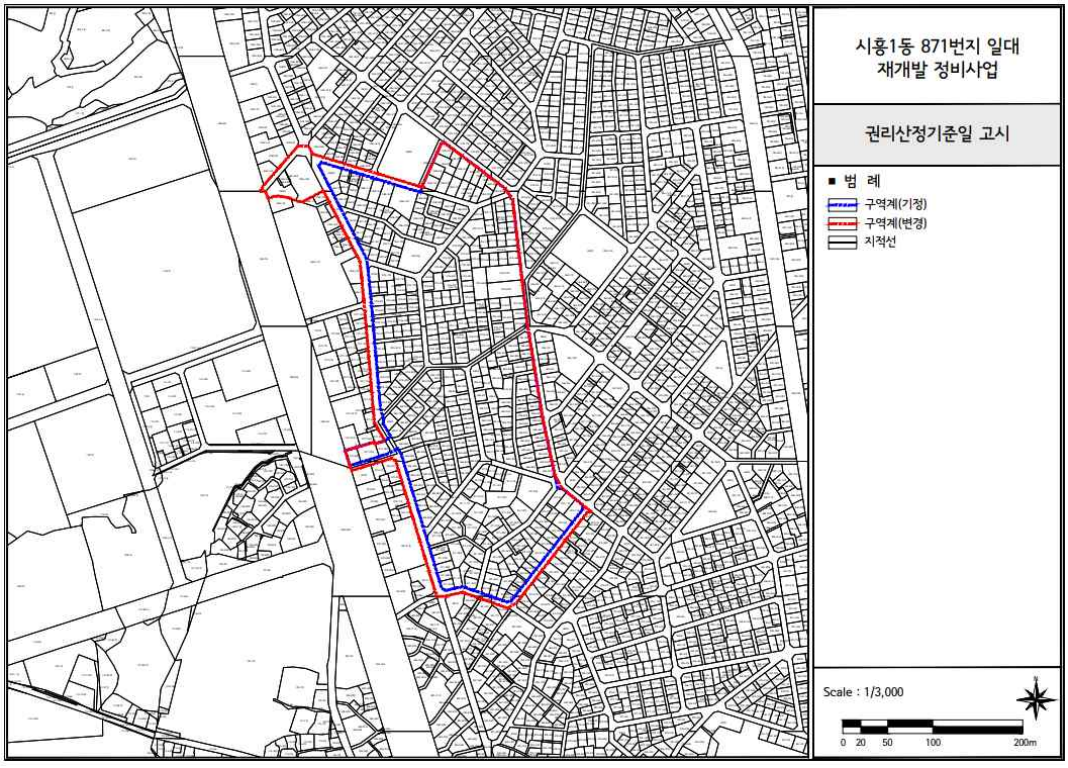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520호

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등촌동 515-44 일대,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촌동 515-44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	
현황			65,498.6㎡	전체 : 180동 노후불량 : 122동(67.8%)	
기준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촌동 520-3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1이상일것	
현황			64,171.6㎡	전체 : 99동 노후불량 : 54동(54.5%)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촌동 515-44 일대	-	증) 65,498.6	65,498.6	
신규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촌동 520-3 일대	-	증) 64,171.6	64,171.6	

나. 토지이용계획(안)

○ 모아타운 I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5,498.6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56,167.6	85.8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1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666.1	27.0	
			2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699.6	19.4	어린이집 면적포함
			3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8,738.0	28.6	
			4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063.9	10.8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9,331.0	14.2	
		도로			6,677.6	10.2	
		어린이공원			2,411.4	3.7	
		어린이집			242.0	0.4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시 어린이집 이전 위치 변경 가능함

○ 모아타운 II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4,171.6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23,646.3	36.8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1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324.7	14.5	
			2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321.6	22.3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38,586.7	60.1	
		도로			5,633.2	8.6	
		(입체적결정 도로)			(771.3)	-	
		강서도서관 앞 도로			104.5	0.2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학교		32,953.5	51.4	
시행구역 외	소계		1,938.6	3.0	
	강서구의회	존치구역	1,938.6	3.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강서구도서관 앞 도로는 모아주택Ⅱ-1구역에서 사업시행 시 확보토록 함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가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3	가	6~10 (4)	국지	350 (227)	등촌동 612-7	등촌동 513-1	일반		
기정	소로	3	마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1	마	8	국지	154	등촌동 516-3	등촌동 516-12	일반		
기정	소로	3	아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2	아	8	국지	131	등촌동 17-29	등촌동 516-12	일반		
기정	소로	2	타	8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1	타	10~15	국지	245	등촌동 519-2	등촌동 518-29	일반		
기정	소로	3	파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3	파	6	국지	52	등촌동 518-9	등촌동 518-29	보행자 전용		
신설	소로	3	러	6	국지	115	등촌동 514-43	등촌동 515-39	일반		
폐지	소로	3	사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폐지	소로	3	카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폐지	소로	3	하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 향후 모아타운 외 등촌로39길(소로3-가)변 개발 시 간선도로인 '등촌로' 진출입로 확폭할 수 있도록 계획 유도함
※ ( )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폭원 및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3-가	소로3-가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6m → 6~10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마	소로1-마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 → 8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아	소로2-아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 → 8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2-타	소로1-타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8m → 10~15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파	소로3-파	• 노선번호 부여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소로3-러	•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3-사	-	• 폐지	• 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소로3-카	-	• 폐지	• 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소로3-하	-	• 폐지	• 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등촌동 517-1	853.9	증)57.1	911	서울특별시 제1995-141호 (1995.05.20)	능안공원
신설	-	공원	어린이 공원	등촌동 519-2	-	증)1,500	1,500	-	

※ 공원 조성 시 모아타운 내 보행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변으로 보도를 확보토록 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공원	• 선형 및 면적 변경 (A=853.9㎡ → 911㎡,증 57.1㎡)	• 도로 확폭에 따른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공원	• 공원 신설	• 세대수 증가를 고려한 공원 신설

– 이하여백 –

○ 등촌동 520-3 일대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가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3	가	6~10 (6)	국지	350 (227)	등촌동 612-7	등촌동 513-1	일반		
기정	소로	3	다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3	다	6~8	국지	150 (59)	등촌동 612-12	등촌동 524-4	일반		
기정	소로	3	라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2	라	8	국지	36	등촌동 523-29	등촌동 523-35	일반		
기정	소로	3	자	4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2	자	8~15	국지	160	등촌동 521-4	등촌동 523-1	일반		
기정	소로	2	차	8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1	차	10	국지	125	등촌동 521-2	등촌동 521-22	일반		
기정	소로	3	너	4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2	너	8~11	국지	55	등촌동 520-6	등촌동 521-4	일반		
기정	소로	2	더	8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변경	소로	1	더	10	국지	50	등촌동 511-15	등촌동 511-5	일반		
신설	소로	2	머	8	국지	93	등촌동 523-37	등촌동 523-7	일반		입체적 결정
폐지	소로	3	바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폐지	소로	3	거	6	-	-	-	-	-	건설부 제1968-8호 (1968.01.23.)	

※ 향후 모아타운 외 등촌로39길(소로3-가)변 개발 시 간선도로인 '등촌로' 진출입로 확폭할 수 있도록 계획 유도함
※ 강서도서관앞 도로(소로2-너)를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Ⅱ-1구역 사업시행 시 확보토록 함
※ ( )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3-가	소로3-가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6m → 6~10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다	소로3-다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6m → 6~8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라	소로3-라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6m → 8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자	소로2-자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4m → 8~15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2-차	소로1-차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8m → 10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3-너	소로2-너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4m → 8~11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소로2-더	소로1-더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 (B=8m → 10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진입부 확보를 위한 도로폭원 확폭
–	소로2-머	•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3-바	–	• 폐지	• 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소로3-거	–	• 폐지	• 공동주택 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입체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2-머	일반 도로	등촌동 523-7	길이	–	93m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 771.3㎡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8m	
				높이 (해발고도)	–	지표면 -1.2m~지상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입체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 2-머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으로 기존의 통행흐름을 유지하며, 지하공간을 공유하여 지하주차장 신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학교 (도서관)	등촌동 520-6	33,058.0 (3,541.0)	감)104.5	32,953.5 (3,436.5)	-	강서도서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학교 (도서관)	• 면적감소 (A=3,541.0㎡ → 3,436.5㎡, 감 104.5㎡)	• 등촌1재건축구역~등촌로47길~등촌로까지 도로의 연속성을 위한 도로 확폭 필요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구분			설치기준	비고
등촌동 515-44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Ⅰ)	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내
	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4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등촌동 520-3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Ⅱ)	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교통처리 계획(안)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등촌로 39길	- 근린생활가로(등촌로 39길)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진출입구간	등촌로	- 간선도로인 등촌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 입구 설치	
입체결정도로	등촌로 39나길	- 도로 폐도 부분은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통행흐름 유지 (기존 일방통행 유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촌로 39마길	- 모아주택 1구역 내 봉제산 둘레길 진입부 구간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공공보행통로	등촌로 39길	- 모아타운Ⅰ- 모아주택1,2 / 모아타운Ⅱ- 모아주택1,2 구역 내 도로 폐도 부분을 공공보행통로 및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보행편의 확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구 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소유자	기존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결정일	
합 계		87,667.9	-	582	-	-	-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851.3	-	125	조합 (예정)	조합 설립 추진중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534.2	-	104			-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627.8	-	106			-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341.7	-	56			-	

구 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소유자	기존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결정일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II)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345.7	-	65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967.2	-	12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구 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3일대	19,851.3	공통사항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공통사항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7-39일대	14,534.2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44일대	19,627.8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4-10일대	7,341.7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II)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0-3일대	10,345.7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2-11일대	15,967.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자.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사업구역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등촌동 515-44(Ⅰ) 및 520-3(Ⅱ)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60%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기준	상한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3일대	200	250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 (제1종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동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7-39일대	200	250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44일대	200	250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4-10일대	200	250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0-3일대	200	250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기준	상한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2-11일대	200	25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 내용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3일대	- 최고 20층 이하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7-39일대	- 최고 20층 이하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44일대	- 최고 15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4-10일대	- 최고 20층 이하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0-3일대	- 최고 20층 이하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2-11일대	- 최고 20층 이하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자연경관지구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카.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구분		위치	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	2,143	457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소 계		1,477	313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3일대	465	99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7-39일대	357	92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5-44일대	438	77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14-10일대	217	45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소 계		666	144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0-3일대	259	76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등촌동 522-11일대	407	68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모아타운Ⅰ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5,498.6	-	65,498.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08.3	감) 50,008.3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490.3	증) 4,030.4	19,520.7	29.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5,977.9	45,977.9	7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파.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모아타운Ⅱ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4,171.6	-	64,171.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847.1	감) 18,143.8	32,703.3	5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991.2	감) 10,100.2	891.0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8,244.0	28,244.0	44.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3.3	-	2,333.3	3.6	

하.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 모아타운Ⅰ, 모아타운Ⅱ(공통사항)

구분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도면표시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851.3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534.2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627.8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341.7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345.7			

구분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967.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 6845)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계획(안)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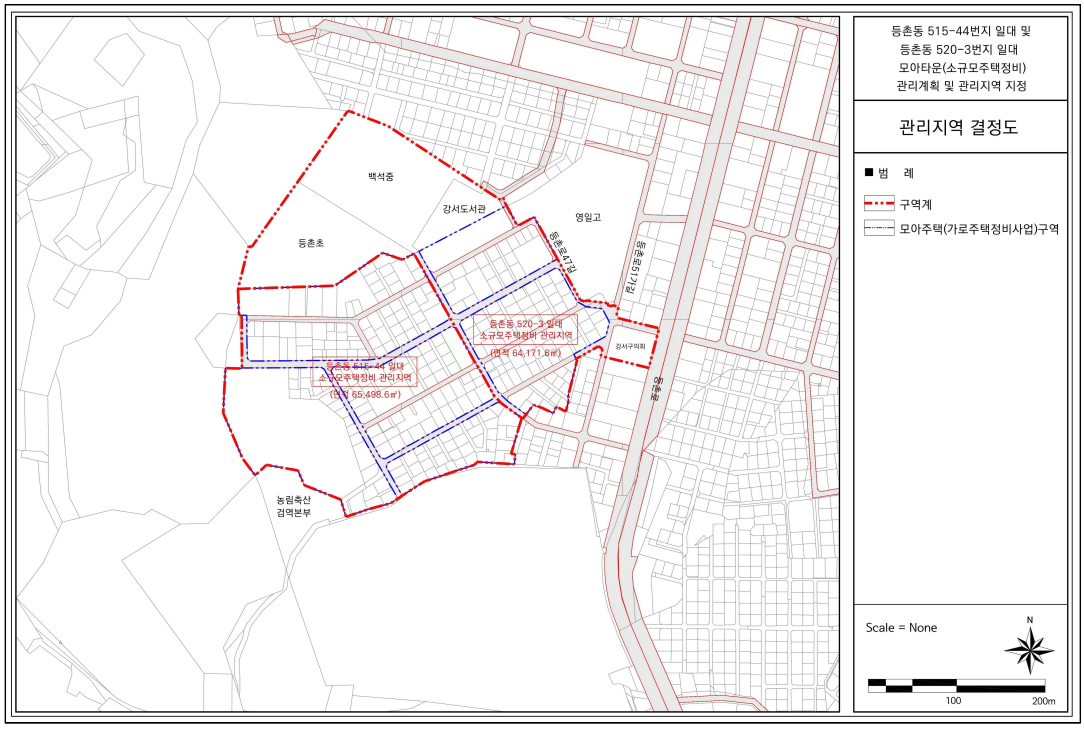

– 이하여백 –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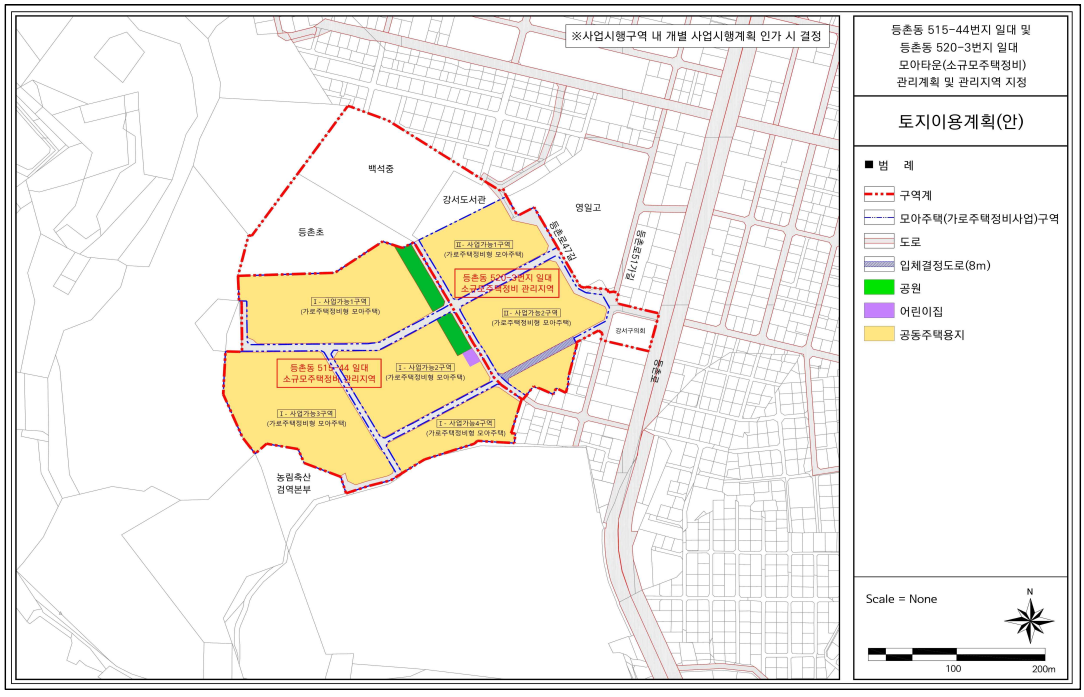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예시도)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반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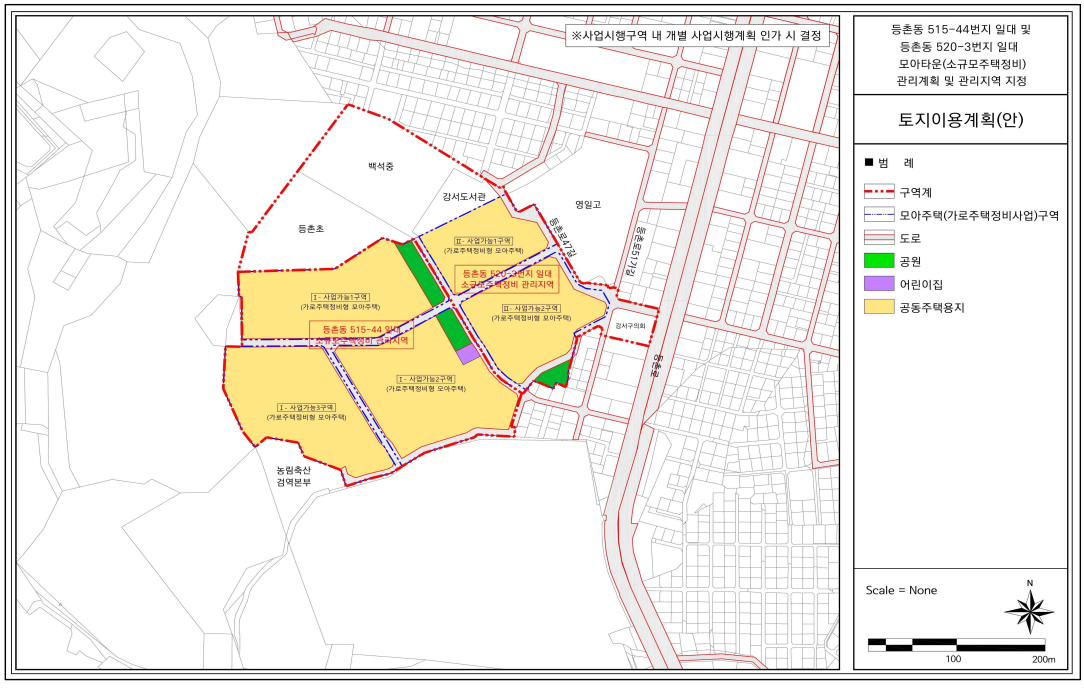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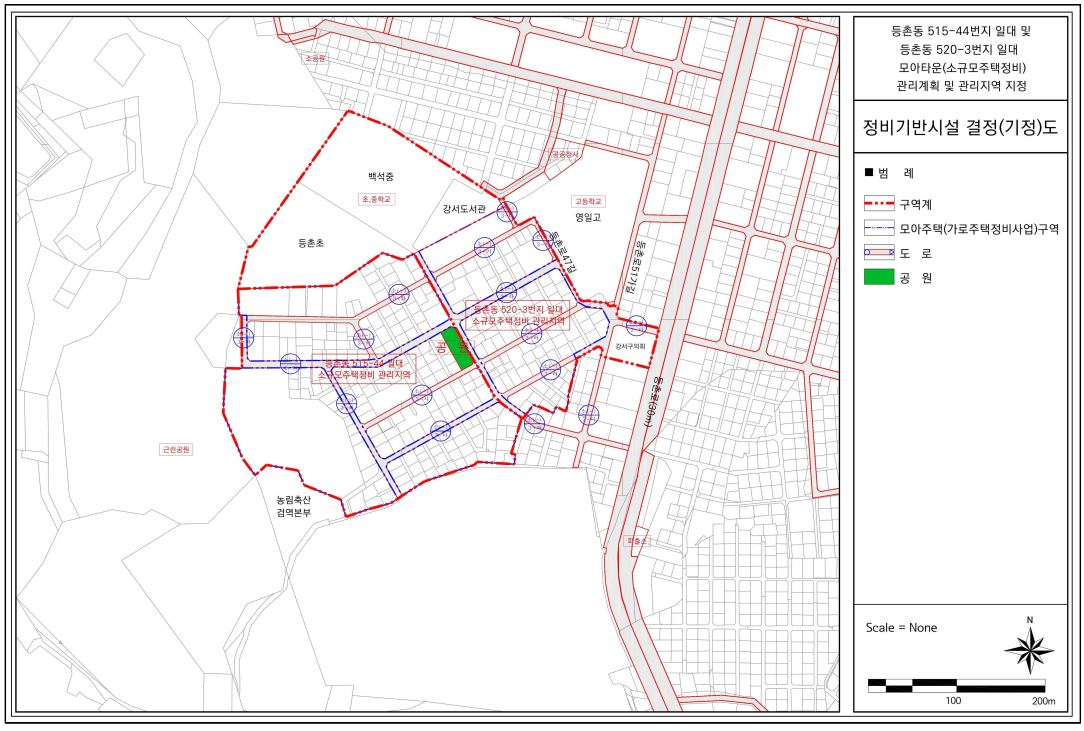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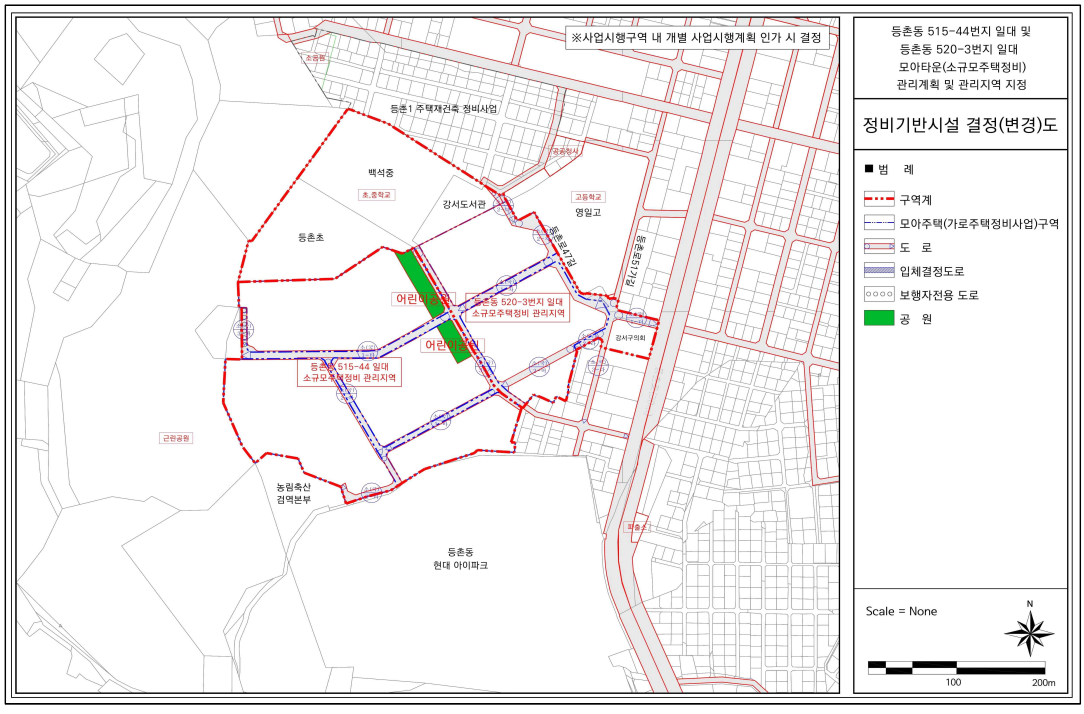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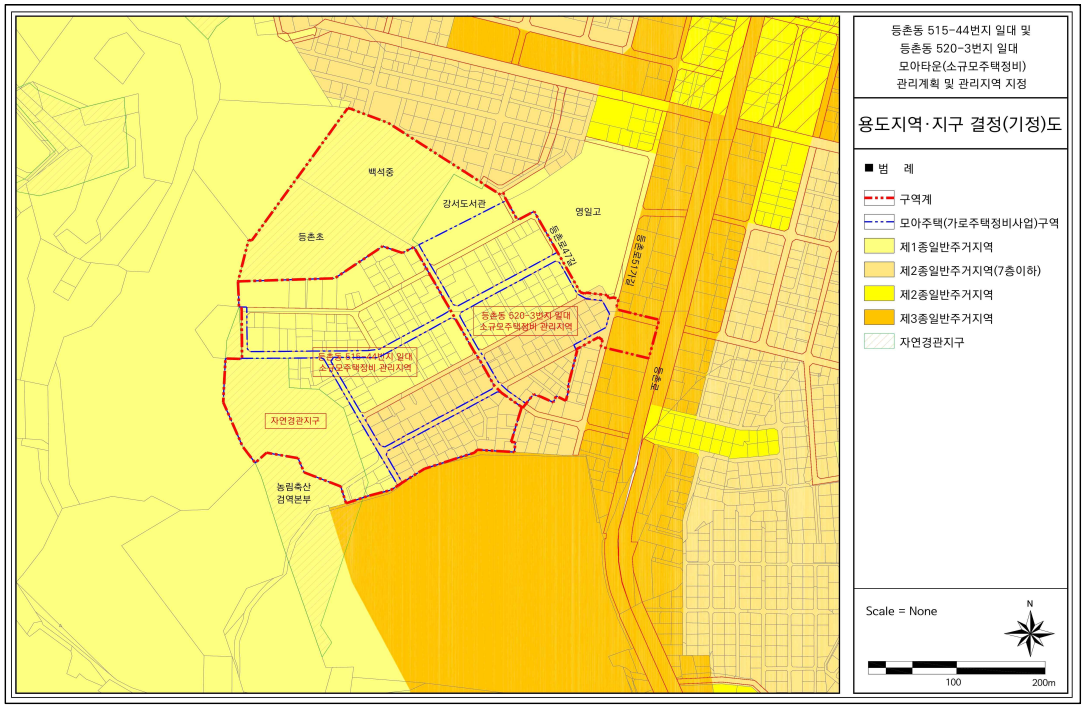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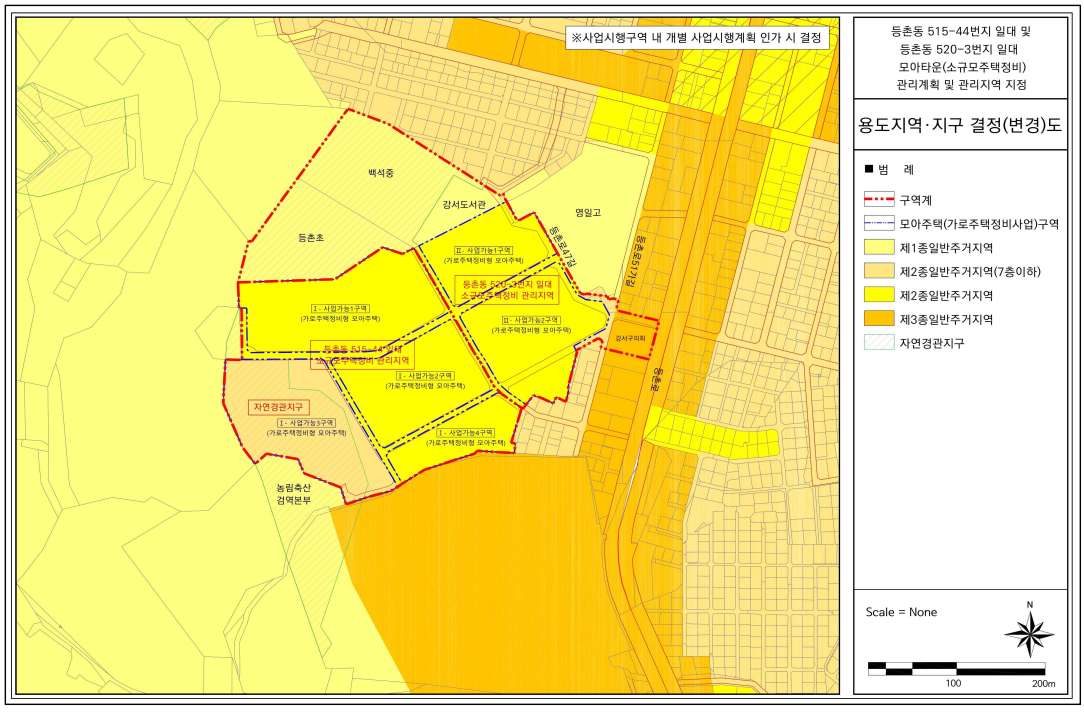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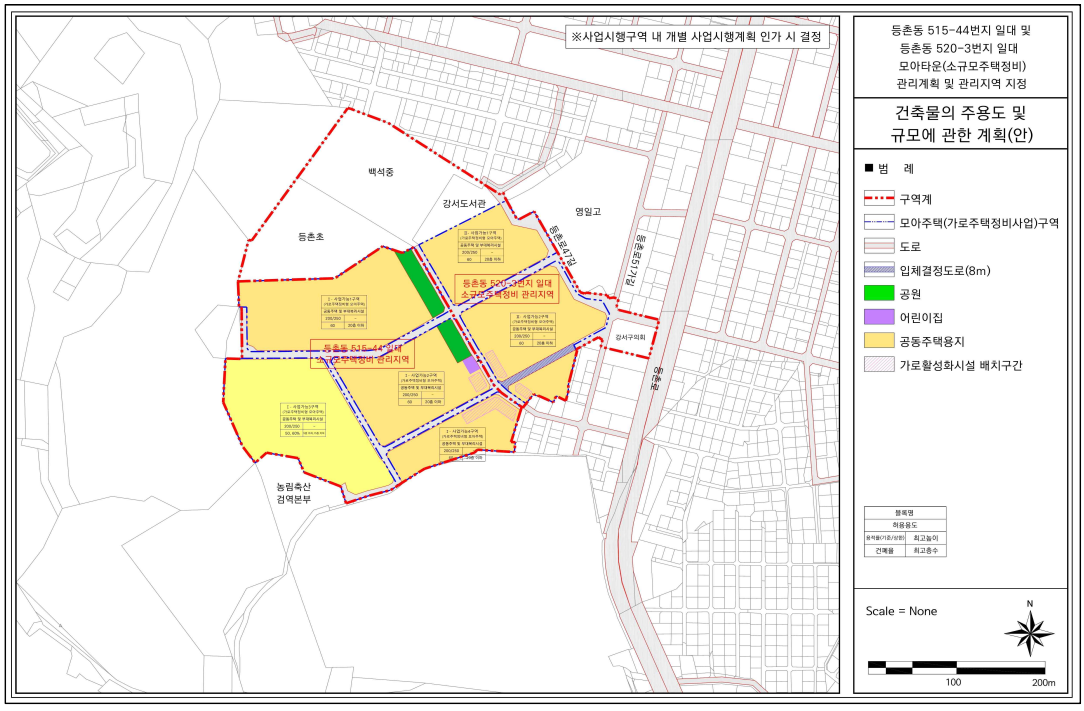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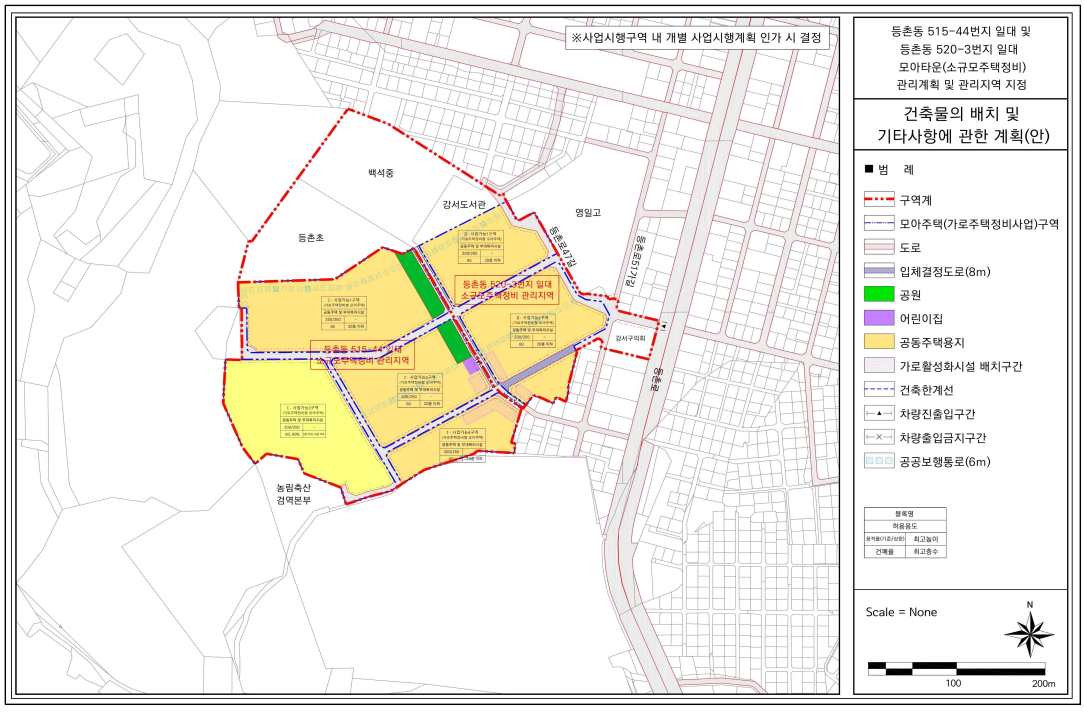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구분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기정	강서구	등촌2동 516 일대	97,430	`22. 6. 23.	
변경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65,498.6	'22. 6. 23	
	강서구	등촌동 520-3 일대	64,171.6	-	
			27,043.6	'22. 6. 23.	
			37,128	'23. 11. 30.	

2. 권리산정기준일 : 2023. 11. 30. (구역 확대 37,128㎡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등촌동 515-44 일대 및 520-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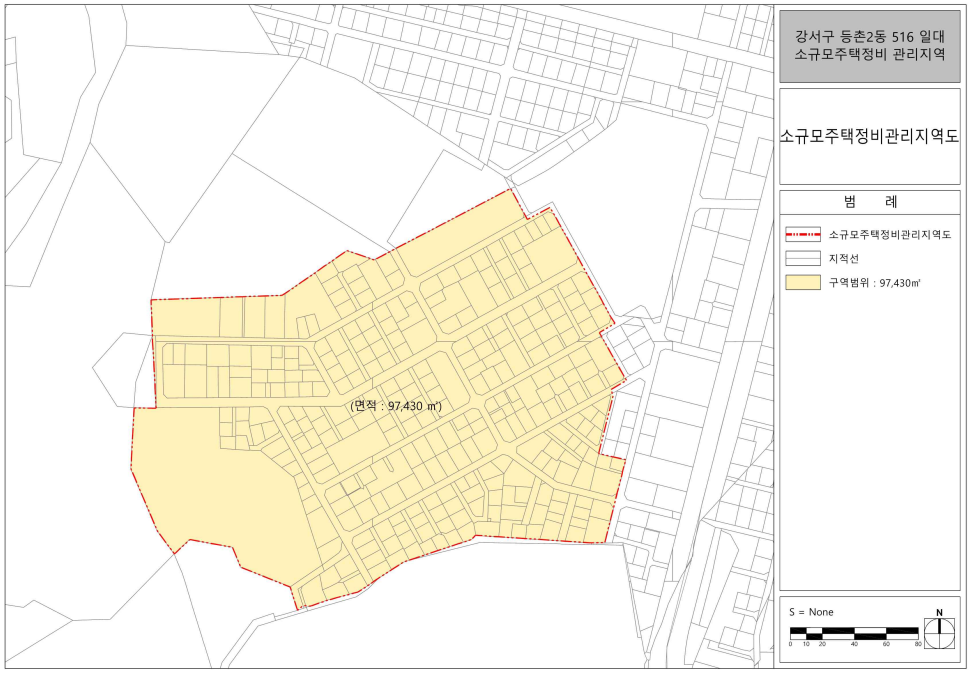

추가구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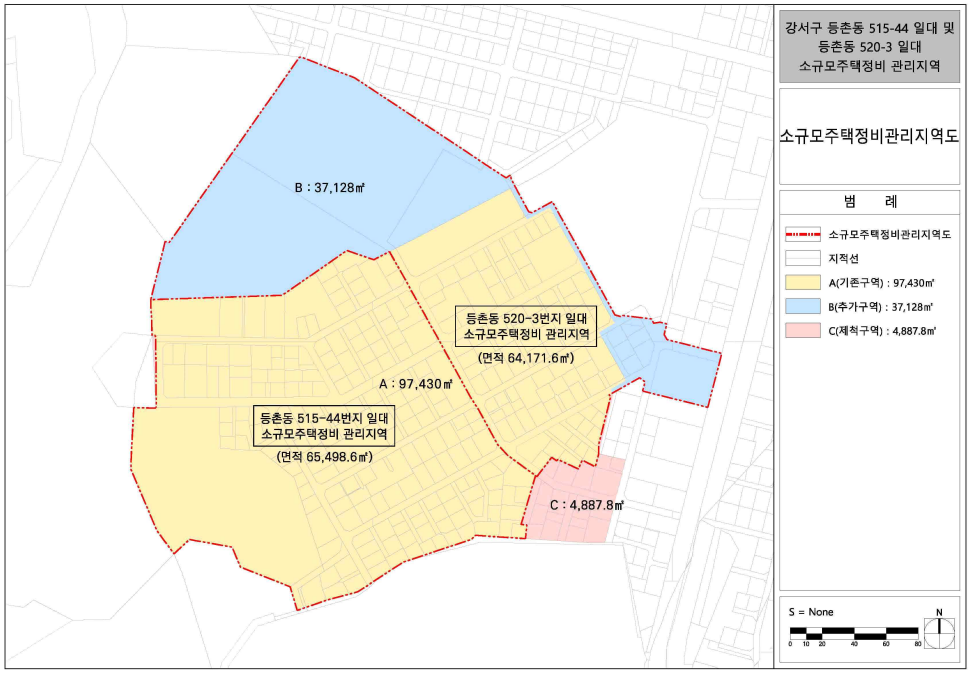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2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3년 제4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가. 대상지: ‘23년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4차 공모 신청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57,000	‘23.11.30.	
2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	97,824	‘23.11.30.	
3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	81,873	‘23.11.30.	
4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48,144	‘23.11.30.	
5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81,648	‘23.11.30.	
6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	62,681	‘23.11.30.	

2. 권리산정기준일: 2023. 11. 30.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 구로구 구로동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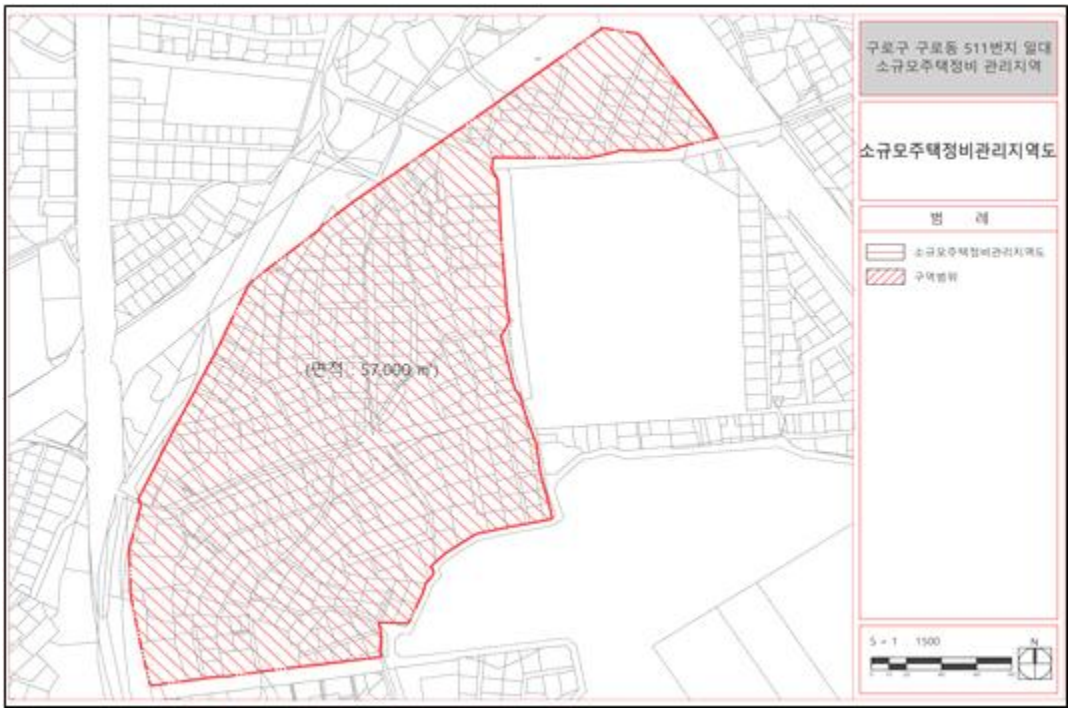

○ 금천구 시흥5동 2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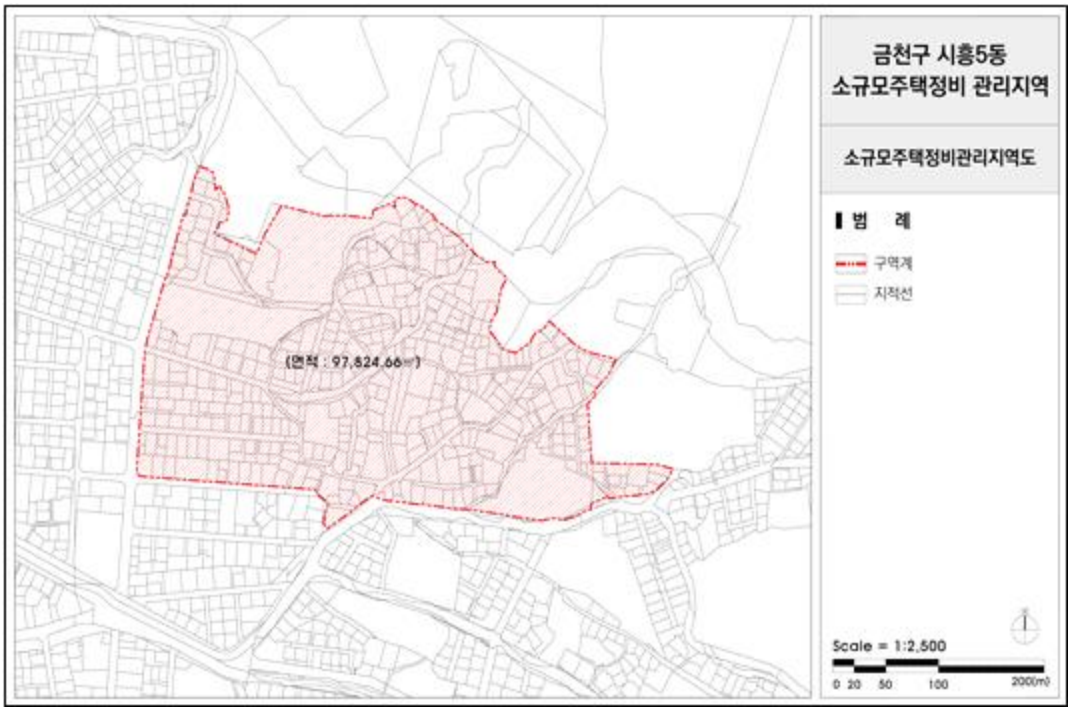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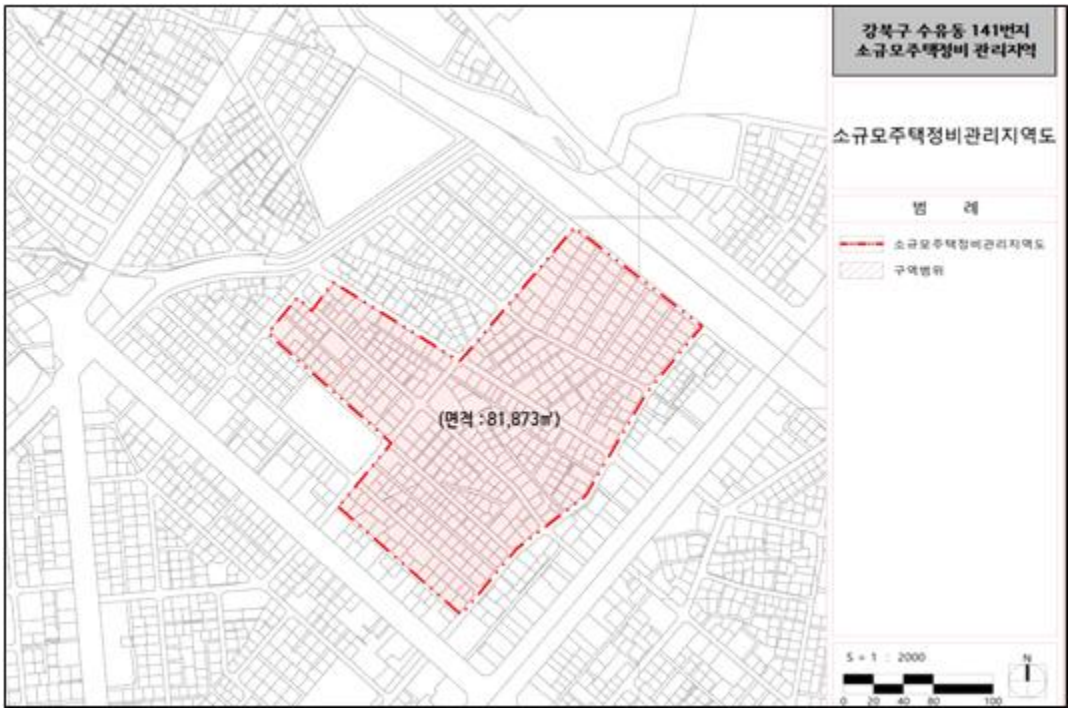

○ 성북구 석관동 1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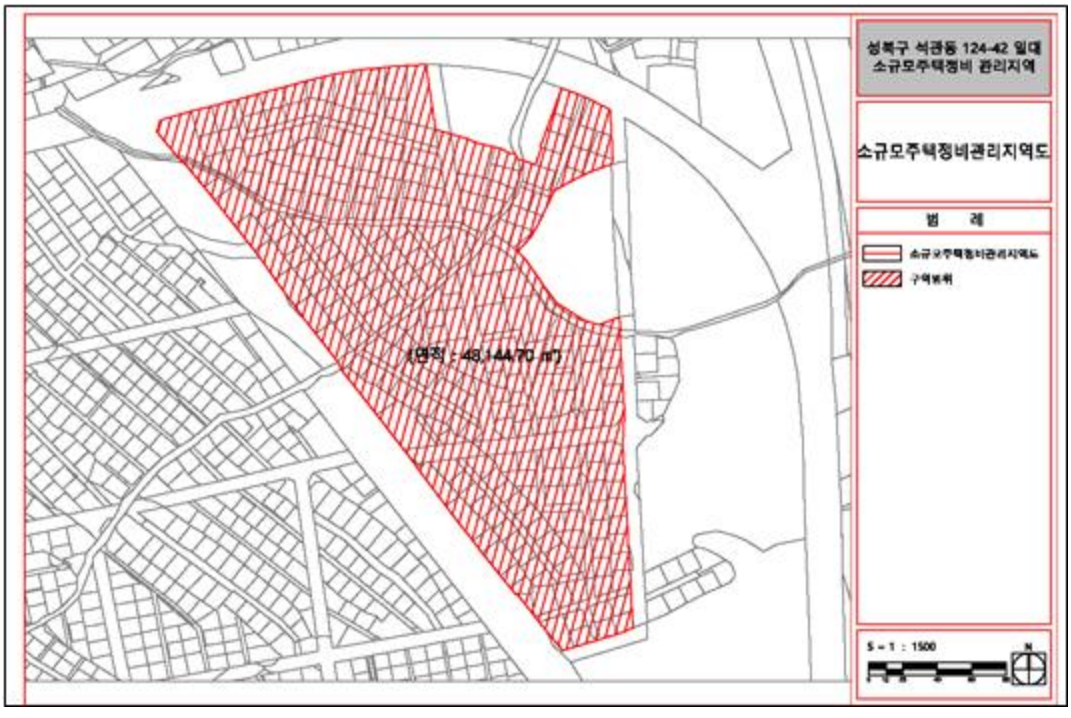

○ 중랑구 망우3동 474-29

○ 중랑구 묵2동 2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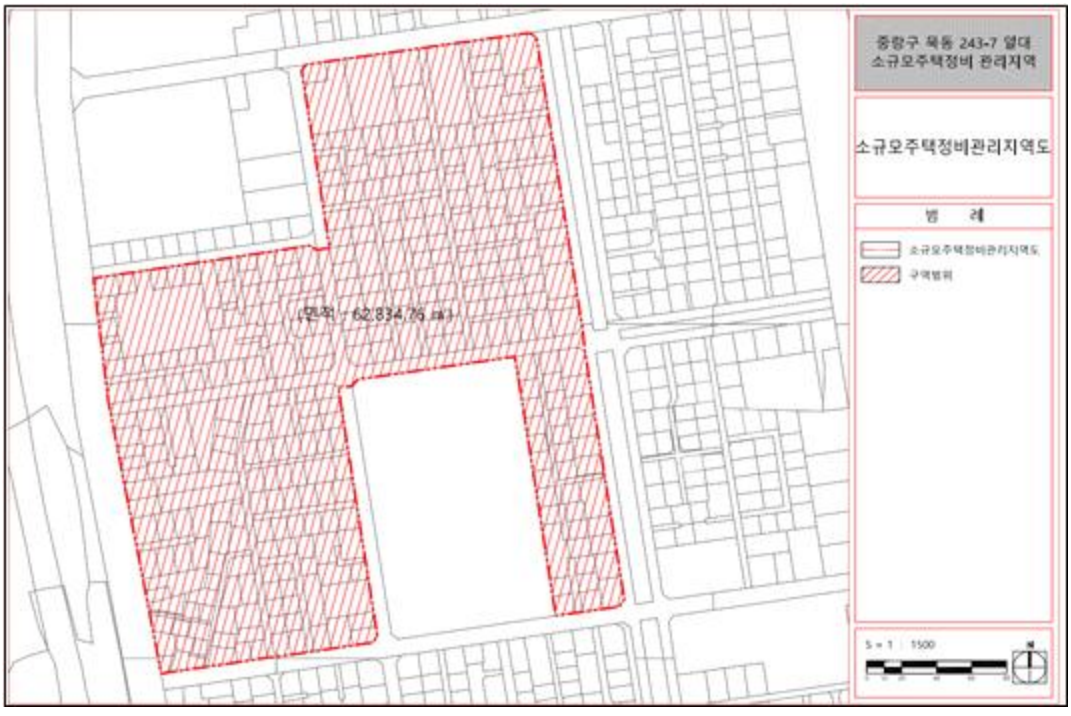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치산역)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0-695호(' 90.10.13.)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648호) 시행한「5호선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662-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설치사업(도시철도: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2) 명 칭 : 5호선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7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2023년 11년 30일)
2)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39)로 문의 바랍니다.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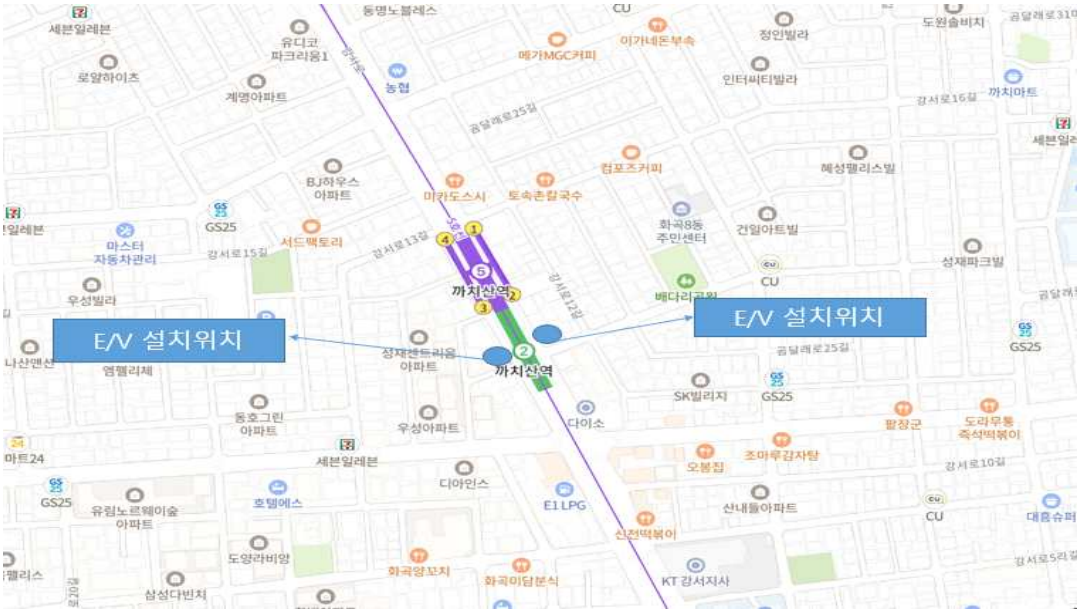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양천구	신월3동 173 일대	합계	80,030.5		
			기존	61,500.0	2022. 6. 23.	
			추가	18,530.5	2023. 11. 30.	구역 확대 ※ 23년 제14차 전문가 사전자문 (`23. 11. 15.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2023. 11. 30.(구역 확대 18,530.5㎡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양천구 신월3동 17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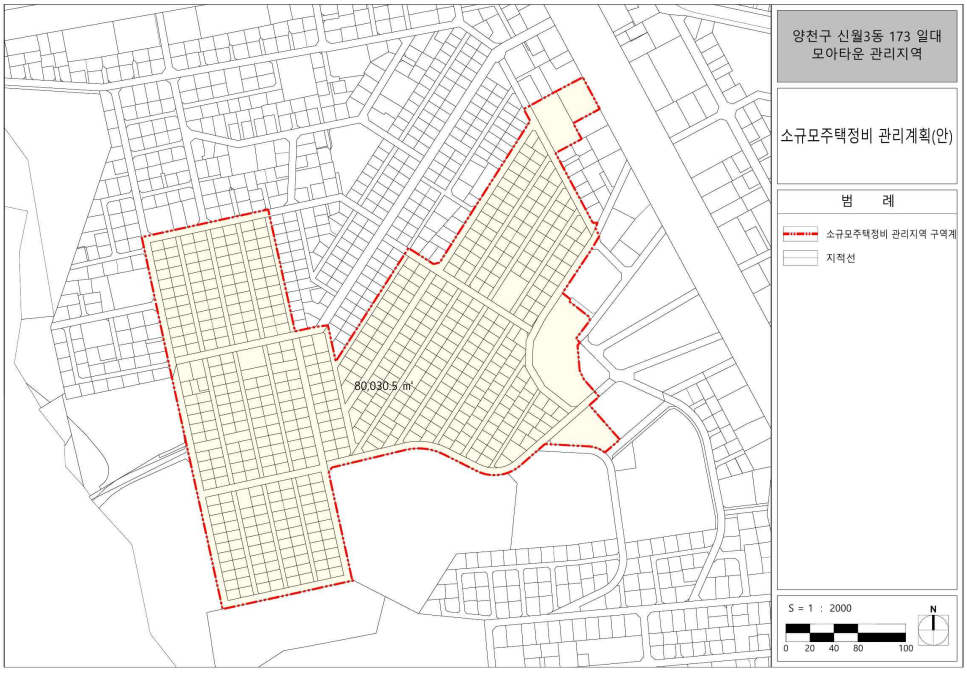

추가구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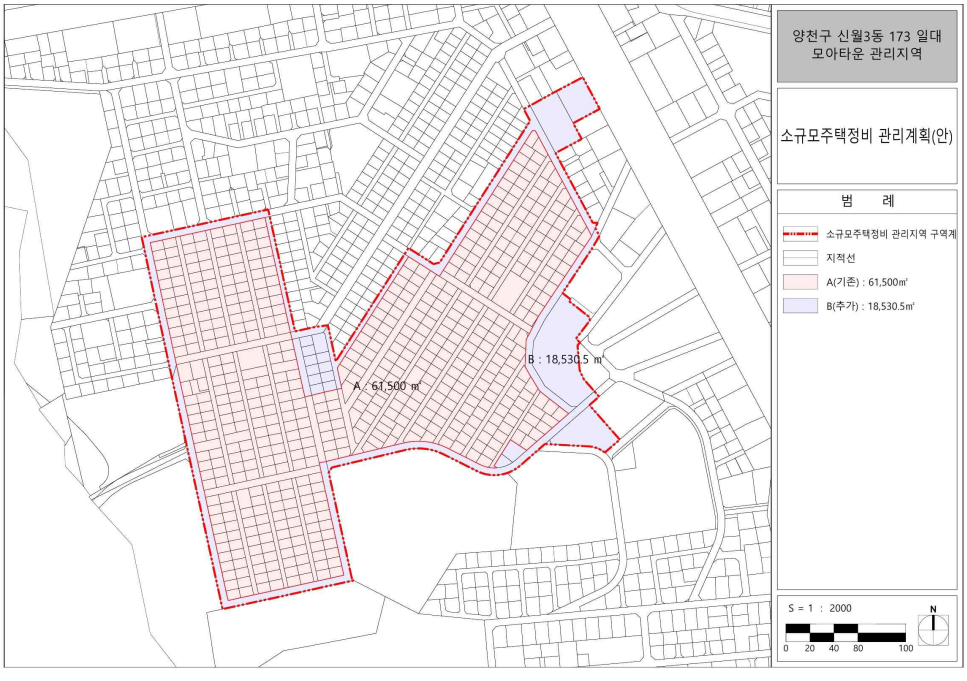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구로구	고척동 241 일대	78,700	`23. 09. 22.	
		고척동 241 일대	97,232	`23. 11. 30.	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회의 `23. 11. 15.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 2023. 11. 30. (구역 확대 18,532㎡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고척동 24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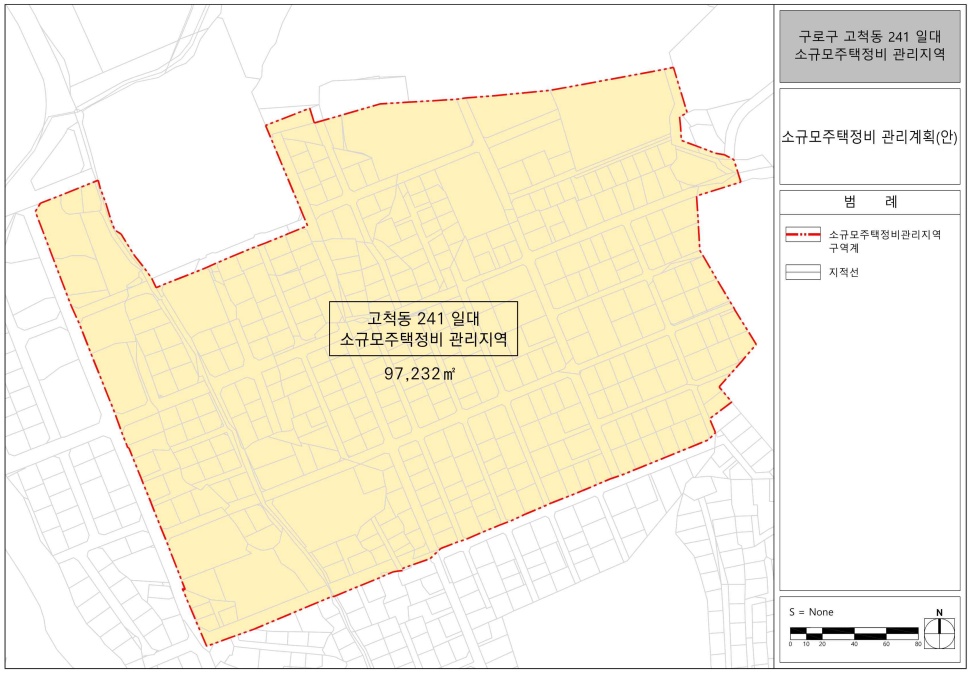

추가구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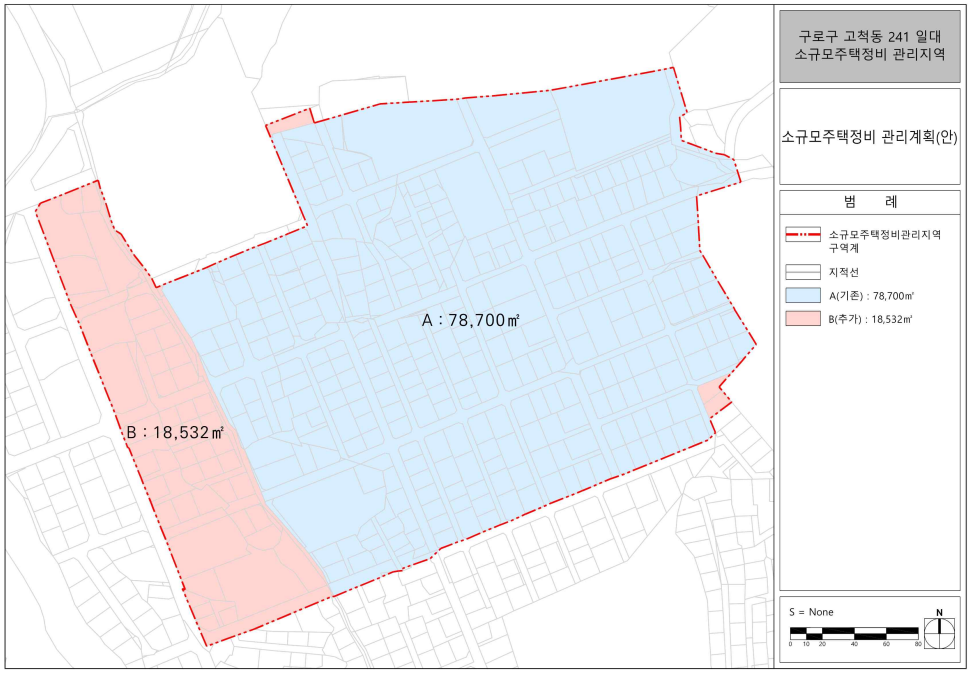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7호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1996.11.8.)호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8호(2006.4.6.)로 재정비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8.22.)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1303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삼양 지구중심 신설,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및 중심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1	삼양사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일대	74,670	증) 30,330	105,000	서고시 제308호 ('96.11.13)	-
변경2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일대	2,007	감) 2,007	0	서고시 제347호 ('23.08.1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1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688-5번지	74,670 → 105,000	• 생활권계획상 삼양지구중심 신설, 우이신설선(삼양사거리역) 개통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및 중심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구역계 확장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일대		포함하여 구역 확장 - 확장면적 : 31,025㎡ • 기정 구역계와 자력재개발구역 중복 필지 구역 제척 - 위치 : 미아동 791-3275 - 제척면적 : 399㎡ • 특별계획구역3 사업완료에 따라 불필요한 구역계의 필지관통부지 제척 - 위치 : 미아동 715, 716 - 제척면적 : 296㎡	
변경2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2,007 → 0	•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에 편입하여 삼양지구 지역의 계획적 관리 유도	-

2.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	143,251.0	감) 1,835.6	141,415.4	2018.02.19	-

※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2021.08.1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	143,251.0 → 141,415.4	•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미아동 791-2118번지)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에 편입하여 삼양지구 지역의 계획적 관리 유도	-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5,695	-	105,69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426	증) 695	10,121	9.6	제척필지 (준주거→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55	-	355	0.3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599	-	21,599	20.4	-
	준주거지역	72,308	감) 695	71,613	67.8	제척필지 (준주거→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007	-	2,007	1.9	역세권 활성화사업

※ 총면적 :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제척필지 포함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미아동 715, 716, 791-3275 일대	준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감) 695	•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제척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준주거지역 →제2종(7층)) - 관통필지구역 : 미아동 716, 715 제척 (감 296㎡) - 구역 중복으로 제척되는 도로 미아동 791-3275 (감 399㎡)	제척 필지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 : 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미아동 703-1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 이하	3,557,000 (13,328)	증) (5,293)	3,557,000 (18,621)	서고시 404호 ('90.12.10)	-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① 〈완화시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②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

(단,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 탑 및 엘리베이터 탑은 제외)

※ 고도지구 변경 결정시 변경된 사항에 따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	최초결정	비고
기정	①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우이동319~ 삼양동 사거리	150,203 (3,645.5)	5,300 (300)	양측 15m	서고시 제129호 ('19.4.18)	삼양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북한산 주변	• 구역 내 면적 증가 증) 5,293㎡	• 삼양사거리역 주변 구역 확대에 따른 면적 증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7	20~30	보조간선 도로	5,055 (206)	미아동	수유동	일반도로	건고시 제738호 (63.12.24)	
변경	중로	1	47	20~30	보조간선 도로	5,055 (402)	미아동	수유동	일반도로		일부구간 폭원축소 구역내 구간연장
기정	중로	1	65	20~25	보조간선 도로	3,450 (410)	대로 1-8 (도봉로)	대로 3-58	일반도로	건고시 제738호 ('63.12.24)	일부구간 폭원축소
기정	중로	3	ⓑ	15~20	국지도로	167	미아동 1345-1	미아동 700-72	일반도로	서고시 제354호 ('90.10.24)	-
기정	중로	3	ⓔ	12~15	국지도로	495 (308)	미아동 860-58	미아동 844-1	일반도로	서고시 제354호 ('90.10.24)	-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32	미아동 703-13	미아동 718-10	일반도로	서고시 제354호 ('90.10.24)	-
기정	소로	2	ⓒ	8~26	국지도로	140	미아동 860-4	미아동 718-10	일반도로	서고시 제442호 ('20.11.05)	-
폐지	소로	2	ⓕ	8	국지도로	60	미아동 860-66	미아동 682-4	일반도로	서고시 제118호 ('06.04.06)	-
신설	소로	2	ⓖ	6~8	국지도로	90	미아동 1345-2	미아동 691-22	일반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필지교환가능선)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270	미아동 703-56	미아동 838-20	일반도로	서고시 제354호 ('90.10.24)	강북고시 제105호 ('20.7.2.) 실효대비 변경

※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7	중로1-47	• 일부구간 폭원 축소 • 구역내 구간 연장	• 특별계획구역(도로 기부채납) 폐지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 • 구역계 변경에 따른 구간 연장
소로2-ⓕ	-	• 폐지	•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	소로2-ⓖ	• 도로 신설(6~8m)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 솔샘시장변 보행의 쾌적성, 안전성을 도모하고 주변시설과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2) 주차장 : 변경

(1)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미아동 703-8호	676	-	676	강북고시 제66호 ('00.10.2.)	-
신설	②	주차장	미아동 698-3 일원	-	증)757	757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②	주차장	• 주차장 신설 (증 757㎡)	•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 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미아동 694-1번지 일원	1,330	감) 1,330	-	서고시 제118호 ('06.04.06)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미아동 698-1번지 일원	-	증) 636.6	636.6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폐지	①	공원	어린이 공원	• 시설폐지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미집행 공원 폐지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 신설 (증 636.6㎡)	• 기 조성된 솔샘시장 내 쉼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	—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미아동 1346-4번지 일원	294	감) 294	-	서고시 제118호 ('06.04.06)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시장 : 변경없음

(1) 시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동북시장	미아동 701-3번지 일원	2,600	-	-	서고시 제28호 ('75.2.14)	

2)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1) 수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수도 공급 설비	가압장	미아동 671-2번지	1,487	-	1,487	서고시 제566호 ('78.10.31)	

4.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가. 친환경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방재안전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지역(역사)자산 보전 · 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 ·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1)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0㎡미만	-
준주거지역	전면부	1,500㎡미만	2,500㎡미만	-
	이면부	600㎡미만	2,500㎡미만	-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할 수 있음
적용제외 : 기존 필지가 최대 개발규모 초과시,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 공동개발), 획지 계획상 공동개발로 지정된 필지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대개발규모 신설	•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최대개발규모 설정(신설)
준주거지역	• 최대개발규모 변경 - 기정 : 전면부 1,500㎡/이면부 600㎡ - 변경 : 2,500㎡	• 필지별 자율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최대개발규모 변경

나. 공동개발 : 변경

1) 공동개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및 계획기준	비고
기정	공동건축	• 공동건축이 지정된 대지는 계획되어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함 • 공동건축이 지정된 필지에 한해서는 최대 획지 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을 허용함 • 공동건축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획지에 대하여 추후 운영과정에서 공동건축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개별 획지는 각각 공동건축 내 규제내용과 동일한 적용을 받음 • 공동건축이 권장된 대지는 계획되어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 • 최대 획지규모 내에서 획지 간 공동건축 가능	
변경	공동개발 (지정)	• 기건축된 건축물의 필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	
	공동개발 (권장)	• 부정형 대지 • 용도지역별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이하의 대지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공동개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지정, 권장)	• 획지 지정 폐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건축물 신축 유도를 위해 획지 폐지, 동일 소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계획 수립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1	701-1	814.0	1,071.4	공동건축 지정		
	791-2288	93.0				
	791-2289	129.8				
	791-2290	34.6				
	701-3	2,859.5	4,185.10	공동건축 지정		
	701-5	153.0				
	701-8	113.0				
	701-19	533.0				
	701-23	109.0				
	791-2290	32.8				
	791-2291	63.0				
	791-2292	33.0				
	791-2293	26.0				
	838-8	214.8				
	838-10	10.0				
	838-13	34.0				
	860-138	4.0				
	703	621.7	751.6	공동건축 지정	공동건축 권장	
	791-2286	129.9				
	703-81	301.0	406.8	공동건축 지정		
	703-83	105.8				
	703-48	129.0	868.6	공동건축 지정		
	703-140	122.0				
	703-141	331.0				
	703-142	1.9				
	1347	281.2				
	1349-9	3.5				
2	703-8	11.5	342.5	공동건축 지정	공동건축 권장	
	703-53	17.0				
	703-54	149.0				
	703-58	165.0				
	703-55	120.0	333.7	공동건축 지정		
	703-56	96.3				
	703-57	117.4				
	703-9	99.0	653	공동건축 지정		
	703-31	295.0				
	703-50	99.0				
	703-92	160.0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2	703-51	185.0	592	공동건축 지정		
	703-59	205.0				
	703-107	93.0				
	703-108	109.0				
	1348-1	284.5	339.8	공동건축 지정		
	1348-6	55.3				
	1348-2	291.6	492.1	공동건축 지정	공동건축 권장	
	1348-3	325.4				
	1348-4	121.9				
	1348-5	44.8				
3	715	191	-			
	716	92.4	-			
4	681-40	58.4	1,749.1	공동건축 지정		
	681-42	37.7				
	681-43	10.0				
	682-1	165.4				
	683-1	3.0				
	683-4	6.3				
	683-5	85.9				
	684-6	172.0				
	684-7	40.0				
	687-1	225.0				
	688-1	256.6				
	688-2	69.0				
	688-3	162.0				
	688-4	58.4				
	860-102	0.4				
	860-103	69.0				
	860-105	218.0				
	860-136	9.0				
	880	103.0				
	682-35	256.6	-			
	682-36	69.0	231	공동건축 지정		
	682-37	162.0				
5	860-106	152.0	-	공동건축 권장		
	860-107	221.0				
	681-3	191.9	-	공동건축 권장		
	860-108	181.0				
	860-109	132.0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6	681-33	83.0	-	-	
	681-34	89.0	-	-	
	681-35	89.0	-	-	
	681-36	79.0	-	-	
	681-37	189.0	-	-	
	681-39	86.0	-	-	
7	681-25	116.0	-	-	
	681-26	112.0	-	-	
	681-27	109.0	-	-	
	681-28	122.0	-	-	
	681-29	112.0	-	-	
	681-30	93.0	-	-	
	681-31	89.0	-	-	
	681-32	96.0	-	-	
8	681-15	89.0	93	공동건축 지정	
	681-53	4.0			
	681-16	99.0	-	-	
	681-17	106.0	-	-	
	681-18	99.0	-	-	
	681-19	106.0	-	-	
	681-20	93.0	-	-	
	681-21	93.0	-	-	
	681-22	96.0	-	-	
	681-23	93.0	-	-	
	681-24	89.0	-	-	
9	681-5	119.0	-	-	
	681-6	102.0	-	-	
	681-7	109.0	-	-	
	681-8	126.0	-	-	
	681-9	132.0	-	-	
	681-10	112.0	-	-	
	681-12	83.0	-	공동건축 권장	
	681-46	99.0			
	681-47	96.0	-	-	
	681-13	73.0	-	공동건축 권장	
	681-48	106.0			
	681-49	102.0	-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698-1 일대	685-21	106	14,133	삼양 특별계획구역 ①	
	691-4	642			
	691-5	271			
	691-6	51			
	691-7	53			
	691-8	155			
	691-9	106			
	691-10	17			
	691-12	202			
	691-5	271			
	691-16	390			
	691-21	344			
	691-22	24			
	691-23	123			
	691-24	26			
	691-25	87			
	691-27	132			
	691-35	22			
	693	552			
	694-1	162			
	694-2	145			
	695-1	97			
	695-2	97			
	695-3	175			
	695-4	238			
	695-6	53			
	695-7	145			
	695-8	89			
	697-5	252			
	698-1	625			
	698-2	529			
	698-3	537			
	698-7	48			
	698-13	5			
	698-23	129			
	698-24	172			
	698-25	155			
	698-27	89			
	698-28	1			
	698-29	344			
	698-31	26			
	698-33	7			
	698-42	71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698-1 일대	698-43	29	14,133	삼양 특별계획구역 ①	
	699-3	30			
	699-6	73			
	699-7	83			
	699-8	106			
	699-9	102			
	699-10	43			
	699-11	96			
	699-12	42			
	699-13	36			
	699-15	18			
	699-16	19			
	699-17	145			
	699-18	107			
	699-19	6			
	699-20	149			
	699-21	109			
	699-22	109			
	699-24	126			
	699-25	55			
	699-28	142			
	699-29	23			
	699-31	26			
	699-32	93			
	699-33	83			
	699-34	102			
	699-35	75			
	699-36	121			
	699-37	102			
	699-38	79			
	699-39	66			
	699-40	102			
	699-42	99			
	699-43	7			
	699-44	505			
	699-45	27			
	699-46	19			
	699-50	29			
	699-51	46			
	699-52	50			
	699-53	145			
	699-54	23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698-1 일대	699-57	5	14,133	삼양 특별계획구역 ①	
	699-60	81			
	860-67	279			
	880	721			
	1344-1	152.4			
	1344-3	51.7			
	1344-4	27.3			
	1345-1	304.5			
	1345-2	206.4			
	1345-3	162.7			
	1345-4	135.3			
	1345-5	136.7			
	1345-6	125.2			
	1345-7	80.6			
	1345-9	9724			
	1346-1	352.2			
	1346-2	313.9			
	1346-4	186.7			
	1346-5	168.3			
	1346-8	115.8			
	1346-9	265.8			1345-9번과 합병되어 말소
	1346-12	119.4			1345-9번과 합병되어 말소
	1349-6	265.0			1343-6번과 합병되어 말소
	1349-8	423.8			
미아동 688-5 일대	684-1	307	5,499	삼양 특별계획구역 ②	
	684-2	278			
	684-3	72			
	684-10	119			
	684-13	26			
	684-14	284			
	685-1	188			
	685-10	122			
	685-11	291			
	685-19	103			
	685-20	99			
	685-21	106			
	687-3	86			
	687-4	212			
	687-5	93			
	687-6	86			
	687-7	93			
	687-8	96			
	687-9	86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688-5 일대	687-10	119	5,499	삼양 특별계획구역 ②	
	687-13	17			
	688-5	1249			
	688-7	7			
	691-1	654			
	691-2	1467			
	691-15	598			
	691-19	129			
	691-30	11			
	693	552			
	1346-6	271.3			
	1346-7	28.9			
	1346-12	119.4			1345-9번과 합병되어 말소
	1346-13	219.4			1346-6번과 합병되어 말소
미아동 703-17 일대	703-11	40	10,976.7	삼양 특별계획구역 ③	
	703-12	139			
	703-15	274			
	703-16	174			
	703-17	205			
	703-18	182			
	703-19	152			
	703-20	171			
	703-23	224			
	703-24	165			
	703-25	145			
	703-26	205			703-27번과 합병되어 말소
	703-27	530			
	703-28	86			703-27번과 합병되어 말소
	703-34	271			
	703-39	23			
	703-40	76			
	703-41	40			
	703-60	122			
	703-62	76			
	703-64	93			
	703-84	99			
	703-111	83			
	703-112	63			
	703-113	66			
	703-114	86			
	703-115	93			
	703-116	106			
	703-117	86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703-17 일대	703-119	9	10,976.7	삼양 특별계획구역 ③	
	703-121	3			
	703-123	60			
	703-124	66			
	703-125	33			
	703-126	69			
	703-127	89			
	703-134	162			
	703-149	179			
	703-153	24			
	705-1	221			
	705-3	235			
	705-5	10			
	705-6	17			
	705-7	33			
	705-8	3			
	706-1	28			
	706-2	49			
	706-3	129			
	706-6	20			
	718-1	316			
	718-2	90			
	718-3	245			
	718-5	96			
	718-6	106			703-27번과 합병되어 말소
	718-7	102			
	718-8	46			
	718-9	205			
	718-11	225			
	718-12	225			
	860-4	284			
	860-52	1273			
	860-74	221			
	860-75	205			
	860-76	132			
	860-77	307			
	860-79	165			
	860-80	96			
	860-81	109			
	860-82	93			
	860-83	109			
	860-84	172			
	860-87	69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703-17 일대	860-88	202	10,976.7	삼양 특별계획구역 ③	
	860-91	125			
	860-81	109			
	860-96	287			
	860-98	294			
	860-142	2			
	860-43	71			분할되어 본번에 -315부함
	860-263	73			
	860-269	93			

< 이 하 여 백 >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1	734-108	882			
	734-290	383			
	734-296	166			
	734-294	213			
	734-293	213			
	734-292	166			
	734-297	166			
	734-298	166			
	734-299	166			
	734-300	171			
2	734-131	203	1,074	공동개발 권장	
	734-258	504			
	734-237	99			
	734-235	129			
	734-236	139			
	703-5	370	1,485	공동개발 권장	
	703-6	880			
	734-239	106			
	734-238	129			
3	745-97	152			
	745-96	109			
	745-95	109			
	745-94	109			
	745-98	274			
	745-100	762			
4	703-1	416			
	703-33	290			
	703-118	76	314	공동개발 권장	
	703-133	73			
	703-131	165			
5	734-261	141			
	734-269	141			
	734-271	133			
	734-270	171			
	734-272	181			
	734-273	159			
	734-263	228			
	703-145	145			
	734-266	235			
	734-267	145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5	703-7	159				
	703-146	145				
	703-147	139				
	703-148	139				
6	703-165	3				
	703-166	13				
	703-51	186				
	703-59	205				
	1348-2	291.6				
	703-31	295				
	703-107	93	202	공동개발 지정		
	703-108	109				
	1348-1	280.2	394	공동개발 권장		
	1348-6	113.9				
	703-9	99	198	공동개발 권장		
	703-50	99				
	1348-3	331.7	678	공동개발 권장		
	1348-4	130.6			공동개발 지정	
	1348-5	55.3		공동개발 권장		
	703-92	160				
	703-55	120	673	공동개발 권장 (703-56)	공동개발 지정	
	703-53	17				
	703-54	149		공동개발 권장 (703-58)		
	703-58	165		공동개발 권장 (703-54)		
	703-56	96		공동개발 권장 (703-55)		
	703-57	126		공동개발 권장 (703-58)	공동개발 지정	
7	701-8	113				
	701-1	841				
	791-2288	93				
	703	753	1,158	공동개발 권장		
	703-83	104			공동개발지정	
	703-81	301				
	838-8	216	260	공동개발 권장		
	838-13	34				
	838-10	10				
	701-5	153	795	공동개발 권장		
	701-23	109				
	701-19	533				
	791-2293	25	116	공동개발 권장		
	791-2292	31				
	791-2291	60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7	791-2290	59	185	공동개발 권장		
	791-2289	126				
	703-140	122	870	공동개발 권장 (703-48)	공동개발 지정	
	1347	287.6		공동개발 권장 (703-141)		
	703-48	129		공동개발 권장		
	703-141	331				
8	1345-7	80.6	206	공동개발 권장		
	1345-6	125.2				
	1345-1	304.5				
	1345-5	136.7				
	1345-4	135.3				
	1345-3	162.7				
	1345-2	206.4				
9	1346-1	352.2	937	공동개발 권장		
	1346-2	313.9				
	691-5	271				
	1346-8	115.8	758	공동개발 지정		
	691-4	642				
	691-27	132				
	1346-4	186.7				
	1346-5	168.3				
10	1344-1	152.4	389	공동개발 권장		
	699-60	81				
	699-6	73				
	699-7	83				
	1344-3	51.7	102	공동개발 지정		
	699-52	50				
	699-32	93	176	공동개발 권장		
	699-33	83				
	699-34	102	177	공동개발 권장		
	699-35	75				
	699-38	79	181	공동개발 권장		
	699-37	102				
	699-54	23	195	공동개발 권장		
	698-23	172				
	699-36	121	122	공동개발 권장		
	699-59	1				
	699-57	5	60	공동개발 권장		
	698-25	55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699-24	126	419	공동개발 권장	
	699-25	55			
	699-20	149			
	698-27	89			
	1344-3	51.7			
	699-8	106	251	공동개발 권장	
	699-9	102			
	699-10	43			
	699-29	23			
	699-28	142			
	699-31	26			
	699-11	96			
	699-53	145			
	699-12	42			
	698-29	23			
	699-21	109			
	699-40	102			
	698-43	29			
	698-31	26			
10	699-15	18			
	699-16	19			
	699-22	109			
	699-42	99			
	698-13	5			
	699-50	29			
	699-17	145			
	699-18	107			
	699-19	6			
	699-51	46			
	699-46	19			
	699-43	7			
	699-45	27			
	699-13	36			
	1344-4	27.3			
	698-1	625			
	698-2	529			
	698-42	71			
	699-4	14			
	698-28	1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11	691-7	53	533	공동개발 권장	필지교환가능
	691-12	202			필지교환가능
	691-9	106			
	691-8	155			필지교환가능
	691-10	17			
	691-16	390	710	공동개발 권장	
	695-3	175			
	694-2	145			
	694-1	162	714	공동개발 권장	
	693	552			
	695-8	89	186	공동개발 권장	
	695-2	97			
	695-4	238	325	공동개발 권장	
	691-25	87			
	691-23	123	149	공동개발 권장	
	691-24	26			
	695-7	145			
	691-21	344			
	695-1	97			
12	860-327	73	254	공동개발 권장	
	860-108	181			
	860-106	152			
	860-107	148			
	860-109	132			
	681-3	192			
13	681-37	189	275	공동개발 권장	
	681-39	86			
	681-34	89	172	공동개발 권장	
	681-33	83			
	681-36	79			
	681-35	89			
14	681-31	89	185	공동개발 권장	
	681-32	96			
	681-29	112			
	681-30	93			
	681-28	122			
	681-27	109			
	681-26	112			
	681-25	116			
15	681-23	93	152	공동개발 권장	
	681-24	59			
	681-20	93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15	681-21	93			
	681-22	96			
	681-19	106			
	681-18	99			
	681-17	106			
	681-16	99			
	681-15	89			
16	681-46	99	182	공동개발 권장	
	681-12	83			
	681-48	106	179	공동개발 권장	
	681-13	73			
	681-6	102			
	681-7	109			
	681-10	112			
	681-47	96			
	681-49	102			
	681-5	119			
	681-8	126			
	681-9	132			
17	682-35	89			
	682-36	79			
	682-37	189			

< 이 하 여 백 >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703-17 일대	703-11	40	10,976.7	삼양 특별계획구역 III	
	703-12	139			
	703-15	274			
	703-16	174			
	703-17	205			
	703-18	182			
	703-19	152			
	703-20	171			
	703-23	224			
	703-24	165			
	703-25	145			
	703-26	205			
	703-27	530			
	703-28	86			
	703-34	271			
	703-39	23			
	703-40	76			
	703-41	40			
	703-60	122			
	703-62	76			
	703-64	93			
	703-84	99			
	703-111	83			
	703-112	63			
	703-113	66			
	703-114	86			
	703-115	93			
	703-116	106			
	703-117	86			
	703-119	9			
	703-121	3			
	703-123	60			
	703-124	66			
	703-125	33			
	703-126	69			
	703-127	89			
	703-134	162			
	703-149	179			
	703-153	24			
	705-1	221			
	705-3	235			
	705-5	10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703-17 일대	705-6	17	10,976.7	삼양 특별계획구역 III	
	705-7	33			
	705-8	3			
	706-1	28			
	706-2	49			
	706-3	129			
	706-6	20			
	718-1	316			
	718-2	90			
	718-3	245			
	718-5	96			
	718-6	106			
	718-7	102			
	718-8	46			
	718-9	205			
	718-11	225			
	718-12	225			
	860-4	284			
	860-52	1,273			
	860-74	221			
	860-75	205			
	860-76	132			
	860-77	307			
	860-79	165			
	860-80	96			
	860-81	109			
	860-82	93			
	860-83	109			
	860-84	172			
	860-87	69			
	860-88	202			
	860-91	125			
	860-81	109			
	860-96	287			
	860-98	294			
	860-142	2			
	860-43	71			
	860-263	73			
	860-269	93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688-5 일대	688-5	1,249	5,097	삼양 특별계획가능구역 1	
	1346-6	68			
	1346-7	28.9			
	691-30	11			
	688-8	110			
	691-1	654			
	691-19	129			
	687-9	86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05㎡)
	687-10	119			
	687-8	96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189㎡)
	687-7	93			
	687-5	93			
	687-6	86			
	687-3	86			
	687-4	212			
	685-1	188			
	685-10	122			
	684-1	307			
	684-14	284			
	685-11	291			
	685-21	106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05㎡)
	685-20	99			
	685-19	103			
	684-2	278			
	684-3	72			해제시 공동개발권장 (면적:191)
	684-10	119			해제시 공동개발지정 (면적:145)
	684-13	26			
	687-13	17			
	688-7	7			
미아동 688-4 일대	681-43	10	2,346	삼양 특별계획가능구역 2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05㎡)
	683-1	3			
	683-4	17			
	683-5	106			
	860-103	69			
	684-6	172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12㎡)
	684-7	40			
	687-1	225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81㎡)
	688-2	69			
	688-4	212			
	688-1	257			
	688-3	162			
	860-102	91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688-4 일대	880	133	2,346	삼양 특별계획가능구역 2	
	860-136	9			
	860-105	218			
	683-7	2			
	682-1	264			
	681-40	136			
	681-42	151			
미아동 703-13	703-13	2,007	2,007	삼양 특별계획구역 4	
미아동 734-241 일대	734-241	679	5,045	삼양 특별계획가능구역 7	
	734-254	159			
	734-255	116			
	734-257	238			
	734-253	436			
	734-244	124			
	734-284	2			
	734-243	132			
	734-245	119			
	734-246	136			
	734-249	106			
	734-248	106			
	734-247	99			
	734-252	112			
	734-251	112			
	734-250	155			
	734-329	1			
	734-338	1			
	734-339	5			
	734-337	32			
	734-169	272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85㎡)
	734-213	13			
	734-168	354			
	734-214	30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380㎡)
	734-186	350			
	734-183	102			
	734-185	218			
	734-182	76			
	734-181	106			
	734-139	69			
	734-180	119			
	734-177	96			
	734-179	109			
	734-178	109			
	734-176	152			

가구번호	지번	필지면적(㎡)	면적(㎡)	계획내용	비고
미아동 734-233 일대	734-233	142	3,450	삼양 특별계획가능구역 6	
	734-232	119			
	734-231	112			
	734-230	112			
	734-309	136			
	734-310	116			
	734-226	126			
	734-227	119			
	734-228	109			
	734-229	106			
	734-111	109			
	734-312	45			
	734-311	129			
	734-225	172			
	734-308	250			
	734-224	126			
	734-223	112			
	734-222	102			
	734-221	106			
	734-313	129			
	734-314	150			
	734-109	152			
	734-219	142			
	734-220	162			
	734-306	163			
	734-315	164			
	734-302	40			
미아동 703-73 일대	703-73	165	1,788	삼양 특별계획가능구역 5	
	703-65	227			
	734-319	82			해제시 공동개발 지정 (면적:254㎡)
	703-66	172			
	703-71	165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270㎡)
	703-72	105			
	734-308	17			
	734-302	28			
	703-70	76			
	703-77	89			
	703-137	155			
	703-69	33			해제시 공동개발 지정 (면적:149㎡)
	703-68	116			
	703-75	166			해제시 공동개발 권장 (면적:358㎡)
	703-138	192			

다. 필지의 교환 : 신설

1) 필지교환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시계획도로 (소(국) 2-⑨)		교환 필지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필지교환가능	미아동 691-7대	3.67㎡	미아동 860-67천	7.27㎡	가구 11번
	미아동 691-12대	3.18㎡	미아동 860-67천	7.28㎡	
	미아동 691-8대	5.32㎡	미아동 860-67천	5.37㎡	

■ 필지교환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미아동 860-67천(국·공유지)과 미아동 691-7, 691-12, 691-8(사유지) 필지교환	• 솔샘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 시 선형 정형화를 위한 필지 교환 (국공유지 ↔ 사유지)

■ 도로(필지교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⑨	6~8m	국지도로	90	미아동 1345-2	미아동 691-22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 도로 조성 (필지교환가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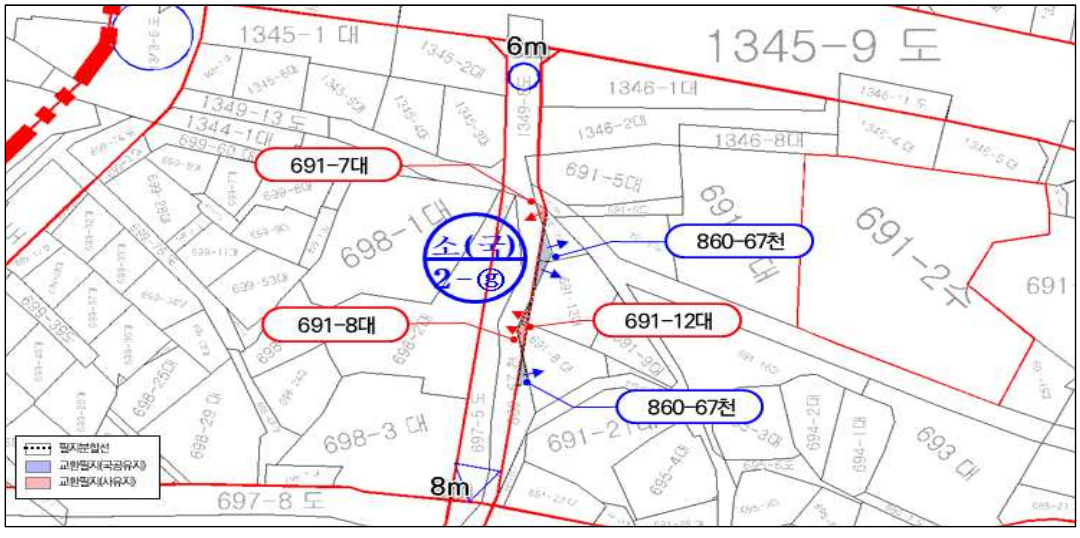

〈소(국) 2-⑨ 필지교환〉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불허용도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허용용도	비고
기정	불허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병원 부속시설 제외) 공장/ 창고시설/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변경	불허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 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준주거
	불허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접한 필지 해당)/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불허3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주1) 주거복합건축물 지상1층 및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 불허,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비율 10%이상 설치 의무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2023.03)」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

주2) 간선부(솔샘로,삼양로) 건축물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벽면 길이 50% 이상(단, 전면도로에 접하는 벽면 폭 3m이상 조성), 건축물 바닥면적 50%이상 필로티구조 금지

주3) 종교집회장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신규 건축하려는 경우 1층 전면부에 가로활성화 용도(건축물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를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 도입한 경우에만 허용. 가로활성화 용도 외 별도의 용도 도입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함

■ 불허용도 결정(변경)사유서

적용구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불허1	• 주거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추가	• 중심기능 입지 유도를 위한 간선부 주거전용 건축물 불허
불허2,3	• 불허용도 신설	• 구역계 확장에 따라 주변 지역환경 저해용도 불허

2) 권장용도

(1)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허용용도	비고
기정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판매 및 영업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보육원), 노인복지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 복지주택 제외)	-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소매시장 중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보육원),노인복지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특별계획구역
	C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보육원),노인복지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
변경	권장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교습소	전체 연면적 20%
	권장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	

※ 교육기능 특화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탁구장,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교습소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권장용도 결정(변경)사유서

적용구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솔샘로 주변 일대	• 교육관련시설 도입	• 지역내 교육기능 특화 및 역세권 생활편의 기능 확보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솔샘시장변 일대	• 근린지원시설 도입	• 솔샘시장 시장기능 유지를 위한 관련용도 권장용도 계획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 : 변경없음

(1) 건폐율계획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건폐율	비 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2) 용적률 : 변경

(1)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지 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정	간선도로 전면부	250% 이하	35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
	특별계획구역	300% 이하	360% 이하		-
변경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
	③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

※ 공공시설 제공 시 / 지하철 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적용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정비사업등의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313호)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 부분의 허용용적률' 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을 적용하되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 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서

적용구역	변경사유
삼양로, 솔샘로 주변 일대	• 지구 중심 위상 격상에 대응하고, 준주거지역 간선부/이면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 동일 적용 • 구역 확장지역 용도지역(제2종(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체계 신설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구분	내용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토지+1.0×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23.03)」 적용 (변경없음)
친환경 항목 적용시	• 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단,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사전협상제도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허용용적률× (1+0.7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1) ① 및 ② 항목 중복적용 불가 2) ① ~ ③항목 중복적용시 완화비율 최대 15% 적용 3)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시행 ① ZEB 인증 /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 인증 /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 ④ 장수명 주택 인증 -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수요조사 의무시행 - ZEB인증과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관련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 불가 및 건축물에 대한 준공·사용승인 ·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인증등급 등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법령 개정시해당 변동내용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 운영기준 (2023.03)」 준용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1.10.24.)」 상 상한용적률산정식을 적용한다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안)

■ 기정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획지	획지단위 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α	• 2개 이상의 개별필지를 획지계획 수립시 • 2필지 : 0.15 / 3필지 이상 : 0.2
	획지 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2개 이상의 획지에 대하여 공동건축 권장을 한 경우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 총연면적중 주차장면적은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 a=1.2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1.2	• 건축한계선 준수에 의한 후퇴부분의 면적으로 산정 • 미관지구내 제공의무면적 제외
대지 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필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보차 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 간판 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0.3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적용시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 서울시 기준 적용시 (설치 의무대상인센티브 배제)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0.1	• 지정 적용시

■ 변경(준주거지역)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중점	공동 개발	지정,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 α = 0.08(2필지), 0.1(3필지), 0.12(4필지 이상)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연면적) × α	• α = 0.5 ※ 단 최소제공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개방형 α=1.0 / 필로티 α= 0.5 최소폭원 4m, 최소면적 25㎡
		건축 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α = 0.2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 = 0.4
	공공 공간 제공	지상권 제공 등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연면적) × α	• α = 0.3 ※ 단 최소제공면적은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근생사무실제외)가 연면적 10% 이상 1~2층 입지 의무
※ 권장용도 중 1층이 모두 필로티인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없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120% 이내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변경사유

구 분	계획지침	비고
준주거지역	• 계획목적 달성을 위해 중점(공동개발, 건축물 용도), 계획유도(대지내 공지, 공공공간 제공) 항목으로 변경	–

■ 삼양1,2특별계획가능구역 인센티브 계획 결정(변경)(안)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허용용적률인센티브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연면적) X α	• α = 4 ※ 단 최소제공면적은 지상 연면적의 20%이상 설치
	계획유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대지면적 500㎡이상 개발 시 대지면적의 5%이상 확보시
			건축 한계선	기준용적률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α = 0.2
			공공 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α	• α = 0.4
		공공공간 제공	지상권 제공 등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α	• α = 1 ※ 단 최소제공면적은 지상 연면적의 10%이상 설치
		주차계획	개방주차장 (공유 주차장)	기준용적률 X (공유주차장 제공면적/연면적) X α	• α = 0.15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3면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 공유주차장 제공면적은 연면적 5% 이상
		물환경	빗물 이용시설	기준용적률 X 0.02 이내	– 빗물저류·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대기환경	환경 친화적 자동차	기준용적률 X α	[주거: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 전체 주차면수의1%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α = 0.1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 X α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 α = 0.1
		생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 (BF인증)	기준용적률 X α	-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 - α = 0.1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근생사무실제외)가 연면적 10% 이상 1~2층 입지 의무
※ 권장용도 중 1층이 모두 필로티인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없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120% 이내
※ 친환경 부문의 '주거', '비주거'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 삼양5~7특별계획가능구역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연면적) X α	• α = 1.4 ※ 단 최소제공면적은 지상 연면적의 20%이상 설치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대지면적 500㎡이상 개발 시 대지면적의 5%이상 확보시
			건축 한계선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α = 0.2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α	• α = 0.4
		공공 공간 제공	지상권 제공 등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α	• α = 0.2 ※ 단 최소제공면적은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주차계획	개방 주차장	기준용적률 X (공유주차장 제공면적/연면적) X α	• α = 0.05 - 법정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또는 옥외주차장

완화기준			완화내용	비고
구분	항목	세분		
		(공유 주차장)		3면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 공유주차장 제공면적은 연면적 5% 이상
	물환경	빗물 이용 시설	기준용적률 × 0.02 이내	- 빗물저류·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 면적x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대기 환경	환경 친화적 자동차	기준용적률 × α	[주거: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1%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 α = 0.03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 × α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 α = 0.03
	생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 (BF인증)	기준용적률 × α	-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 -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근생사무실제외)가 연면적 10% 이상 1~2층 입지 의무
※ 권장용도 중 1층이 모두 필로티인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없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120% 이내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변경)결정조서 : 변경

1) 높이 : 변경

(1) 높이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지 역	높 이 계 획	비 고
기정	최고높이	최고고도지구 및 이면부 단독주택지	20m(5층) 이하	-
		솔샘길변 동측	40m 이하	-
		삼양로 동측	7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I ~III	90m 이하	-
변경	최고높이	삼양로 서측(고도지구)	20m 이하	-
		삼양로 동측	50m 이하	-
		준주거지역	60m 이하	-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6층이하 / 완화시 8층 이하(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도지구 관련결정사항 변경시 해당 기준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적용구역	변경사유
삼양로, 솔샘로 주변 일대	• 지구중심 기능 강화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높이계획 변경 • 지역 내 근린지원기능(병·의원, 교육 등)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간선부 / 이면부 동일한 높이계획 마련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안의 공지 및 통로 : 변경

(1) 대지 안의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적용기준	비고
기정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2.5m	-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규제도 위치준수	-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
	통로	보차혼용 통로	• 이면 필지의 접근성 향상과 전면도로에서의 진출입 해소를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계획 - 폭원 : 4m ~ 6m	폭원 4m~6m	-
		공공보행 통로	• 보행자의 편의 및 긴 블록을 통과할 수 있는 보행통로 조성 - 폭원 : 4m ~ 6m	폭원 4m~6m	-
		현황통로	• 획지 내 유일한 현황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시 그 통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변경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 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한계선 1~4m	
	쌈지형 공지	간선도로변,주요도로 결절부	• 도면상 공개공지 위치가 설정된 필지는 지정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 권장 - 폭원 5m 이상 - 최소면적 : 25㎡ 이상	-	도면 표기

구 분			계획 내용	적용기준	비고
	통로	보차혼용 통로	• 이면 필지의 접근성 향상과 전면도로에서의 진출입 해소를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계획 • 건축선 확보대상지역을 보차혼용통로로 계획	폭원 4m~6m	도면 표기
		현황통로	• 필지 내 유일한 현황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시 그 통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나.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변경

(1)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간선부	삼양로	3m	-
		솔샘로	2m	
	이면부	솔샘로, 삼양로	1~2m	-
		솔샘로48길	2m/4m	
벽면 한계선	간선도로변		3m	-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 솔샘로 47번길(미아동 838-8 등) 건축한계선 내 일부를 차도형 전면공지(건축한계선 1m)로 조성

다. 교통처리계획 : 변경

(1)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솔샘로변, 삼양로변	• 간선부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도면표기
공동주차 출입구	솔샘로변, 삼양로변	• 둘 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구	도면표기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701-23	•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대지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도면표기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삼양특별계획구역4 : 역세권활성화사업결정 고시(23.08.17) 내용에 따름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701-23	• 차량출입불허 준수 • 권장용도 도입(1층 바닥면적 20% 이상)	100% 완화	도면표기

라.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환경친화적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	-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2013.02.)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
증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04.)' 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권장	-

마. 가설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 운용 : 신설

구 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존 건축물	가설건축물	•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대지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존치 기간내 주된 건축물이 해체 될 경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주된 건축물 해체일까지로 한다.	
특별계획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가설건축물	•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공고일 이후에는 존치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	

사. 경미한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의 변경
8. 공동개발(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단,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6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제외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처리는 구청장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아.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 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삼양특별계획구역 I	미아동 698-1 일대	14,133	감) 14,133	-	서울특별시고시 제308호 (1996.11.13.)	-
해제	삼양특별계획구역 II	미아동 688-5일대	5,499	감)5,499	-	서울특별시고시 제308호 (1996.11.13.)	-
기정	삼양특별계획구역III	미아동 703-17일대	10,976.7	-	-	서울특별시고시 제308호 (1996.11.13.)	세부개발 계획수립 (2020.11.)
신설	삼양특별계획구역4	미아동 703-13 일대	-	증) 2,007	2,007	-	-
신설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1	미아동 688-5 일대	-	증) 5,097	5,097	-	-
신설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2	미아동 688-4일대	-	증) 2,346	2,346	-	-
신설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미아동 703-73 일대	-	증) 1,788	1,788	-	-
신설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6	미아동 734-233 일대	-	증) 3,450	3,450	-	-
신설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7	미아동 734-241 일대	-	증) 5,045	5,045	-	-

나.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변경사유
해제	①	삼양특별계획구역 I	14,133	• 이면부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고 블럭내 보행 인프라(재래시장, 골목길 등)와 연계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해제	②	삼양특별계획구역 II	5,499	•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
신설	④	삼양특별계획구역4	2,007	• 삼양로 간선부 대규모 단일 필지로서 특별계획구역 신설(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중)
신설	①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1	5,097	• 통합개발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및 현황여건 정비 필요성 증대로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3년후 세부개발계획 미신청시 해제, 주민제안시 2년 연장 가능)
신설	②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2	2,346	
신설	⑤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1,788	• 삼양지구중심 위상 격상 및 우이신설선(삼양사거리역)개통에 따른 신규역세권 수요에 대항하기위해 특별계획가능 구역 신설(3년후 세부개발계획 미신청시 해제, 주민제안 시 2년 연장 가능)
신설	⑥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6	3,450	
신설	⑦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7	5,045	

2.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삼양특별계획구역Ⅲ 계획지침 :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명		•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위치		• 미아동 703-17일대	
면적		• 10,976.7㎡	
용도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삼양로변 폭 15m)	
용도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례식장(병원부속시설 제외), 공장, 창고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 제외), 노인복지시설 중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 • 소매시장 중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 유치원, 보육원, 노인복지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360% 이하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 토지면적 / 공공시설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최고높이	• 최고높이 99m 이하 ※ 사선제한배제 ※ 공공임대 추가 확보 시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솔샘로변전면부(3m), 이면부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지역 필요시설 건축물(일부) 기부채납 ※ 기부채납비율; 24.5% 이상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솔샘로변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공공보행통로6m지정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	

※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III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보 제 3662호)(2021.03.25.)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구역계 변경 없음)
(면적 : 10,914㎡ → 10,976.7㎡)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308호(1996.11.13.)
※ 세부개발계획수립(2020.11)

2) 삼양특별계획구역4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명		• 삼양특별계획구역4	역세권 활성화사업
위치		• 미아동 703-13	
면적		2,007㎡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근린상업지역 변경)	
용도	지정용도	• 교육기능 특화용도 : 제1종근생중 탁구장, 체육도장/제2종근생중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교습소, 도서관 /수련시설 중 청소년특화시설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2종근생 종교집회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 •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종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 : 250%/ 상한 : 600%	
	최고높이	• 최고높이 80m 이하 (삼양로변 15m : 6층이하)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배치	• 건축한계선 : 삼양로변 3m / 삼양로32나길변 2m ※ 보도 부속형 전면 공지로 조성	
	• 대상지 동측 3m ※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조성	
대지내 공지	• 간선변 북서측 쌈지형공지 조성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 북측4m 폭 공공보행통로 동-서간 연계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 6m조성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4 : 3m,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 3m)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구역해제 시 보차혼용통로5m 조성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4 : 3m,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 2m)	
공공기여계획	• 기부채납 부담률33.25% 내외 - 건축물 : 공공주택, 지역필요시설	

※최초결정일 : 서고시 제 3899호(23.08.17.)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역세권 활성화사업)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체계 및 공공기여율 적용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1)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1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명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1	
위치			• 미아동 688-5 일대	
면적			5,097㎡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 변경)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권장용도	교육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소매점(완구,서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 교육연구시설 : 학원, 도서관, 교습소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교육 관련 10% 이상)
		판매업무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시장, 상점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주거복합건축물만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지침</th><th>비고</th></tr>
<tr><td></td><td></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볼링장, 일반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 판매시설 : 소매시장, 상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td><td></td></tr>
<tr><td rowspan="3">밀도</td><td>건폐율</td><td>• 60%</td><td></td></tr>
<tr><td>용적률</td><td>• 300% / 630% / 80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 주거외용도 비율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으로 적용함
-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적용함(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2019.9.19.)
- 허용용적률630% 적용시 주거용 건축물 330% 이하 제한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주거 대 비주거배분방법
<table>
<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 colspan="2">상한용적률배분</th></tr>
<tr><th colspan="2">구분</th><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건립</th></tr>
<tr><td colspan="2" rowspan="3">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α)/β</td></tr>
<tr><td colspan="2">α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td></tr>
<tr><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td></tr>
</table></td><td></td></tr>
<tr><td>최고 높이</td><td>• 최고높이 : 110m</td><td></td></tr>
<tr><td colspan="2">건축물배치</td><td>• 건축한계선 : 솔샘로, 삼양로변 5m / 삼양로27길, 이면부 2m
• 최상층 개방·옥상녹화 권장</td><td></td></tr>
<tr><td colspan="2">대지내공지</td><td>• 공개공지 : 삼양사거리간선부1개소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td><td></td></tr>
<tr><td colspan="2">대지내통로</td><td>• 공공보행통로2개소 (폭원4m, 6m)(필로티구조가능)
• 보차혼용통로2개소(6m)</td><td></td></tr>
<tr><td>교통처리계획</td><td>차량 출입 불허 구간</td><td>• 삼양로 및 솔샘로 간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td><td></td></tr>
<tr><td colspan="2">공공기여 계획</td><td>• 기부채납 부담률 30%이상
- 토지 : 도로 확폭(솔샘로2~3m,삼양로6m)(673.4㎡, 13%)
※ 삼양로6m (완화차선3m / 보도 확보3m) : 완화차선 확보에 따른 보도 이격으로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도 확보
- 건축물(토지환산면적 기준 기부채납 부담률 10%이상): 주차장, 육아 및 청소년시설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형 SOC</td><td></td></tr>
</table>

구분	계획지침	비고
	※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간선부진출입불허, 이면도로 확보 의무 / 가압장연접부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 권장 ※ 간선부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 - 완화차선 확보를 위한 기존 차로 → 보도 전환에 따라 보도 확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공기여에서 제외함	

※ 권장용도 외 권장용도와 비슷한 목적의 용도로서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권장용도 인정
허용용도 외 허용용도와 비슷한 시설로서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1 해제 시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 5,097㎡	-
가구 및 획지계획	• 공동개발(권장) 및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자(지정) 및 구역계정형화 • 자율적 공동개발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 접한 필지 해당)/다중주택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공장, 창고시설/교정 및 군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전체 연면적 20%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00% / 360%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50m	-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 삼양로: 3m / 삼양로27길 : 1m • 저층부벽면한계선 - 솔샘로: 2~4m (2층 이하)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대지 내 통로	• 보차혼용통로2개소(6m) : 가압장부지 통행, 구역 동서구간 연결 • 보차혼용통로2개소(4m) : 이면도로 통행 • 공공보행통로1개소(4m) : 간선부차량 진출입불허 및 보행 통행 환경 조성	-
기타	•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간선부 진출입 불허	-

2)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2 : 신설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계획지침</th><th>비고</th></tr>
<tr><td colspan="3">구역명</td><td colspan="2">•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2</td><td></td></tr>
<tr><td colspan="3">위치</td><td colspan="2">• 미아동 688-4일대</td><td></td></tr>
<tr><td colspan="3">면적</td><td colspan="2">• 2,346㎡</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2">•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 변경)</td><td></td></tr>
<tr><td rowspan="3">용도</td><td rowspan="2">권장용도</td><td>교육</td><td>• 제1종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소매점(완구,서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 교육연구시설 : 학원, 도서관, 교습소</td><td rowspan="2">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교육관련 10%이상)</td></tr>
<tr><td>판매업무</td><td>•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시장, 상점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td></tr>
<tr><td>허용용도</td><td colspan="2">• 공동주택 : 아파트(주거복합건축물만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볼링장, 일반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 판매시설 : 소매시장, 상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학원,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td><td></td></tr>
<tr><td rowspan="3">밀도</td><td>건폐율</td><td colspan="2">• 60%</td><td></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2">• 300% / 630% / 80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 주거외 용도 비율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적용함
-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적용함(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2019.9.19.)
- 허용용적률630% 적용시 주거용 건축물 330% 이하 제한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배분방법
<table><tr><th colspan="2">기준 용적률</th><th colspan="2">허용 용적률</th><th colspan="2">상한용적률배분</th></tr><tr><th colspan="3">구분</th><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건립</th></tr><tr><td colspan="3" rowspan="3">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β-α)/β</td></tr><tr><td colspan="2">α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td></tr><tr><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td></tr></table></td><td></td></tr>
<tr><td>최고높이</td><td colspan="2">• 최고높이 : 80m</td><td></td></tr>
<tr><td colspan="3">건축물배치</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 솔샘로, 삼양로변 3m</td><td></td></tr>
</table>

구분		계획지침	비고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 삼양사거리 간선부1개소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삼양로 및 솔샘로 간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공공기여계획		• 기부채납 부담률 30%이상 - 토지:도로 확폭(삼양로,솔샘로3m, 이면부신설도로 6m)(749.5㎡, 32%) ※ 삼양로변보도 확보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며, 기부채납 제외 ※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간선부진출입불허, 이면도로 확보 의무 ※ 간선부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 - 완화차선 확보로 인한 도로 확장 부분(보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공기여에서 제외함	

※ 권장용도 외 권장용도와 비슷한 목적의 용도로서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권장용도 인정
허용용도 외 허용용도와 비슷한 시설로서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제안 등을 통해 구역계 확장이 가능함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2 해제 시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 2,346㎡	-
가구 및 획지계획	• 공동개발(권장) 및 공동개발(지정) : 동일 소유자(지정) 및 구역계 정형화 • 자율적 공동개발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접한 필지 해당) / 다중주택/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탁구장, 체육도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전체 연면적 20%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00% / 360% / 법적용적률2배이하	-
높이	• 최고높이 50m	-
최대개발규모	• 2,500㎡	-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 솔샘로: 2m, 삼양로: 3m, 삼양로28길 : 1m • 저층부벽면한계선 - 솔샘로: 3m (2층 이하)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함	-
대지 내 통로	• 보차혼용통로 1개소(4m)	-
기타	•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간선부진출입불허	-

3)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7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명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6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7	
위치		• 미아동 703-73일대	• 미아동 734-233일대	• 미아동 734-241일대	
면적		• 1,788㎡	• 3,450㎡	• 5,04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변경)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의료 부수시설 제외),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교육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탁구장, 체육도장, 소매점(완구, 서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 교습소, 서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교습소		
		판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 350% / 400% ※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100%(500% 이하)			
	최고높이	• 최고높이 : 60m			
건축물배치		• 건축한계선 - 삼양로 32나길, 38길, 38가길 : 2m	• 건축한계선 - 삼양로 38길, 38가길 : 2m	• 건축한계선 - 삼양로 : 3m - 삼양로 38길, 38가길 : 2m	
대지내공지		-	-	• 공개공지 위치 1개소 권장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단, 구역7 남측은 추가 차로확보를 위해 일부(건축한계선 1m)를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삼양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공공기여계획		• 부담률(15%)이상 - 토지 : 삼양로38나길 도로 확폭(2m) (95㎡, 5.3%) - 건축물 :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 부담률(15%)이상 - 토지 : 삼양로38나길 도로 확폭(2m), 도로개설(4m) (464㎡, 13.5%) - 건축물 :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 부담률(15%)이상 - 토지 : 삼양로38, 38가길 도로 확폭(2m) (354.71㎡, 7.4%) - 건축물 :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간선부진출입불허, 이면도로 확보 의무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 6m 조성(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4 : 3m,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 3m)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구역 해제 시 보차혼용통로 5m 조성(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4 : 3m,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 2m)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와 6은 필요시 사업구역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추진이 가능함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7 해제시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6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7	-
	1,788㎡	3,450㎡	5,045㎡	
가구 및 획지계획	• 공동개발(권장) 및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자(지정) 및 구역계정형화 • 자율적 공동개발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건축물 제외)(간선부접한 필지 해당) / 다중주택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공장, 창고시설/교정 및 군사 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50% / 250%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높이	• 최고높이 50m			-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 삼양로: 3m / 이면부:1~2m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대지 내 통로	• 보차혼용통로3개소(4m / 5m)			-
기타	•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간선부진출입불허			-

※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보행통로6m 조성(삼양4 : 3m, 삼양5 : 3m)
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 구역해제 시 보차혼용통로5m 조성(삼양4 : 3m, 삼양5 : 2m)

Ⅳ. 관계도면 :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Ⅵ.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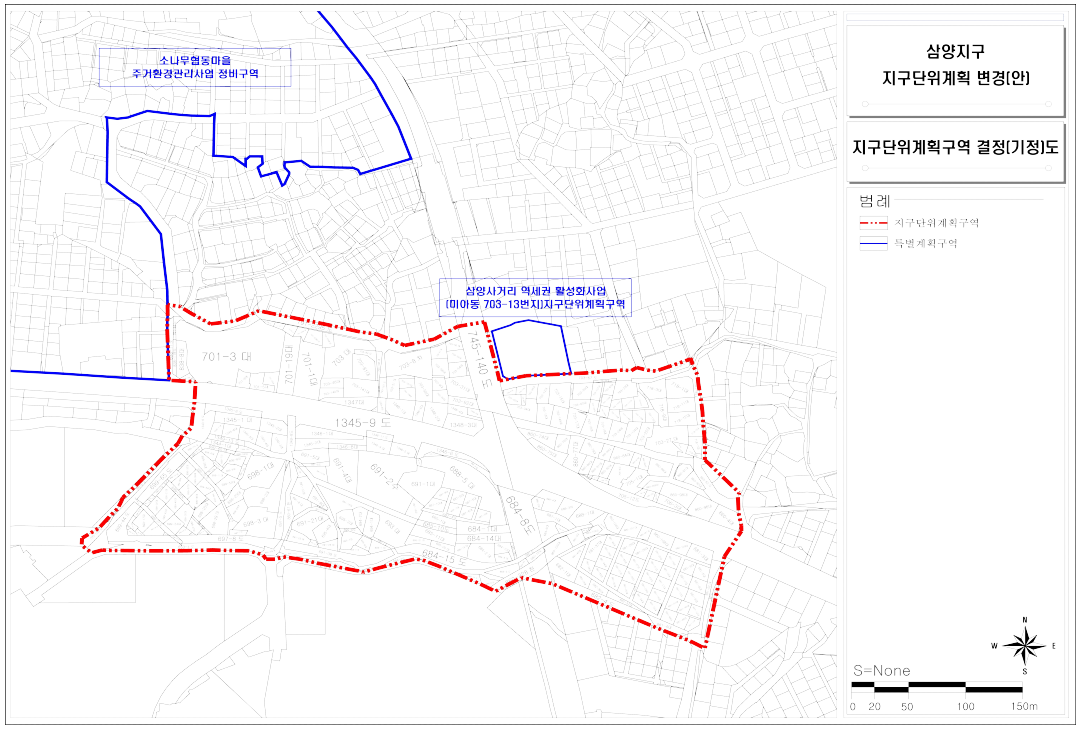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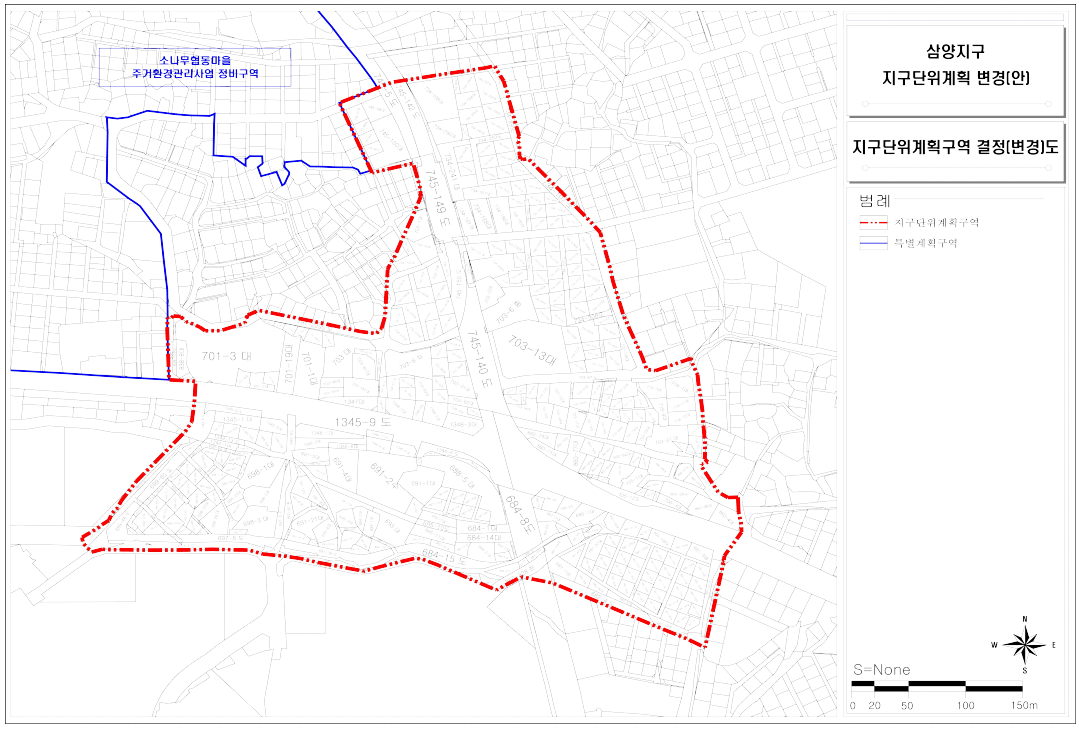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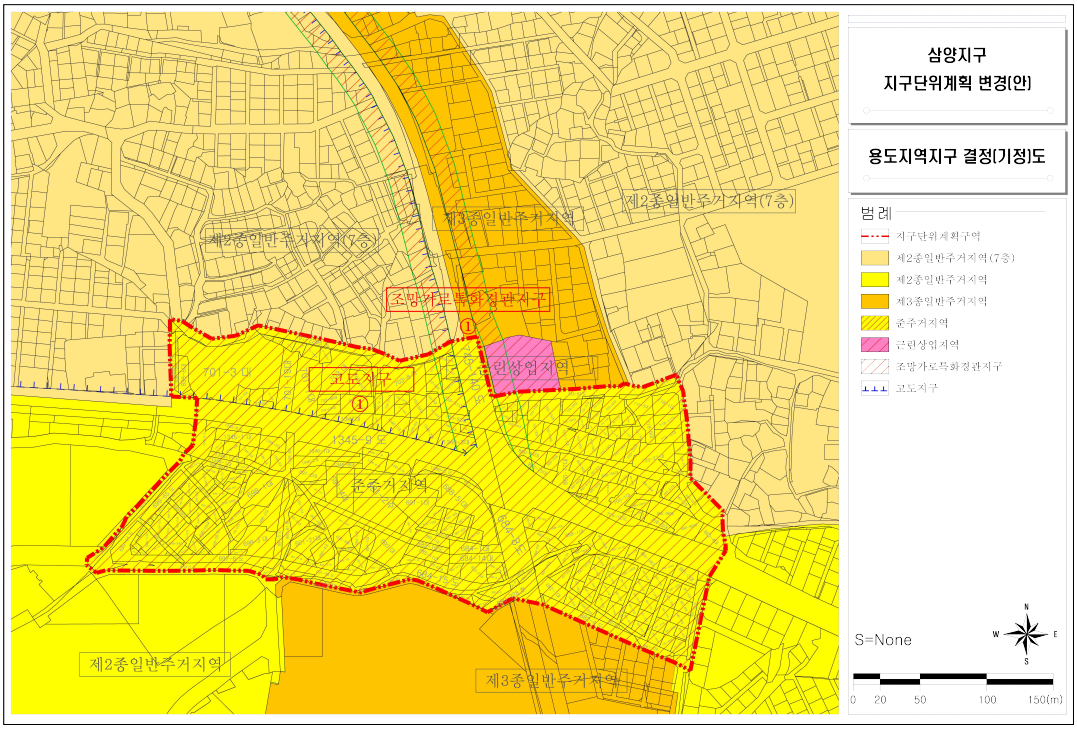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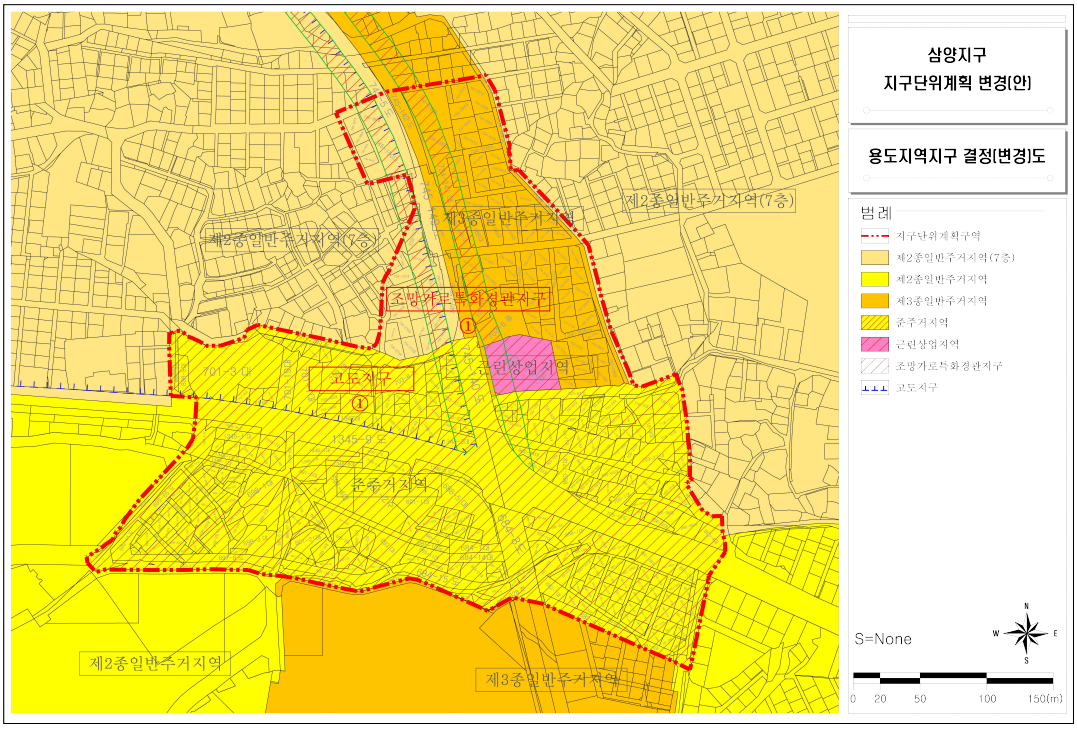

– 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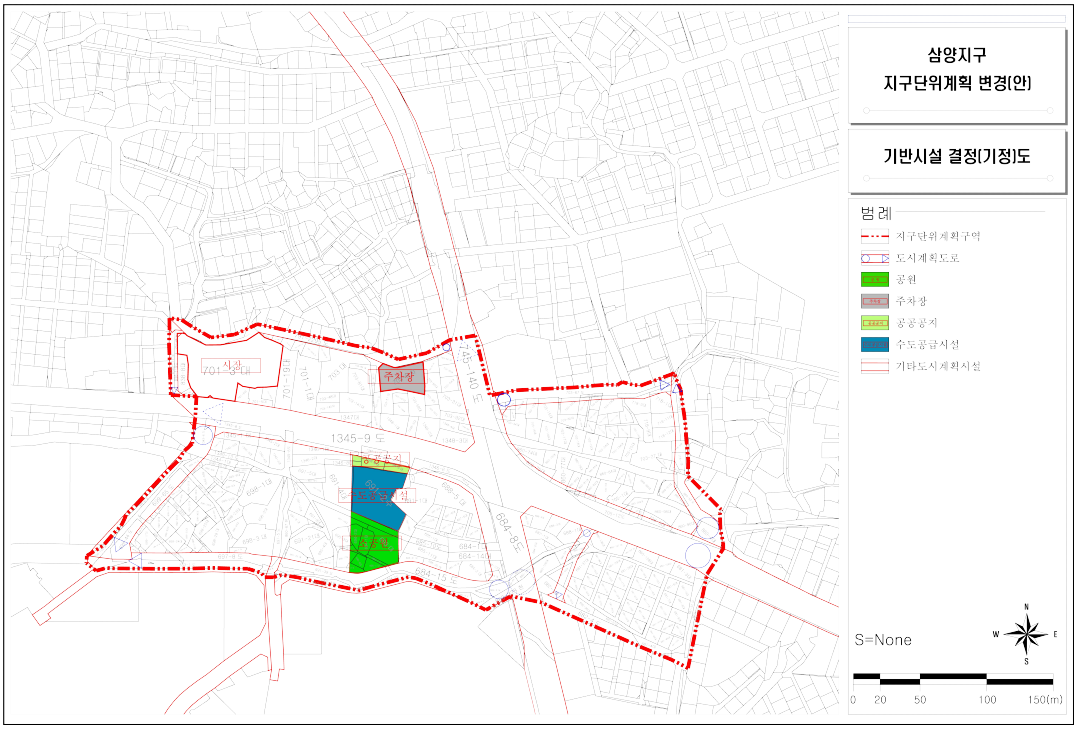

–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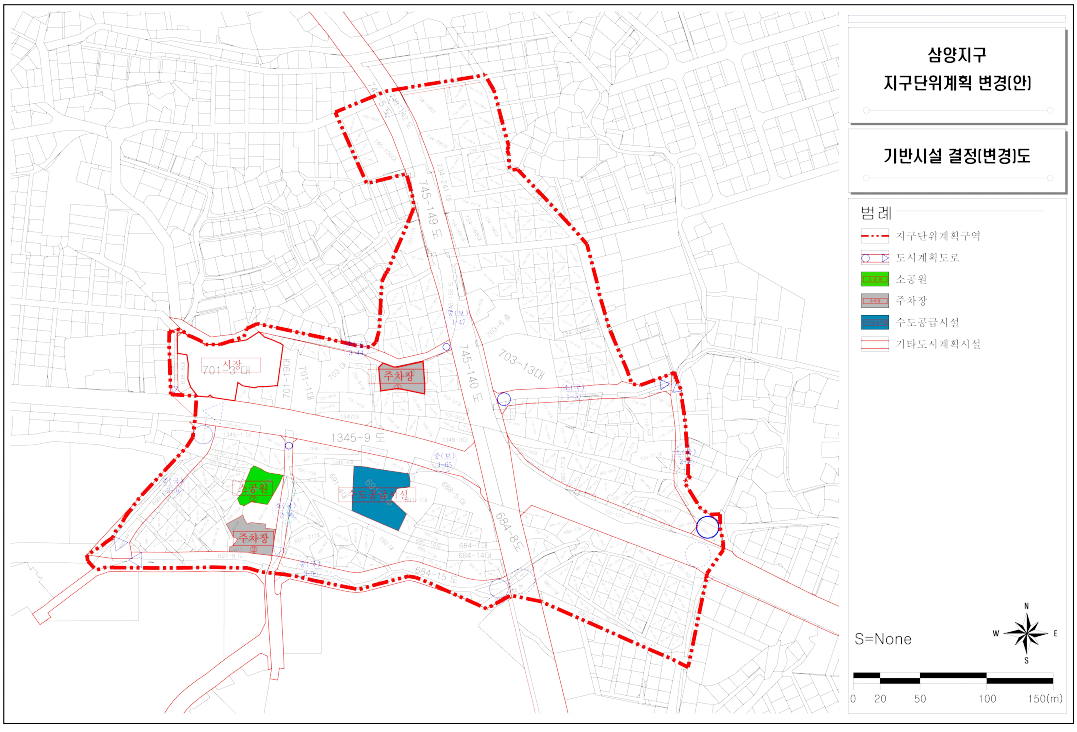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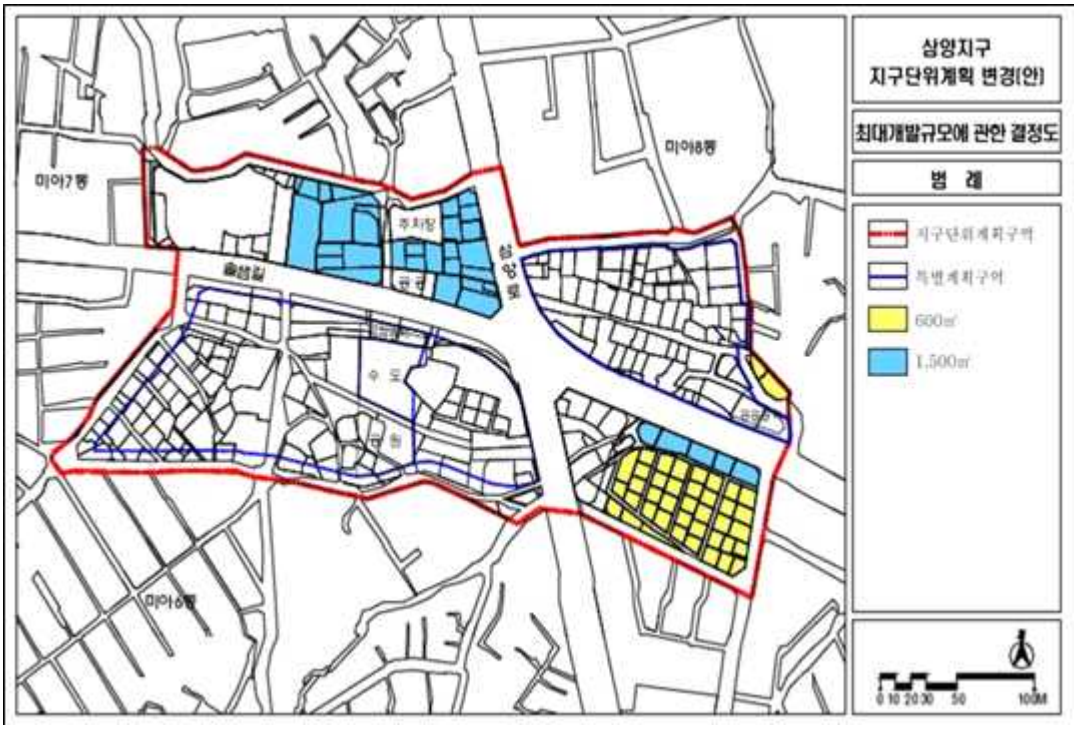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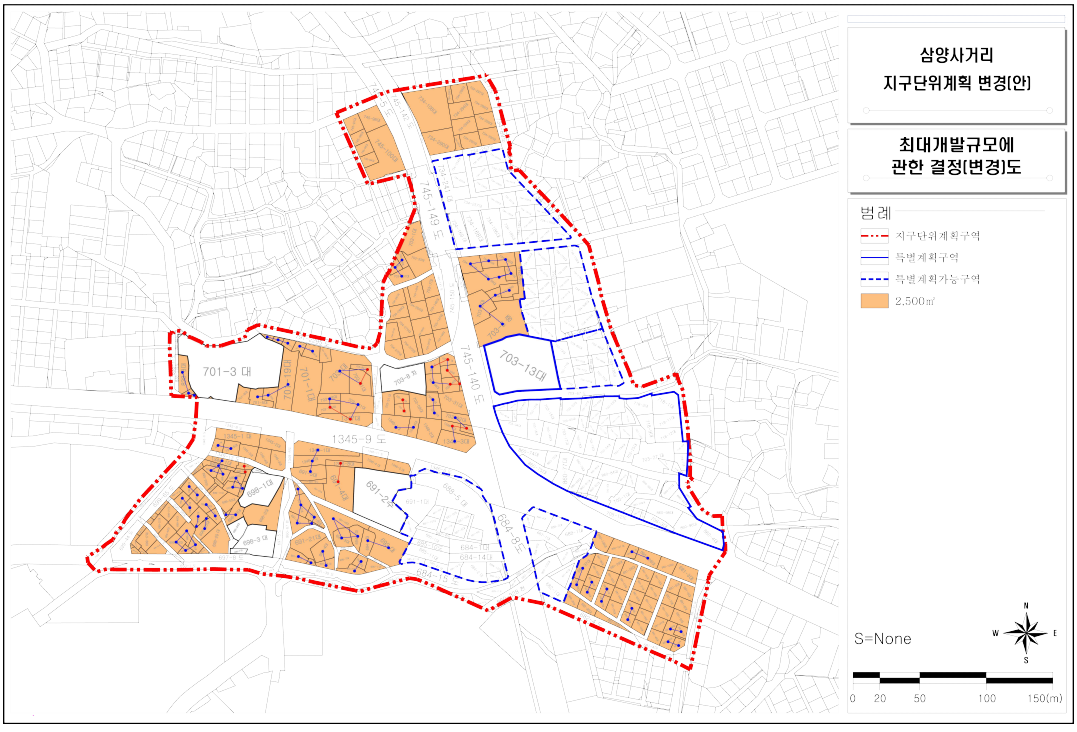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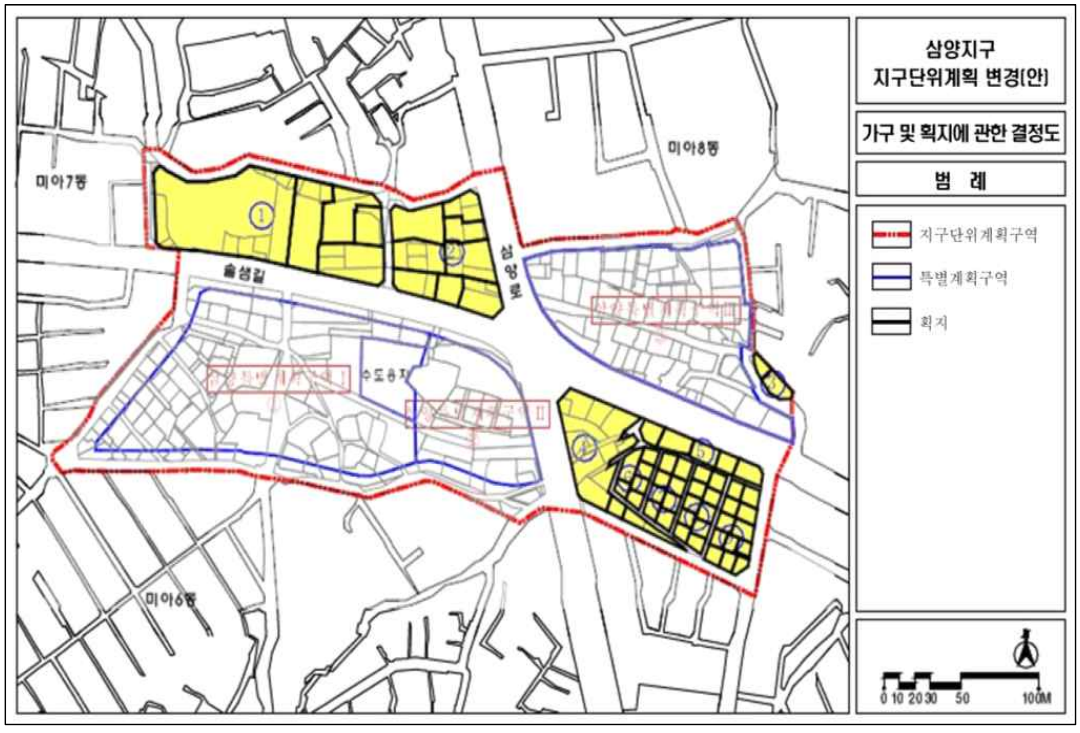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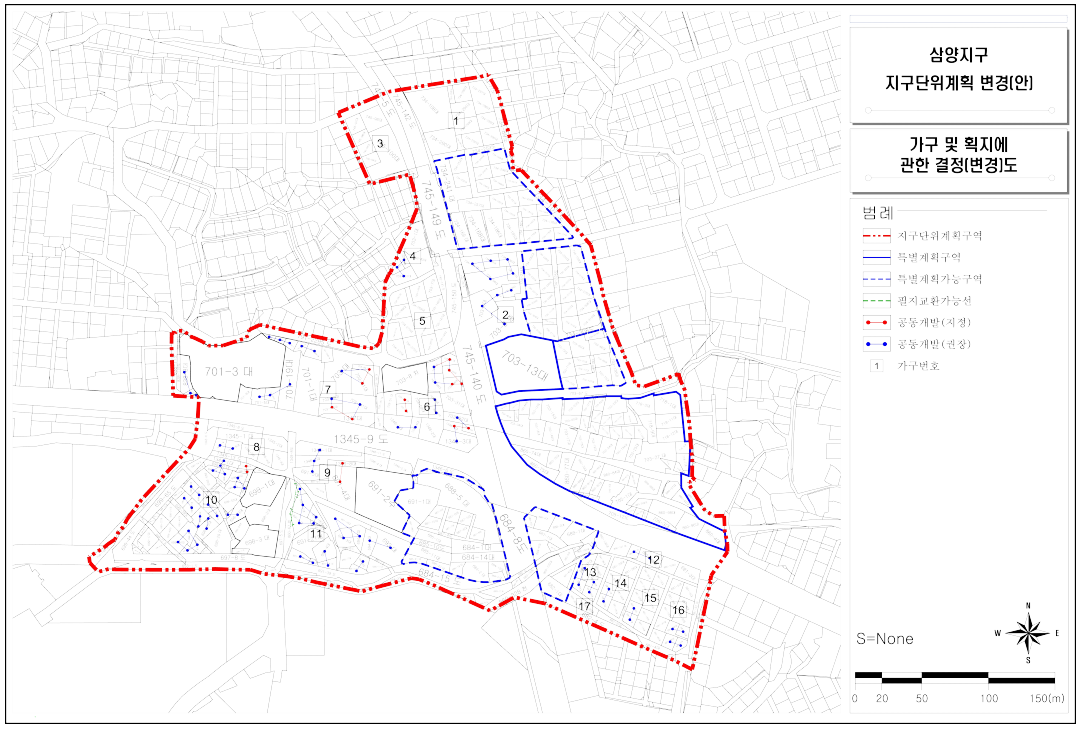

–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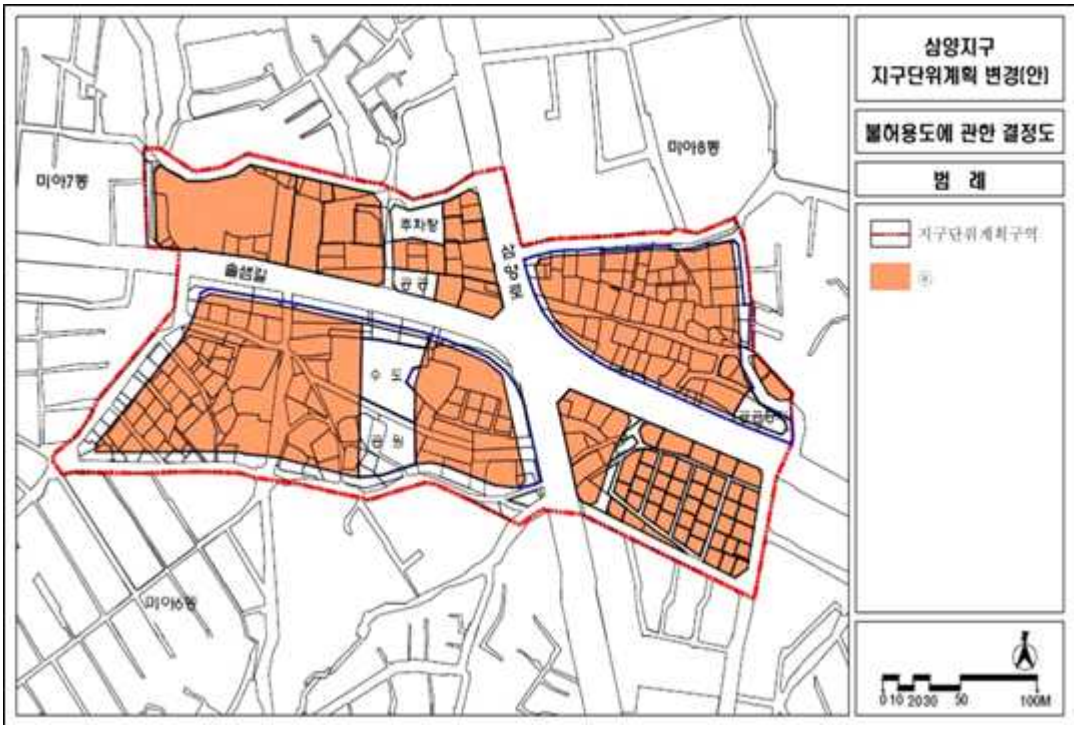

–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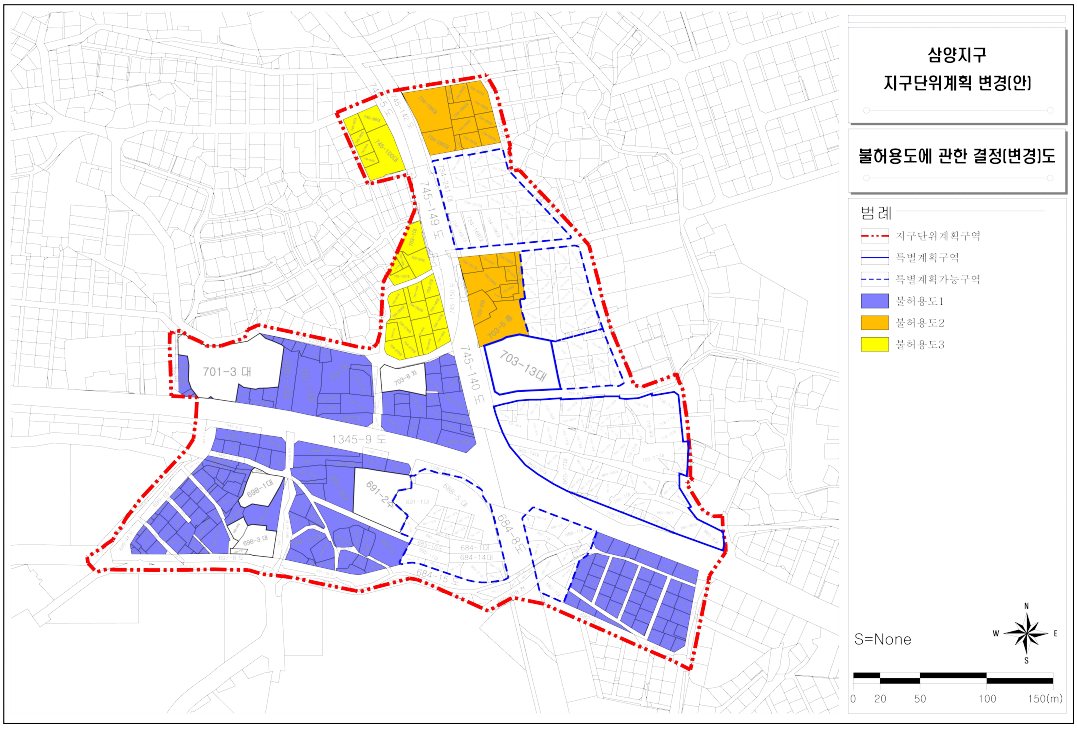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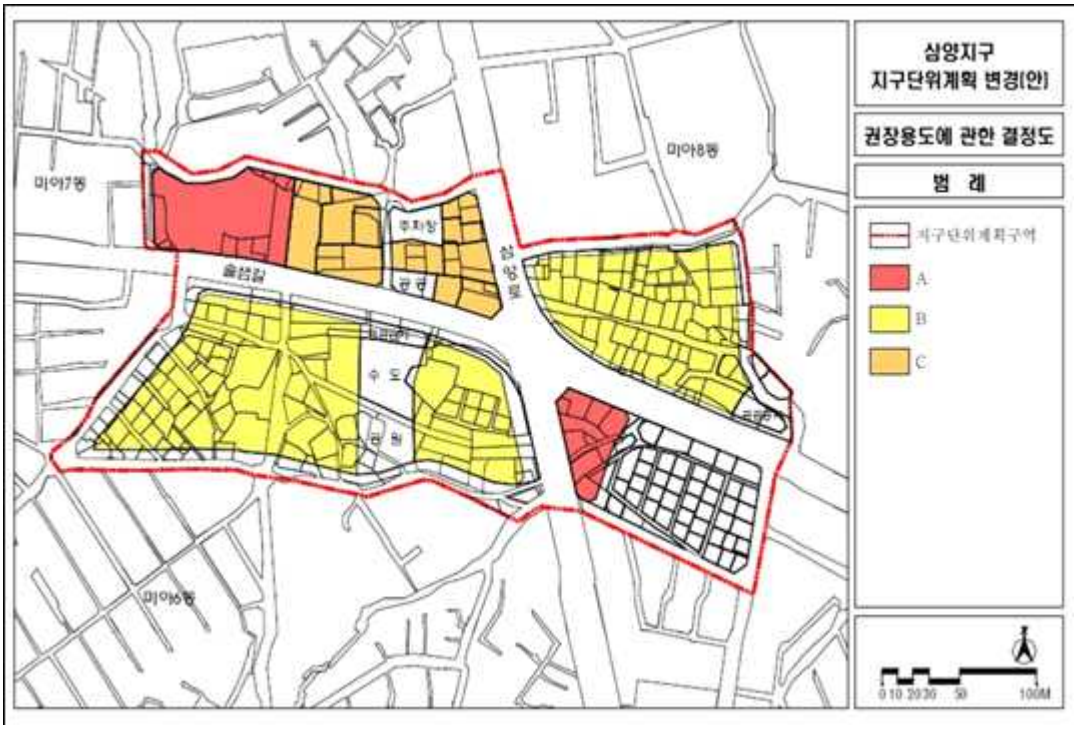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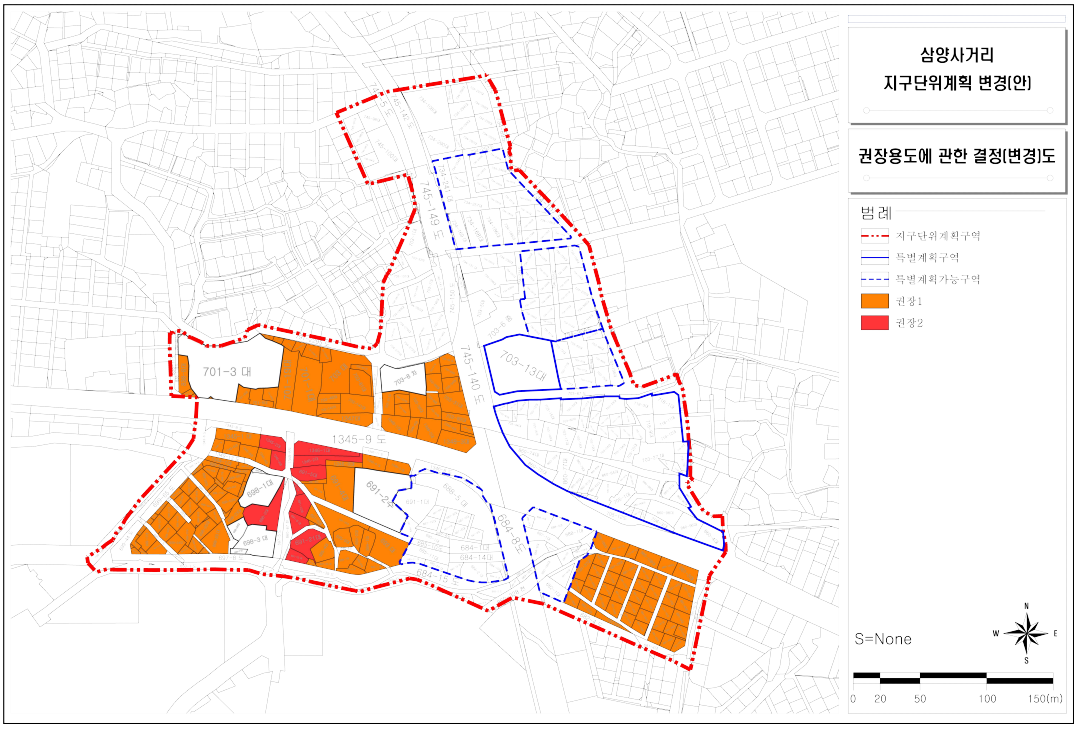

-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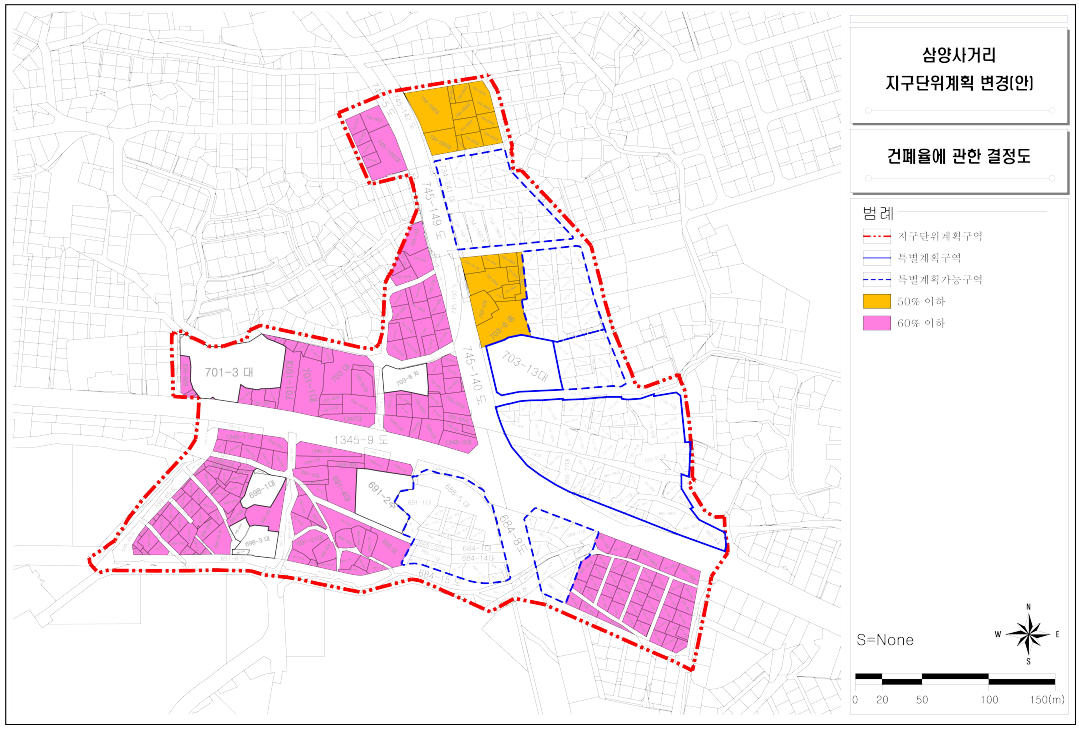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 용적률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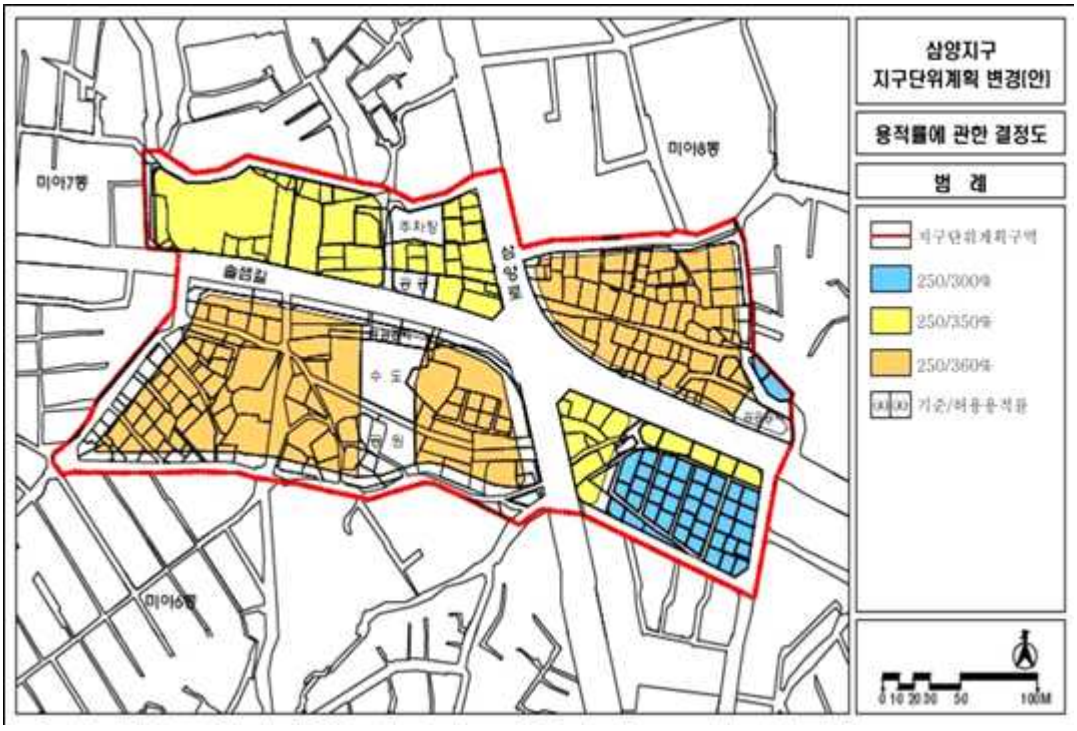

–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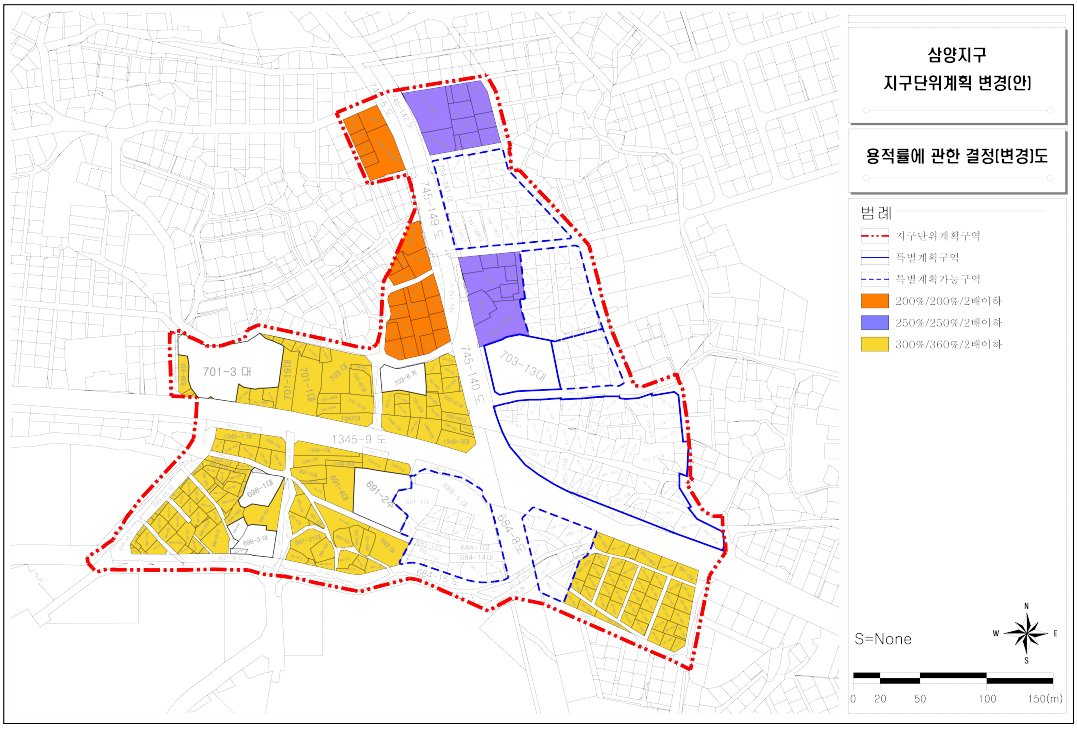

– 높이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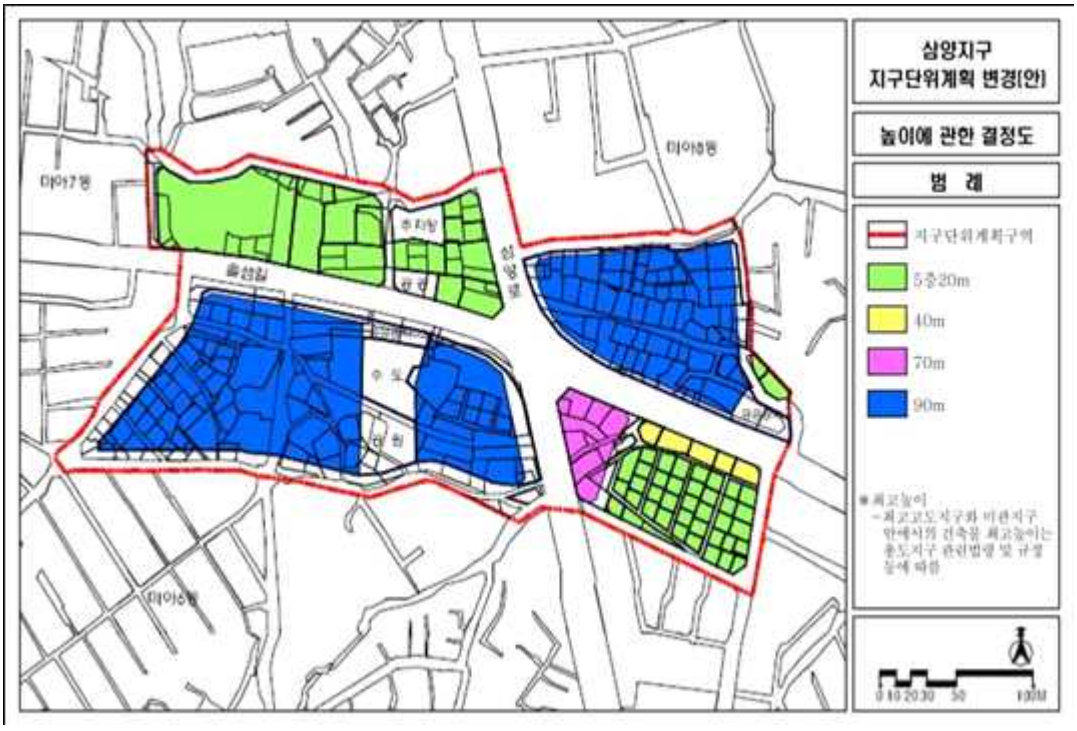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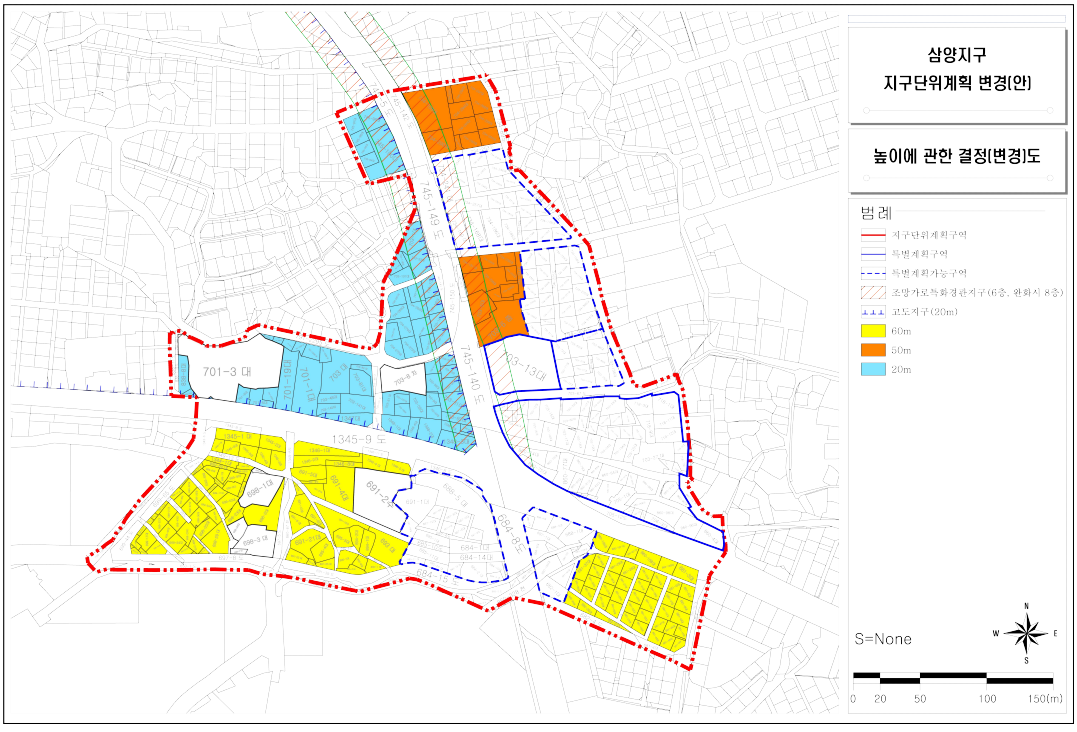

– 건축선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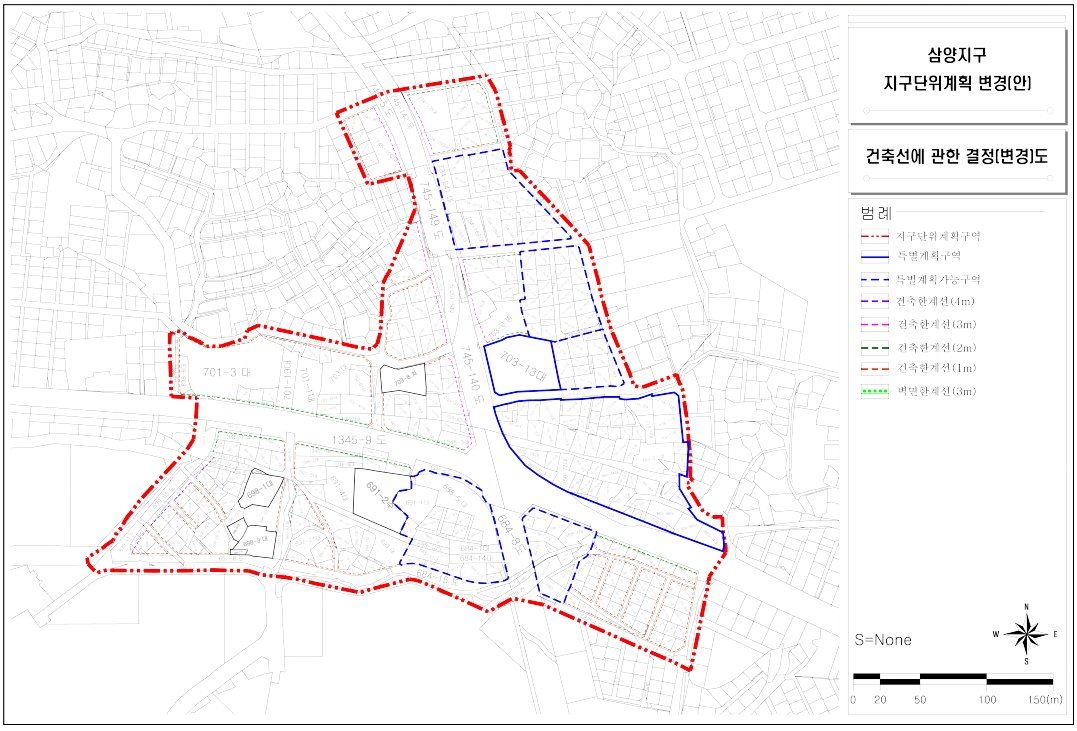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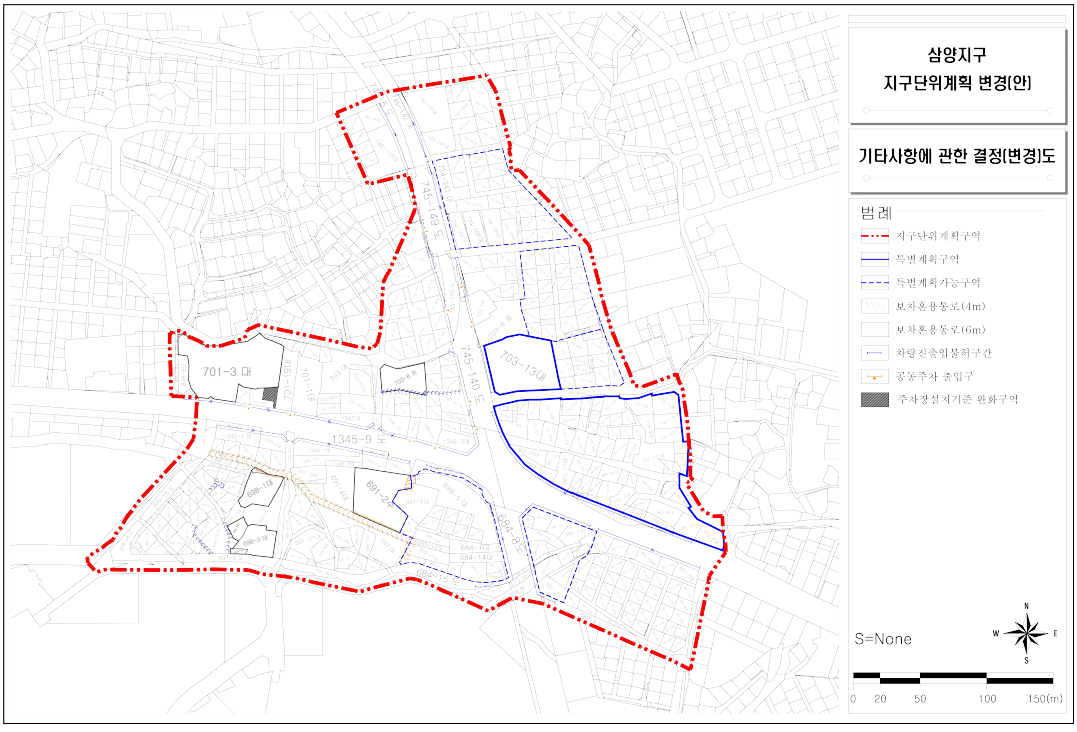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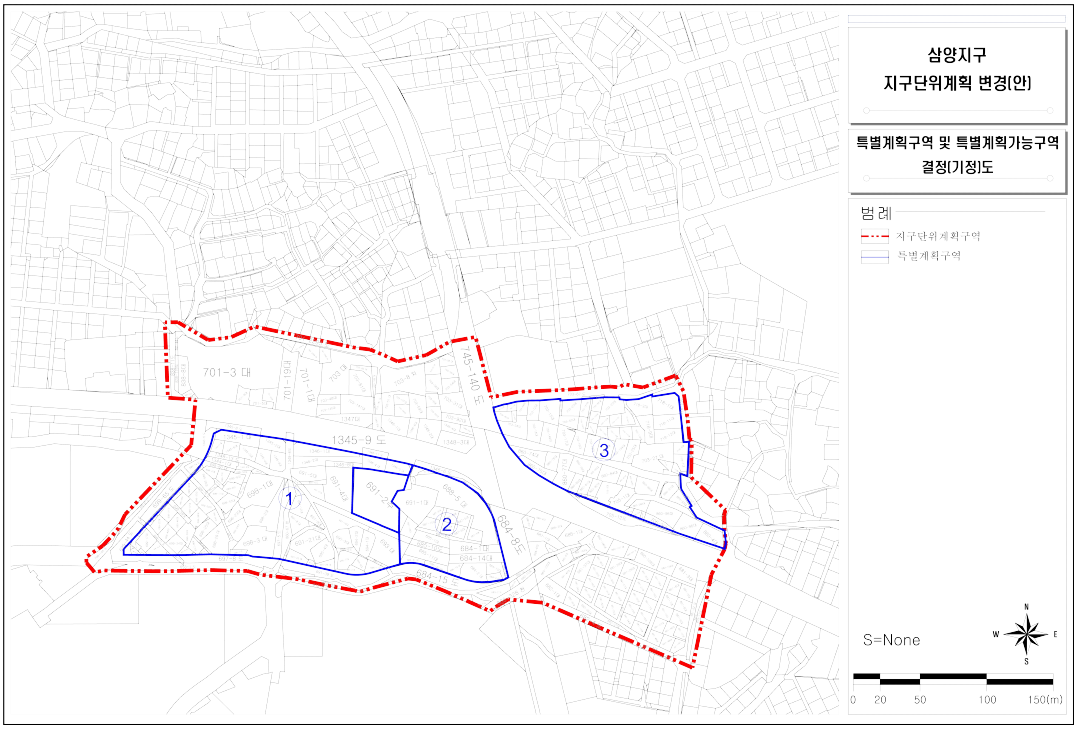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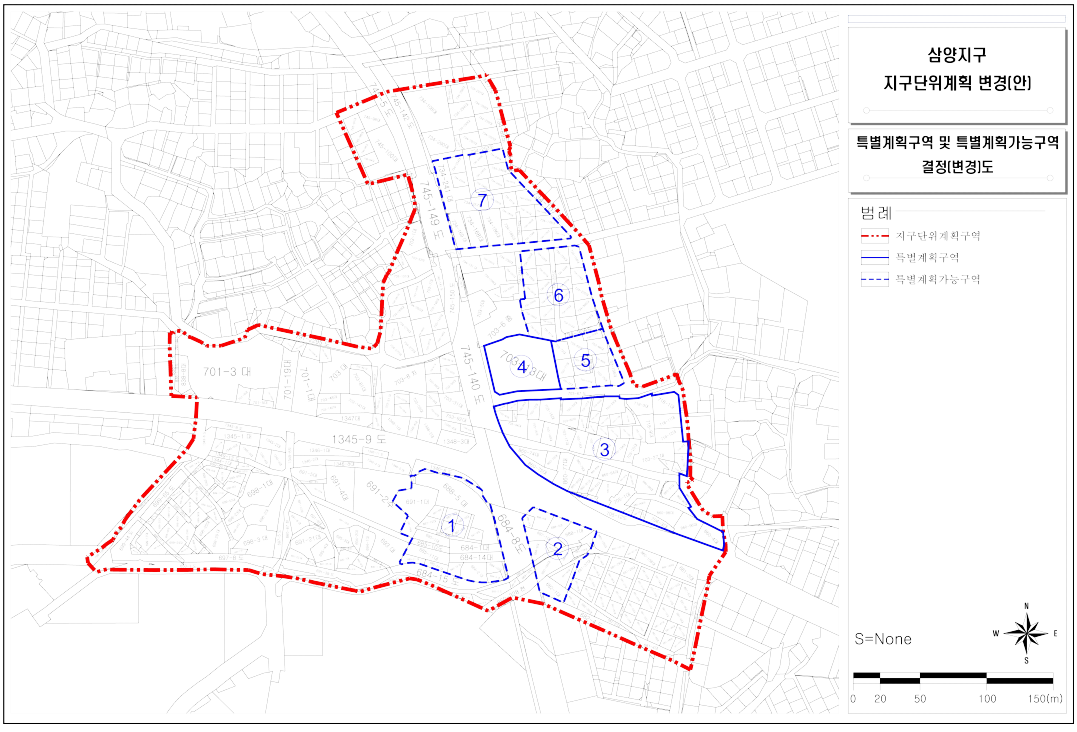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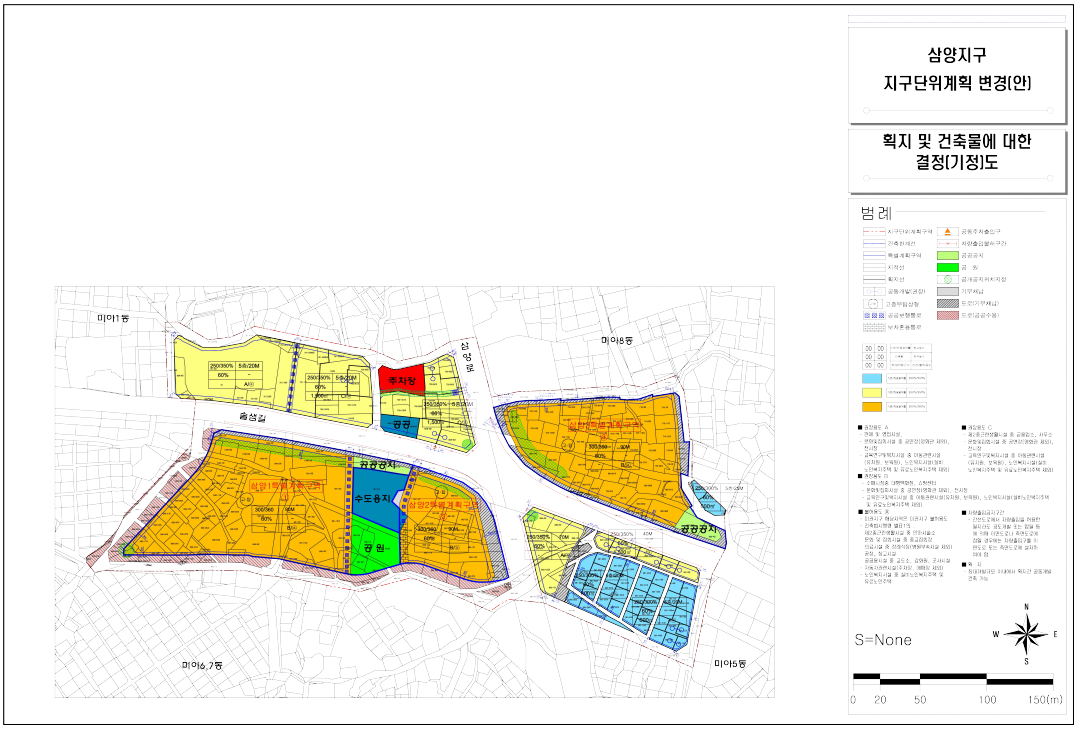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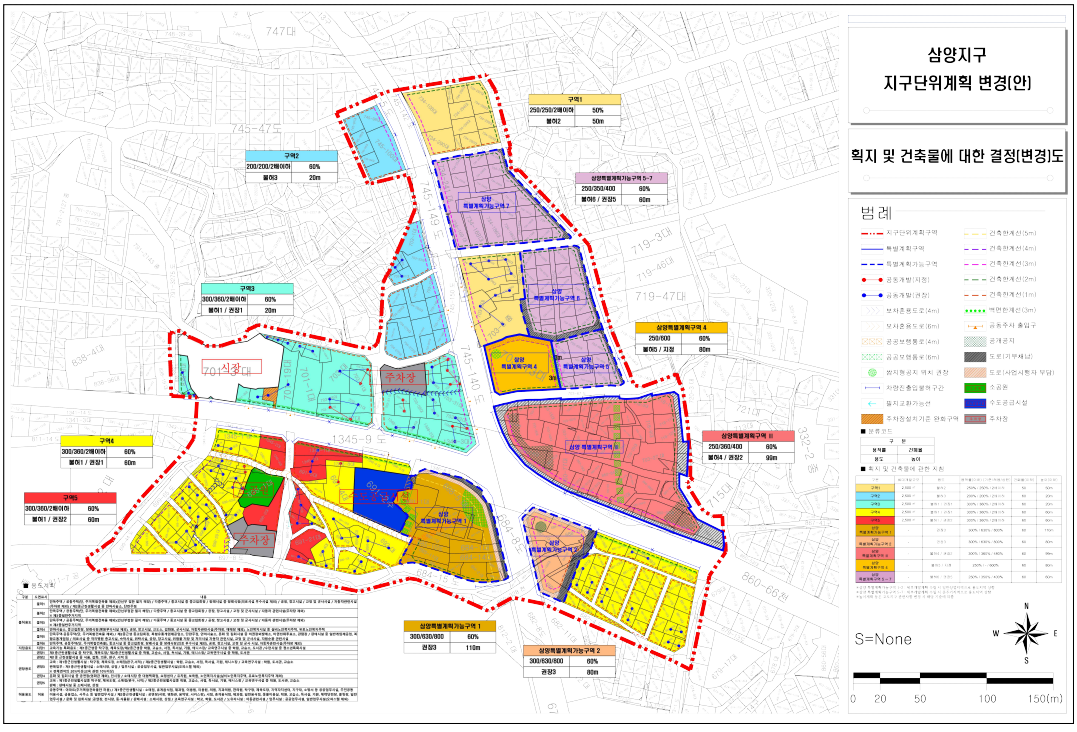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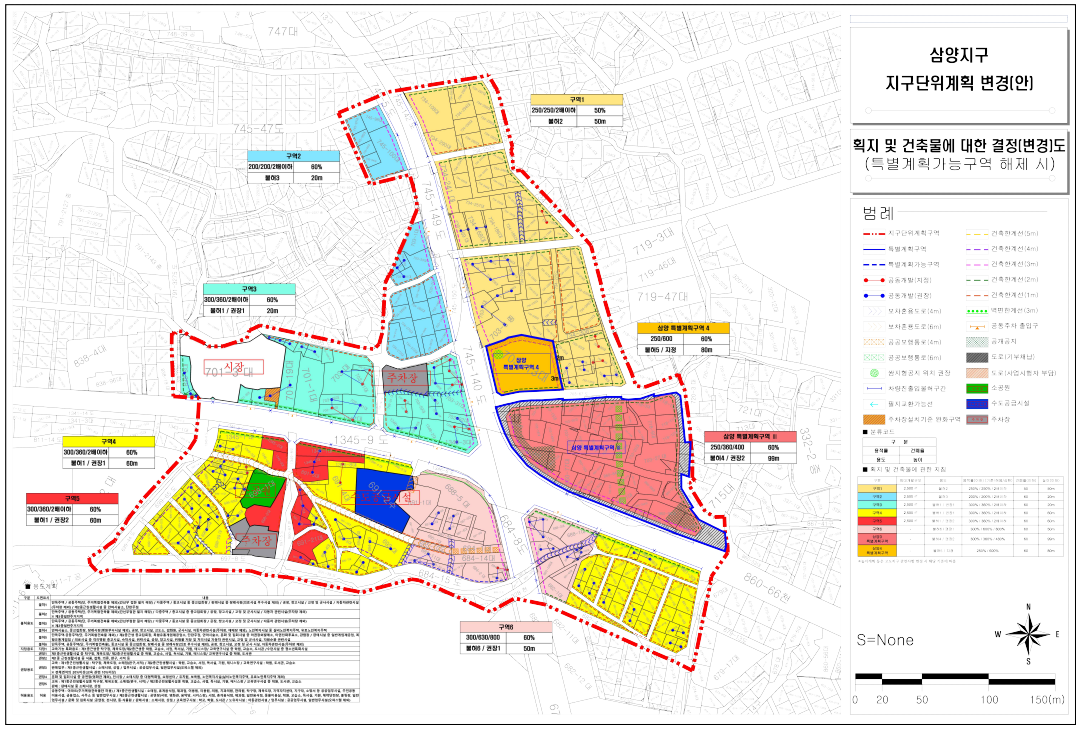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8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6호(2020.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89호(2023.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6호(2023.10.12.)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8,815.5	-	738,815.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38,815.5	-	738,815.5	-	-
촉진구역	소계 (8개 구역)		461,593.9	-	461,593.9	-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87.0	-	132,187.0	주택재개발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8.0	-	16,208.0	주택재개발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068.0	-	73,068.0	주택재개발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40,512.5	-	40,512.5	주택재개발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7,809.0	-	37,809.0	주택재개발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22.0	-	72,822.0	주택재개발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5,832.9	-	55,832.9	주택재개발	-
존치구역	소계 (5개 구역)		147,416.0	-	147,416.0	-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
	노량진13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0	-	34,555.0	-	-
존치시설		-	104,941.0	-	104,941.0	-	-
기시행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208.0	-	16,208.0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계	4,100.0	-	4,100.0	25.3	-
	도로	4,100.0	-	4,100.0	25.3	-
택지 (획지)	소계	12,108.0	-	12,108.0	74.7	-
	2-1	12,108.0	-	12,108.0	74.7	-

나. 용도지역에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16,208.0	-	16,208.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4,100.0	-	4,100.0	25.3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재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4,100.0	-	4,100.0	25.3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74.7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 ~40	주간선도로	6,490 (163)	노량진 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

※ ( )는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량진2 재정비 촉진구역내	312.07	증) 63.72	375.79	지상2층
	경로당		181.95	증) 13.59	195.54	지하1층
	작은도서관		424.15	증) 143.48	567.63	지하1층
	주민휴게시설		-	증) 125.39	125.39	지하1층
	어린이놀이터		706.79	감) 28.18	678.61	옥외/지하1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16,208.0	2-1	12,108.0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일대	72	-	-	72	-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2 재정비 촉진구역	16,208.0	2-1	12,108.0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일대	주거복합 공동주택	47.94	396.27	107	-	29층
변경	노량진2 재정비 촉진구역	16,208.0	2-1	12,108.0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일대	주거복합 공동주택	49.29	413.99	155	-	4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장기전세주택)(㎡)				분양(부분임대)(㎡)			
				소계	60이하	60~85	85이상	소계	60이하	60~85	85이상
	기정	주택(호)	415	114	91	23	-	301	49	224	28
	변경	주택(호)	411	107	78	29	-	304	87	175	4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장승배기길 변 : 건축한계선 9.3 ~ 10m •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 등에 대한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계획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7% 이상 설치할 것 •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통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 폭원 4m 이상으로 설치하되 24시간 개방할 것 •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3)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택지(B)
(공동주택)</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16,208.0㎡</td><td>12,108.0㎡</td><td>4,100.0㎡</td><td>196.08㎡</td><td>1,028.0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순부담면적(C)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100.0㎡ - 196.08㎡ - 1,028.00㎡ = 2,875.92㎡</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190%</td></tr>
<tr><td>기부채납
용적률</td><td colspan="5">• 기부채납 용적률
- 상한용적률(완화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토지) / 기반시설 제공 후 면적]
= 190 X [1 + (1.3 X 1.04 X 2,875.92) / 12,108.0]
= 251.01% 이하(250.0% 적용)
※ 가중치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8% / 190% = 1.04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2,378 x 190% + 1,722 x 210%)/4,100 = 198.4%</td></tr>
<tr><td>상한
용적률</td><td colspan="5">•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table>
<tr><td>구 분</td><td>용도지역</td><td>용적률</td><td>대지면적</td><td>적용산식</td></tr>
<tr><td>1차 역세권</td><td>준주거</td><td>500%</td><td>6,901㎡</td><td rowspan="3">(6,901x500%)+(5,207x300%)
/ 12,108
= 413.99% ≥ 건축계획(안) 413.99%</td></tr>
<tr><td>2차 역세권</td><td>준주거</td><td>300%</td><td>5,207㎡</td></tr>
<tr><td>합계</td><td></td><td></td><td>12,108㎡</td></tr>
</table></td></tr>
</table>

※ 정확한 면적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시 확정

바.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라 증가되는 주거연면적의 ½이상을 장기전세주택(SHIFT)로 건립
- 장기전세주택(SHIFT) 규모별 건설비율(「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table>
<tr><td rowspan="3">장기전세
주택
(SHIFT)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4">413.99% - 249.98% = 164.01%</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4">164.01% X 0.5 = 82.005%
12,108㎡ X 82.005 = 9,929.2㎡</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4">9,929.2㎡ 이상</td></tr>
<tr><td rowspan="5">장기전세주택(SHIFT) 확보계획</td><td colspan="2">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r>
<tr><td colspan="2">59.99㎡</td><td>86.98㎡</td><td>78</td><td>6,784.44</td></tr>
<tr><td colspan="2">74.99㎡</td><td>107.08㎡</td><td>22</td><td>2,355.76</td></tr>
<tr><td colspan="2">84.99㎡</td><td>121.59㎡</td><td>7</td><td>851.13</td></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107</td><td>9,991.33</td></tr>
</table>

사. 기부채납 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차.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파. 역세권 건축물 밀도 계획(변경)

1) 용적률 적용 체계

계획기준	계획내용	
	기□정	변□경
용적률 완화	396.27%	413.99%
임대주택 건립 (증가 용적률의 ½ 이상)	•증가용적률 : 396.27 - 234.60 = 161.67 •의무 연면적 : 9,787.50㎡ 이상 (12,108㎡ × 161.67% × 50%) •계획 연면적 : 9,802.44㎡	•증가용적률 : 413.99 - 249.98 = 164.01 •의무 연면적 : 9,929.2㎡ 이상 (12,108㎡ × 164.01% × 50%) •계획 연면적 : 9,991.63㎡
비주거 (연면적 10% 이상)	•비주거: 10,135.13㎡ (12.8%) □□ (연면적 : 79,054.02㎡)	•비주거: 10,344.30㎡ (12.05%) □□ (연면적 : 85,868.25㎡)

2)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기□정	변□경
필수 (2)	창조적 도시디자인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3% 이상)	•도입시설 :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사우나시설	도입시설 :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사우나시설, 웰컴라운지, 주민카페, 스카이라운지
		•커뮤니티 : 1,299.61㎡(3.01%) - 1층 1,299.61㎡ (지하주차장 등 1,027.28㎡제외)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43,154.53㎡	•커뮤니티 : 1,541.19㎡(3.4%) - 1층 1,202.80㎡ 45층 338.39㎡ (지하주차장 등 1,119.12㎡제외)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45,436.66㎡
선택 (3)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75점 이상)의 친환경 인증□: 예비인증서 착공전 제출(이행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74점 이상 : 예비인증서 착공전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 : 예비인증서 착공전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하. 생태면적률(변경없음)

거. 건축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구역면적(㎡)	16,208	-	16,208	
대지면적(㎡)	12,108	-	12,10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47,980.78	증) 2,145.03	50,125.81	
건축면적(㎡)	5,804.00	증) 164.26	5,968.26	
용적률(%)	396.27	증) 17.72	413.99	
건폐율(%)	47.94	증) 1.35	49.29	
주차대수(대)	602	증) 18.00	620	

너.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2-1	기 정	190% 이하	-	396.27% 이하	414% 이하	-
	변 경	190% 이하		413.99% 이하	414% 이하	-

- 높이 계획(변경)

구 분		높 이 기 준	비고
21	기정	최고 29층 이하 / 최고 107m 이하	-
	변경	최고 45층 이하 / 최고 155m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공동주택 부지내	•대지면적의 7%이상 설치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위치, 선형 변경)	공동주택 부지내	•폭원 4m 이상으로 설치하되 24시간 개방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위치 및 선형 변경

2)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SHIFT)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임대 (SHIFT)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SHIFT
합 계	411	100.0	107	-	107	26.0	100.0	100.0
40㎡이하	-	-	-	-	-	-	-	-
40~50㎡이하	-	-	-	-	-	-	-	-
50~60㎡이하	165	40.1	78	-	78	19.0	72.9	72.9
60~85㎡이하	204	49.7	29	-	29	7.0	27.1	27.1
85㎡초과	42	10.2	-	-	-	-	-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 7224)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9267)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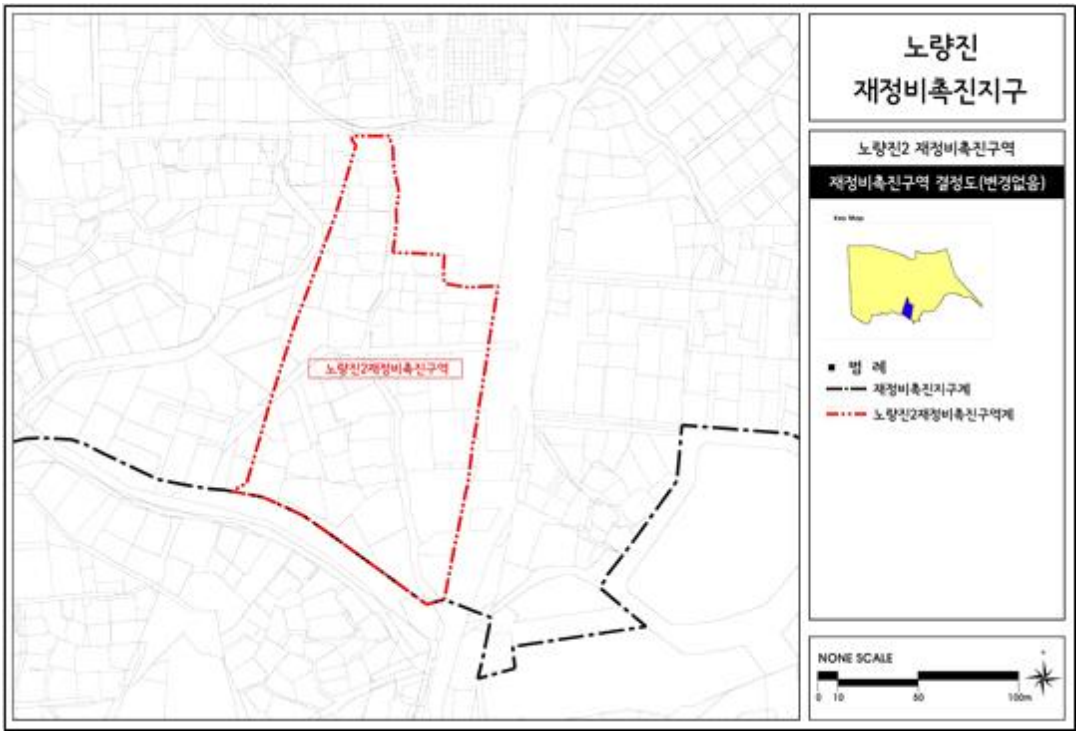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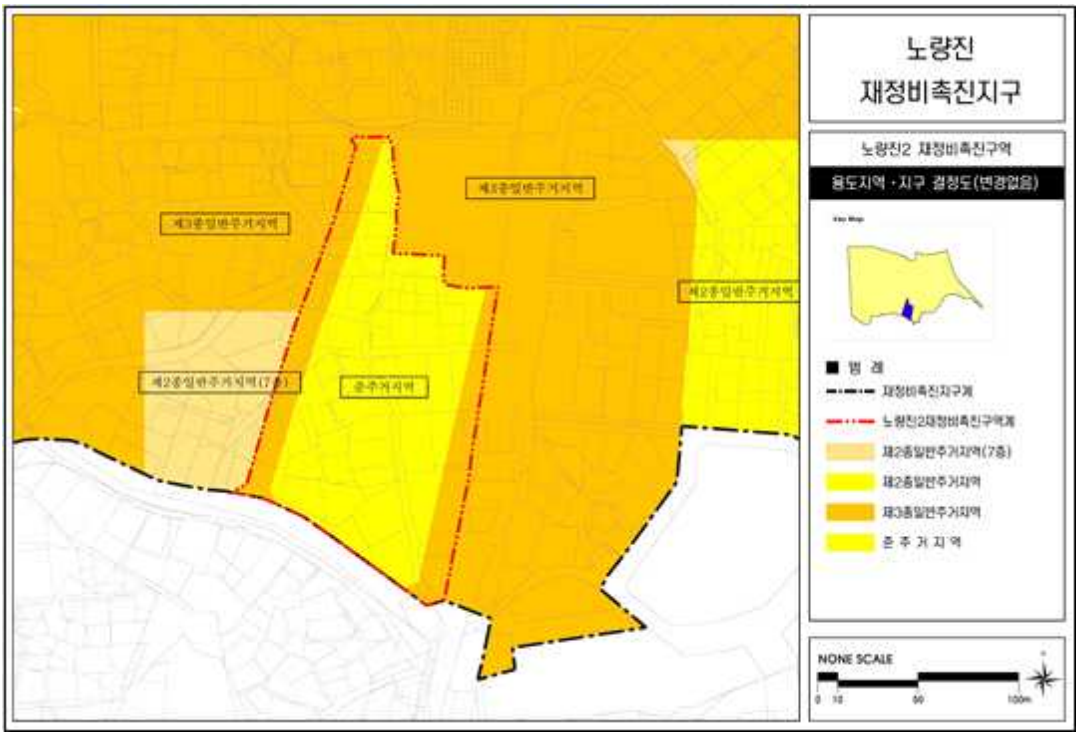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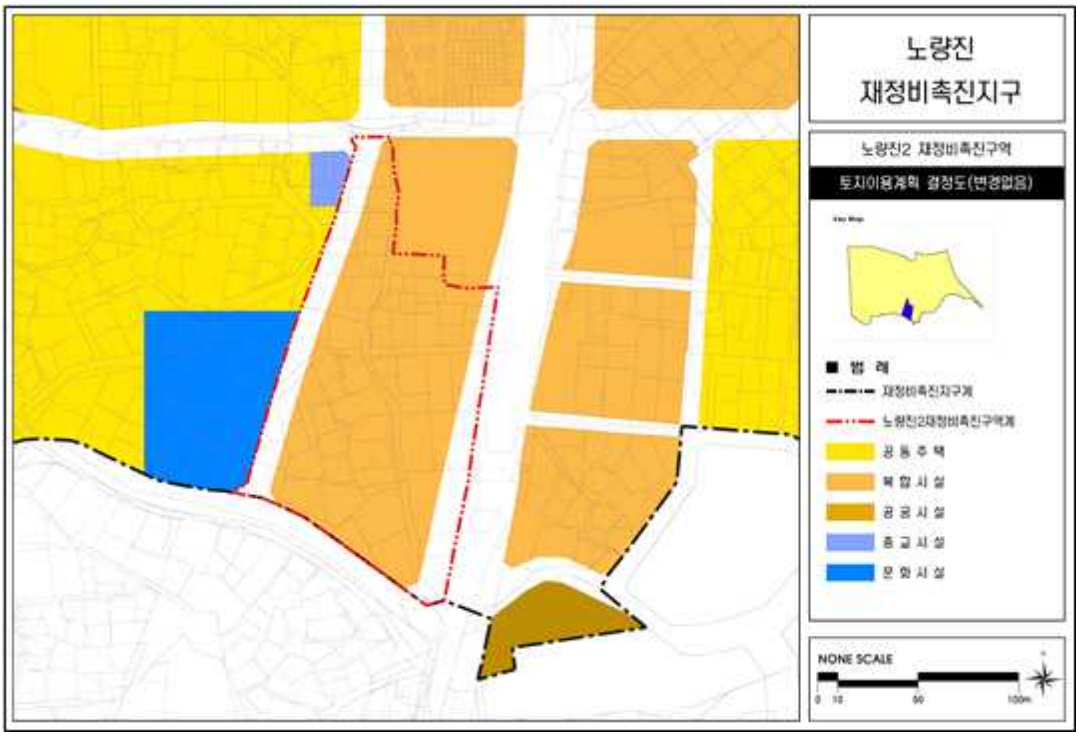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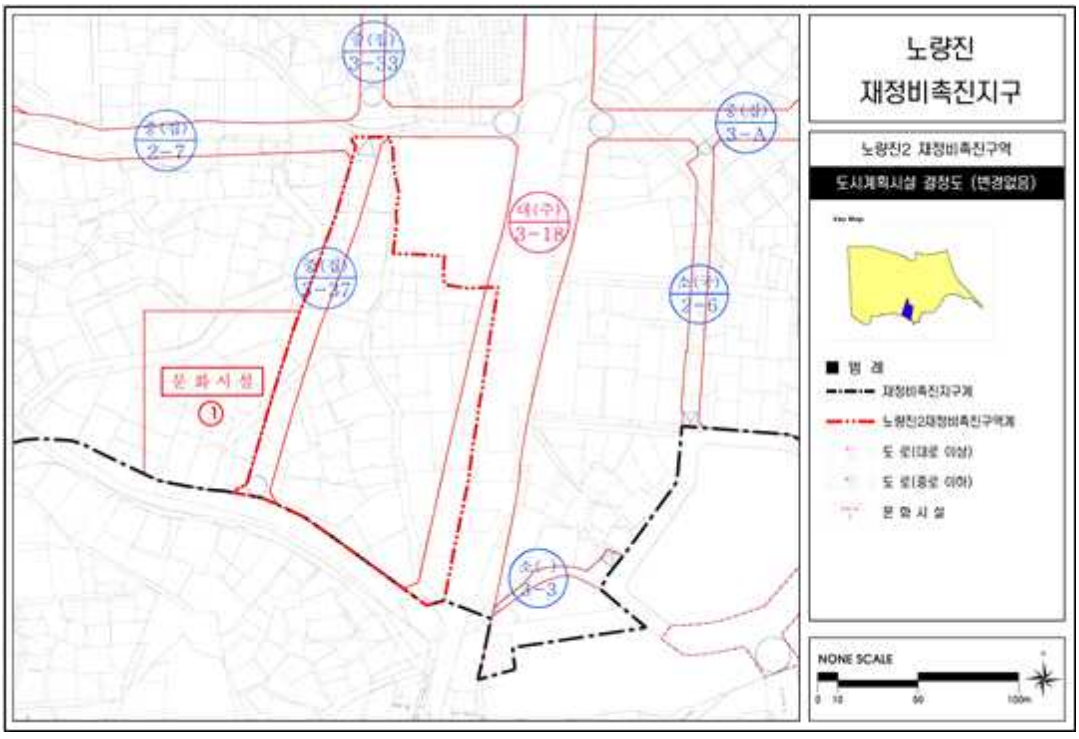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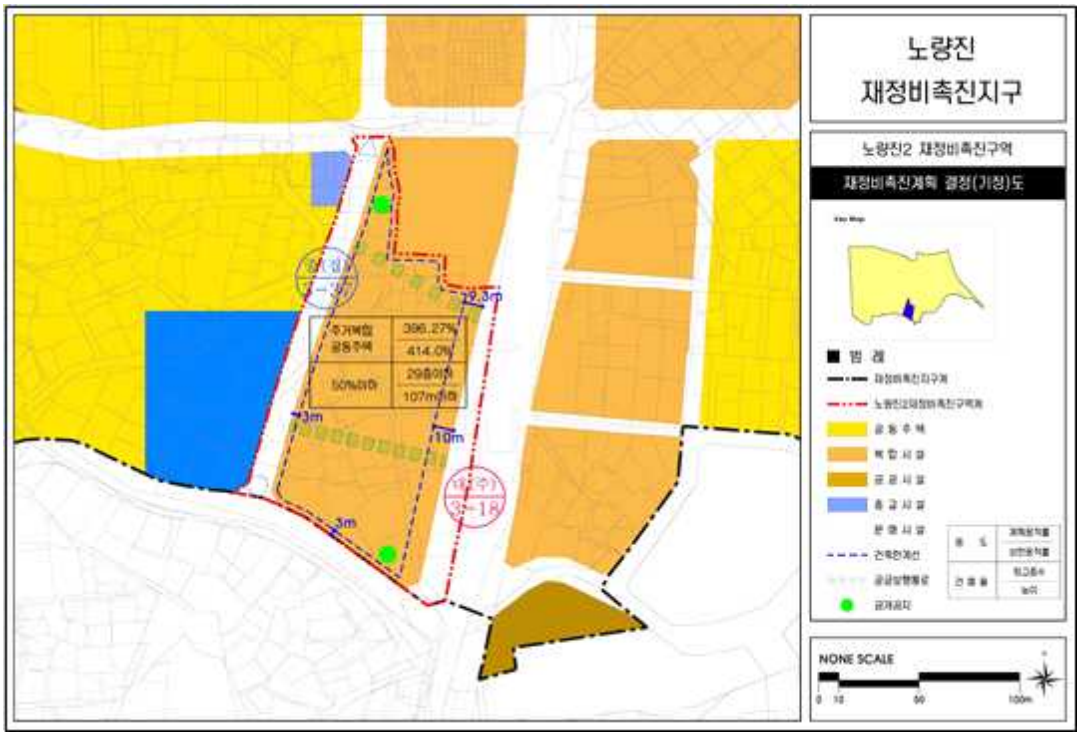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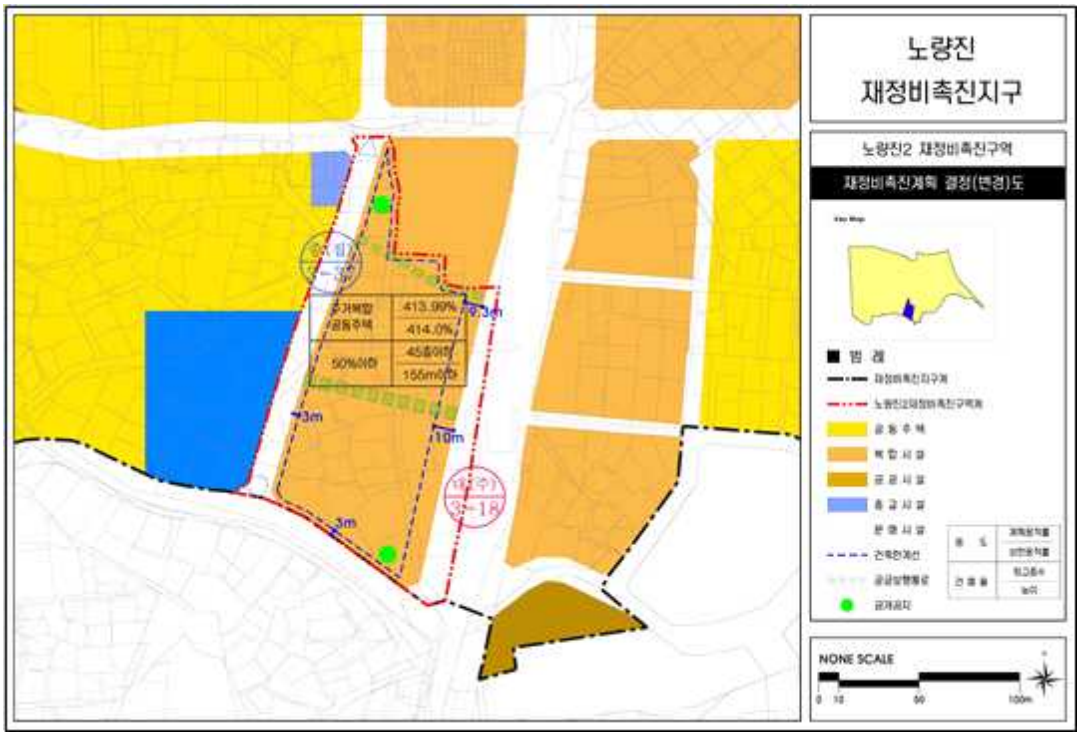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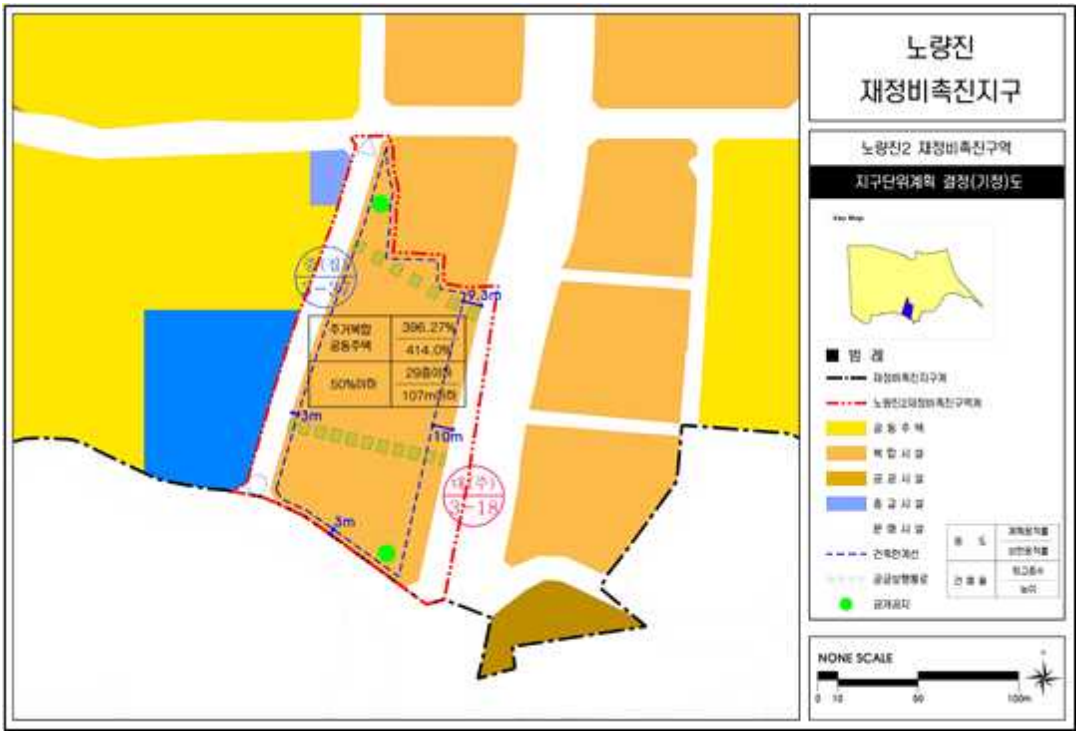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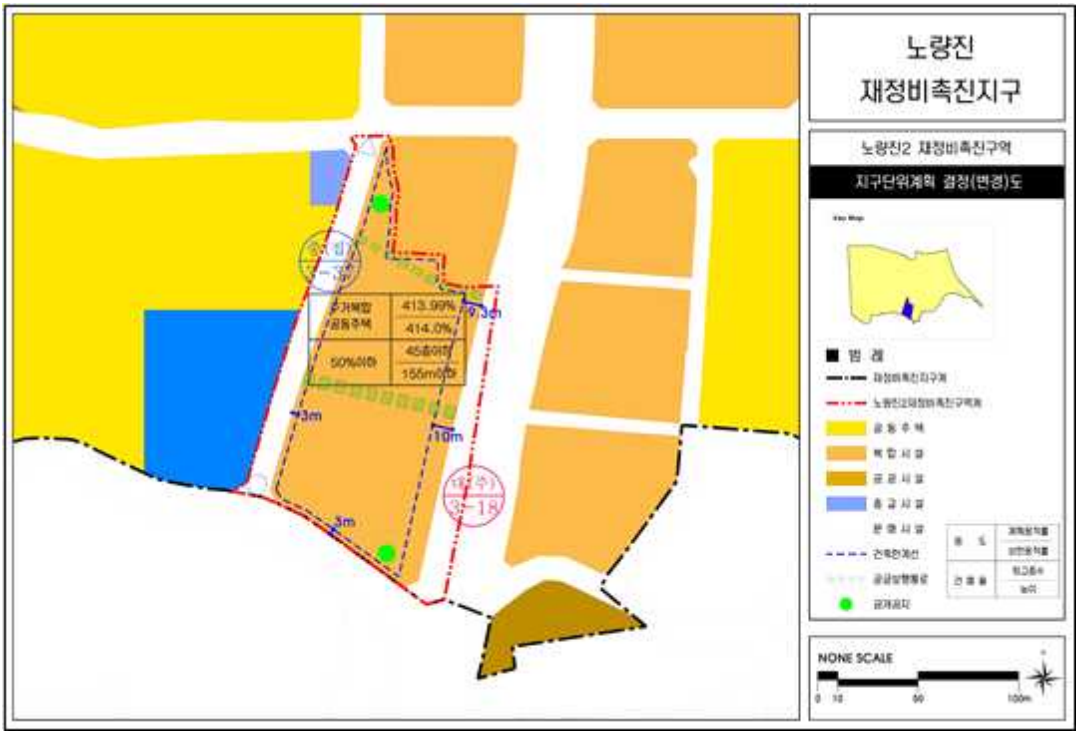

붙임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8,815.5	-	738,815.5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38,815.5	-	738,815.5	100.0	-
획지	소 계	510,261.8	-	510,261.8	69.1	-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
	공동주택	314,330.6	-	314,330.6	42.6	-
	복합시설	146,411.2	-	146,411.2	19.8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11,940.0	-	11,940.0	1.6	-
기반시설	소 계	228,553.7	-	228,553.7	30.9	-
	공원녹지	38,910.4	-	38,910.4	5.3	-
	공공시설	20,567.0	-	20,567.0	2.7	-
	공공공지	178.0	-	178.0	0.0	-
	문화시설	5,571.0	-	5,571.0	0.8	-
	학 교	59,409.0	-	59,409.0	8.0	-
	도 로	103,918.3	-	103,918.3	14.1	-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 (세대)		인구수 (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1,050	11,046	29,660	29,648	
기 시행구역		511	511	1,379	1,379	
존치구역		1,471	1,471	3,796	3,796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9,068	9,064	24,485	24,473	
	40 ㎡이하	1,028	1,028	2,776	2,776	
	40~60㎡	3,574	3,599	9,650	9,717	
	60~85㎡	3,964	3,921	10,703	10,587	
	85 ㎡ 초과	502	516	1,356	1,393	

※ 변경사유 : 노량진2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평형배분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차.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높이)층수)	비 고
			기준	계획	상한	완화	계획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87.0	50이하	24.17	300이하	266.08	265.60	- / 33층(11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6,208.0	50이하	47.94	414이하	414.00	396.27	- / 29층(107m)이하	역세권밀도 계획적용
	변경			49.29			413.99	- / 45층(155m)이하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068.0	50이하	22.20	250이하	243.66	241.26	- / 30층(110m)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512.5	60이하	23.55	260이하	260.17	252.66	20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7,809.0	50이하	18.57	300이하	272.81	270.63	-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22.0	50이하	19.51	300이하	272.33	272.32	- / 49층(15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60이하	24.33	240이하	242.06	237.44	18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5%완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832.9	60이하	22.10	300이하	242.05	236.43	22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파.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부분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9,068 (81)	7,440 (81)	3,023	3,915	502 (81)	1,628 [26]	622	594	363	49 [26]	81
	변경	9,064 (81)	7,443 (81)	3,061	3,866	516 (81)	1,621 [26]	622	594	350	55 [26]	81
노량진1촉진구역		2,992 (32)	2,461 (32)	1,322	1,041	98 (32)	531 [26]	214	180	111	26 [26]	32
노량진2촉진구역	기정	415	301	49	224	28	114	-	-	91	23	-
	변경	411	304	87	175	42	107	-	-	78	29	-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
노량진4촉진구역		860	713	352	361	-	147	60	64	23	-	-
노량진5촉진구역		727 (26)	597 (26)	253	304	40 (26)	130	52	60	18	-	26
노량진6촉진구역		1,499 (23)	1,237 (23)	412	753	72 (23)	262	106	106	50	-	23
노량진7촉진구역		576	478	174	301	3	98	40	40	18	-	-
노량진8촉진구역		987	815	263	488	64	172	70	70	32	-	-

※ ( )는 부분임대 세대수, [ ]는 노량진1촉진구역 기부채납 임대주택수

※ 변경사유 : 노량진2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평형배분 변경

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너.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더. 방재계획(변경없음)

러. 정보화계획(변경없음)

머.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버.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서. 기타계획(변경없음)

어.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노량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노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3) 노량진3구역 ~ 8) 노량진8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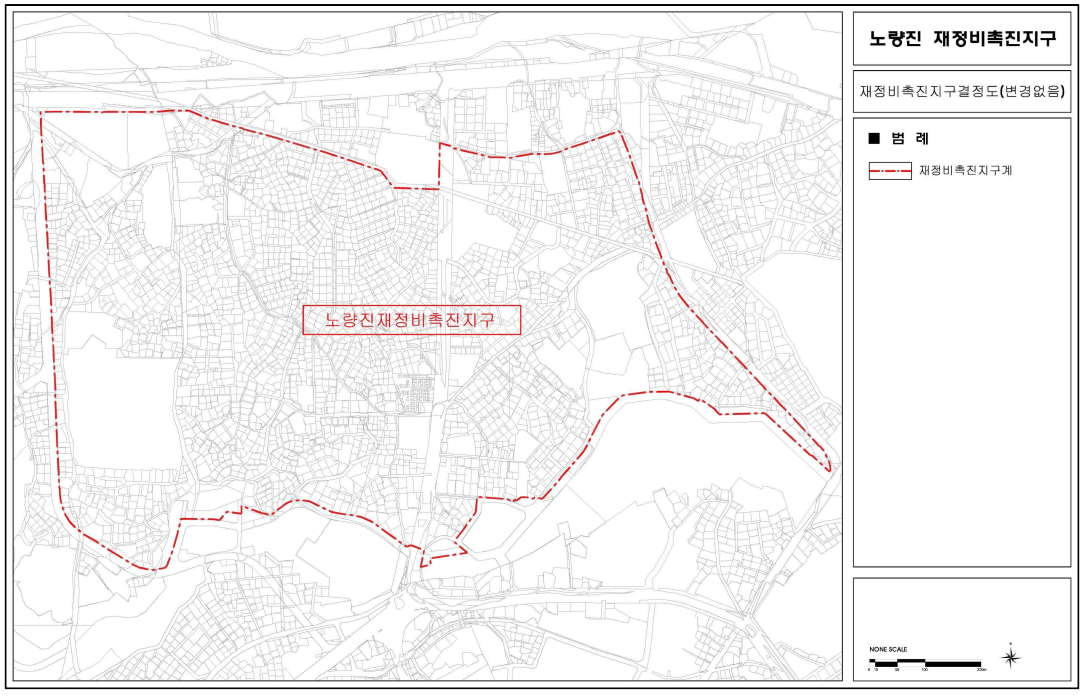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존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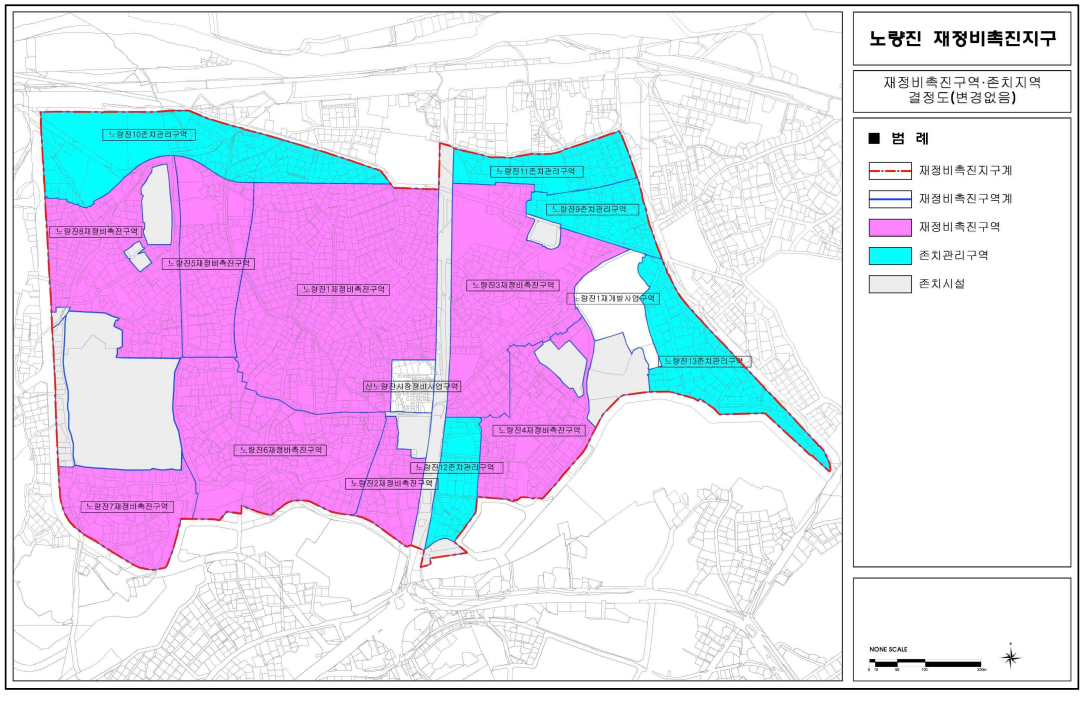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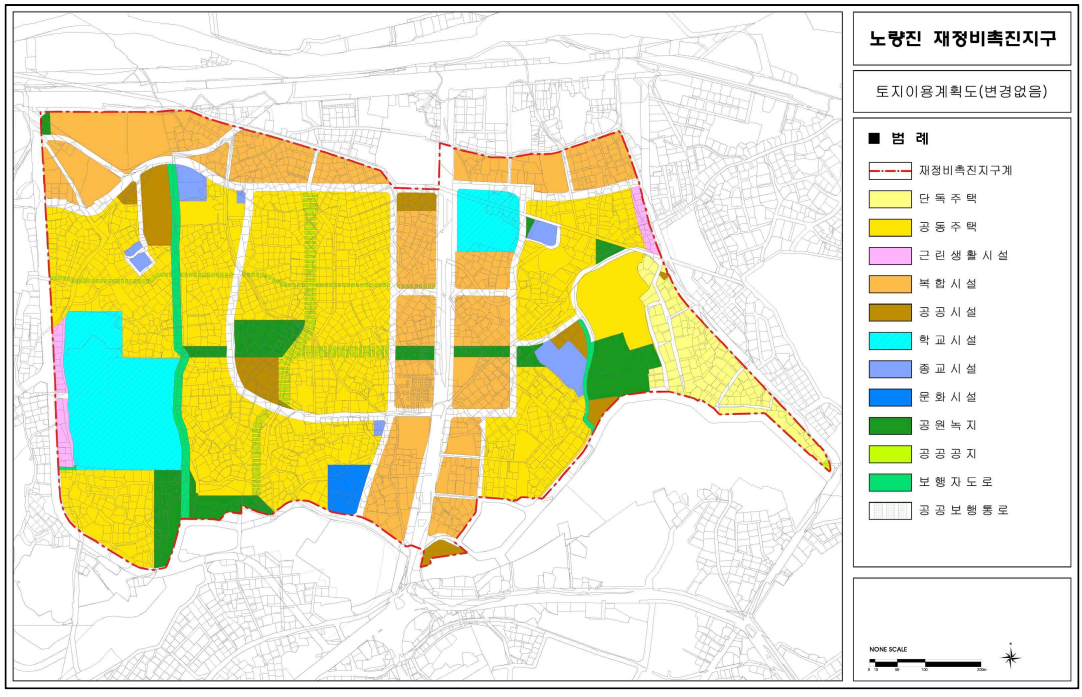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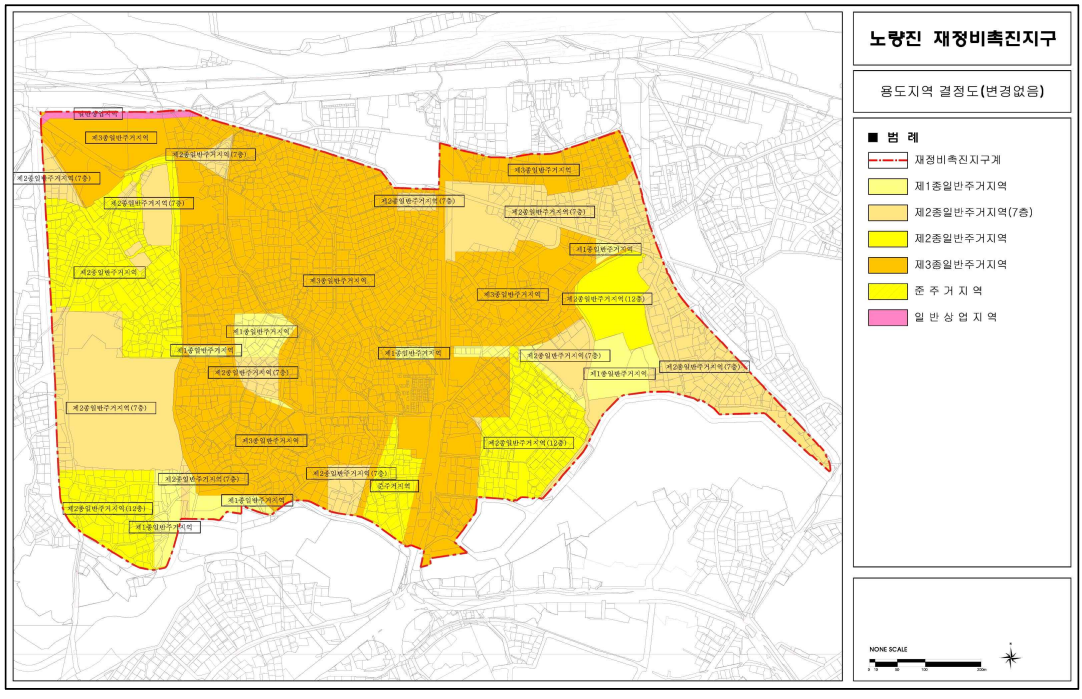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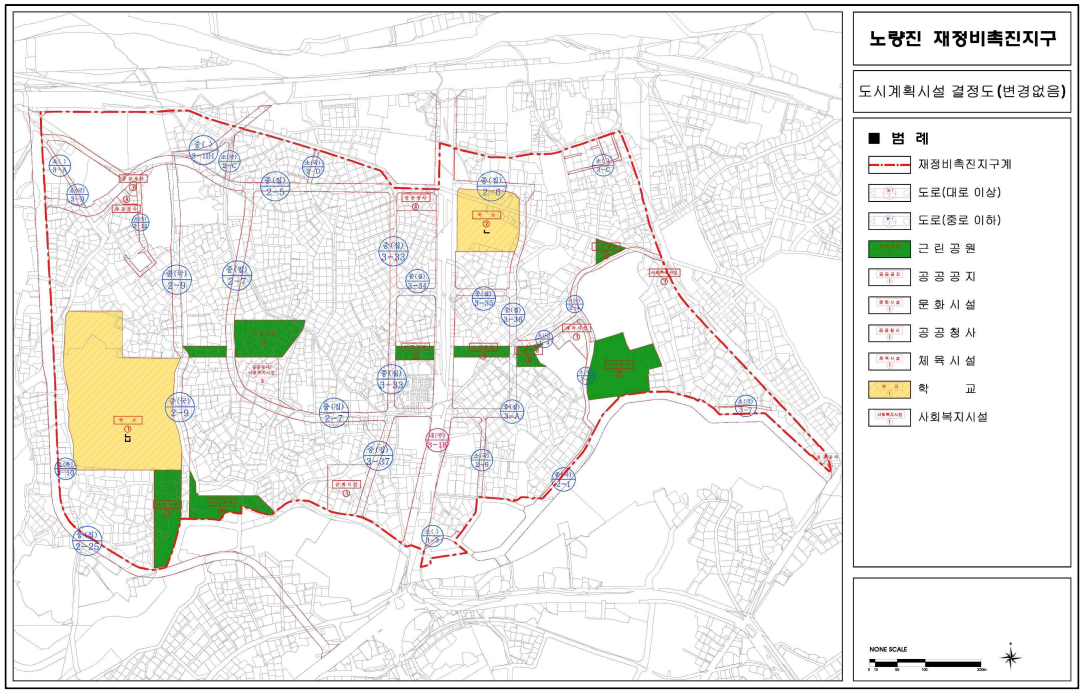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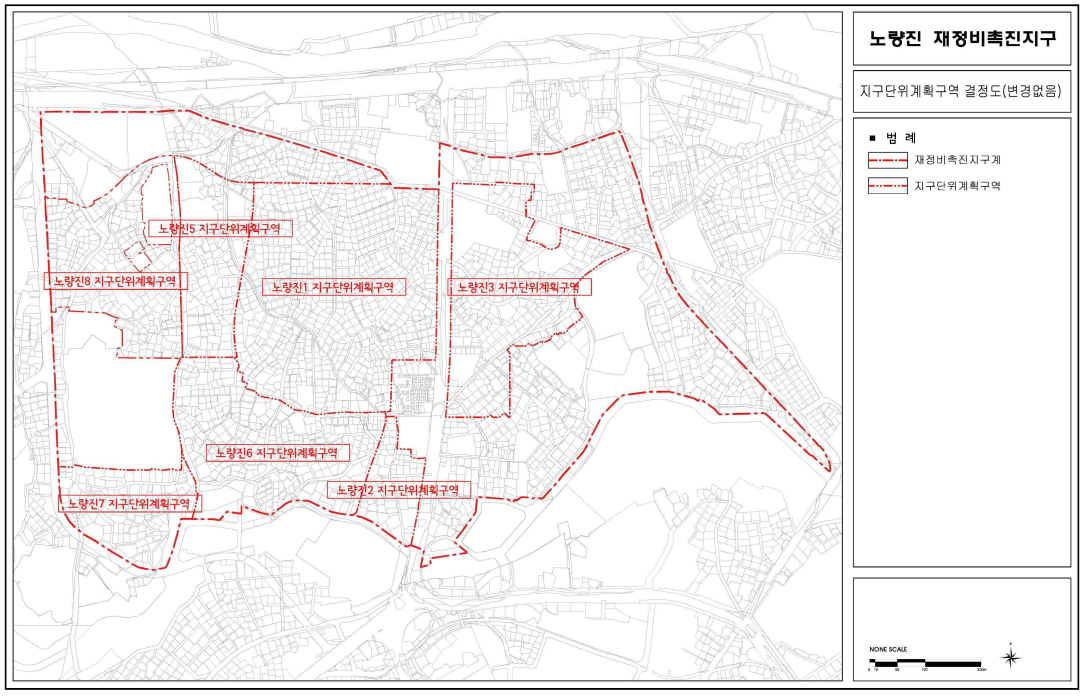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9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3.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7호(1996.7.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 3.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7호(2013. 5.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3호(2021.4.15.)로 결정(변경) 고시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 3. 2.)로 결정(변경) 고시된 우리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서동 727 외 1필지에 대하여 주차장을 만남과 휴식이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원	1,335,246.0	-	1,335,246.0	서울특별시고시 제207호 (1996.7.2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주차장

■ 주차장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주차장	수서동 727외 1필지	3,070.5	감)3,070.5	0	건고26 (90.2.2.)	광장으로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3,070.5㎡ → 0㎡(감 3,070.5㎡)	•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주차장을 광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폐지

다) 여객자동차 정류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녹지 : 변경없음

나) 공원 : 변경없음

다)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광장	일반광장	수서동 727외 1필지	0	증)3,070.5	3,070.5	-	주차장을 광장으로 변경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광장	• 주차장을 광장으로 변경 : 0㎡ → 3,070.5㎡(증 3,070.5㎡)	• 대모산 등산객 및 수서역(SRT수서역)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을 휴게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광장으로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서류 열람 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8)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8)에 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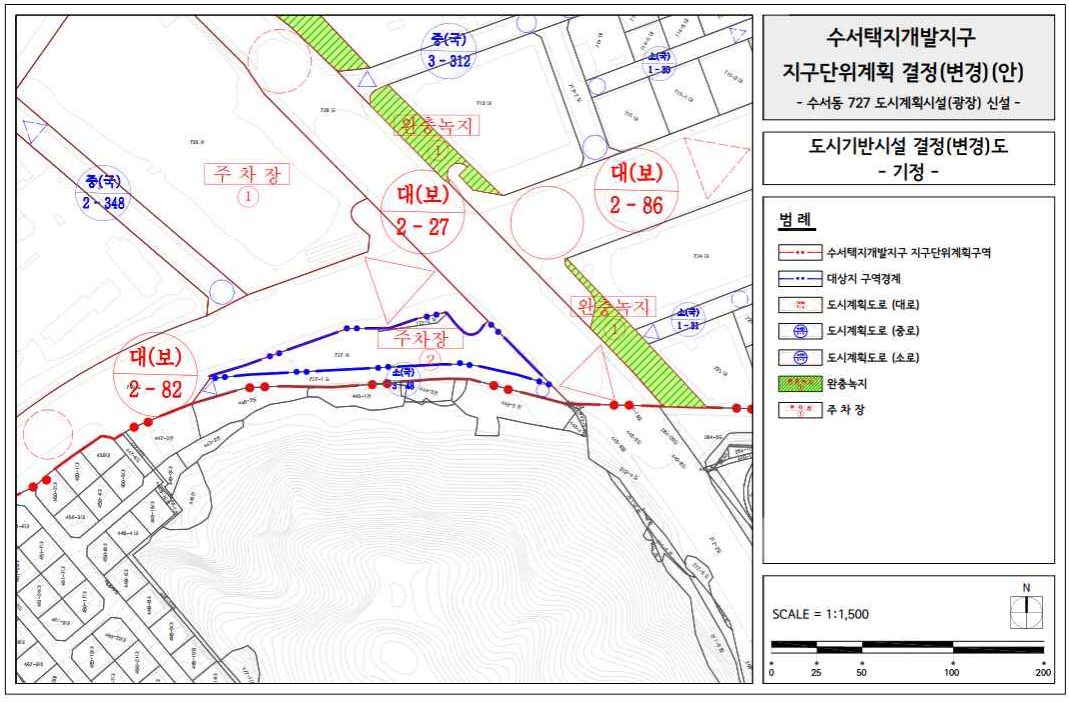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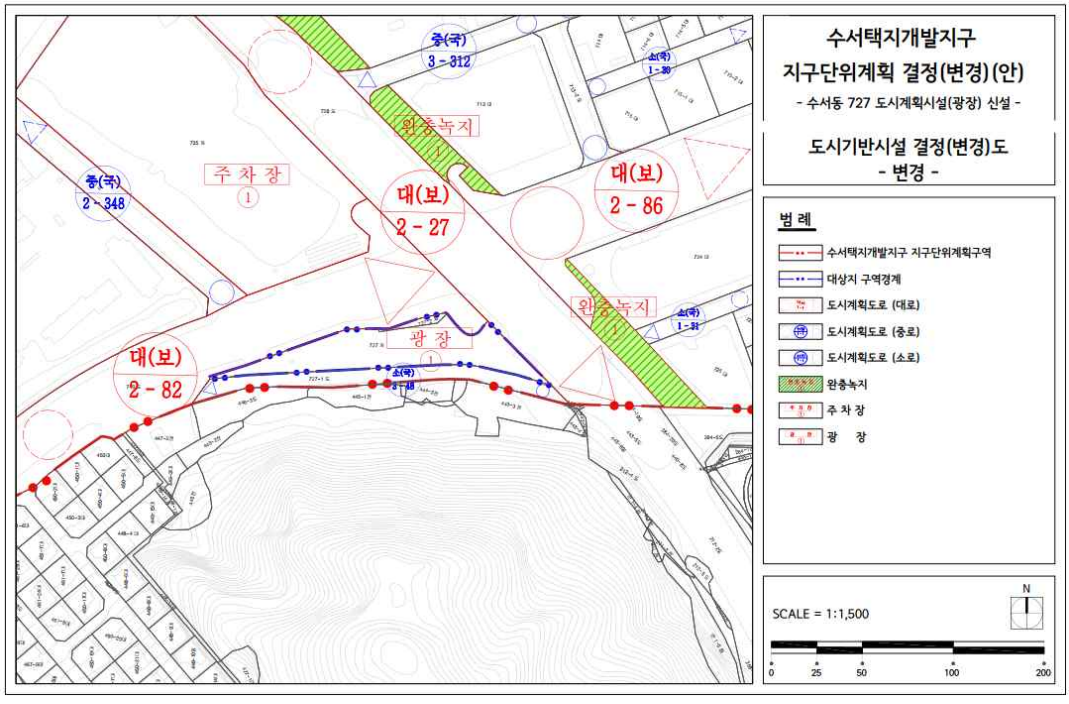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1호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11호(2023.11.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11호(2023.11.23.)로 결정된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임.

Ⅱ.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공공기여 계획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범위내 최고금액 3,332억원 적용('22.6. 감정평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제공금액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td><td>
• 공공시설 설치내역
- 구역 내(시설) : 689억원
①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39억원) -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②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46억원)
③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241억원)
④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363억원)
<table>
<tr><th>위치</th><th>규모(㎡)</th><th>용도</th><th>금액</th><th>비고</th></tr>
<tr><td>업무시설2,
6,7층</td><td>- 전용면적: 3,831.42
- 연 면 적: 5,595.36</td><td>공공업무시설</td><td>363억원</td><td></td></tr>
</table>
- 구역 외(비용) : 2,643억원
⑤ 관할자치구 미집행(중구, 529억원, 20.0%)
⑥ 장기미집행(265억원, 10%)
⑦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균형개발, 1,849억원)
-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 청파공원(도시정비과, 293억원)
- 청파로 89길 조성(304억원)
-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5억원)

※ 주1) 시설설치제공시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주2) ④ :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 내 공공업무시설 규모 변동 가능
주3) ⑤ : 관할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설치비용은 자치구에 귀속됨
주4) ⑤, ⑥ :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며, 세부 시설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음
주5) 경미한 계획의 변경사항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보정 등에 의한 공공기여 총량의 변경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각 사업별 금액의 30%이내 범위내의 금액 변경
-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배제(삭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td><td>인정기준 준용
(감정평가 기준)</td></tr>
</table>

1)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4차 개정)(2018.11.13.)」에 정한 '공공기여기준' 준수
2) 상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와 사전협상 결과(도시계획과-4729, '21.04.05.) 및 전문가 자문회의('21.09.17.)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함
※ 공공기여 총량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공기여 내용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합계				3,332억원	
구역 내 (시설)	소계			689억원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연결브릿지: 286.36㎡, 폐쇄램프: 1,378.2㎡	39억원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대상지 남측	315.98㎡	46억원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대상지 동측	888.71㎡	241억원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업무시설2(6, 7층)	전용면적 : 3,831.42㎡, 연면적 : 5,595.36㎡	363억원	공공업무시설
구역 외 (비용)	소계				2,643억원	
	관할자치구 미집행		중구	20%	529억원	
	장기미집행		서울특별시	10%	265억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균형개발)		서울특별시	-	1,849억원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서울특별시	-	1,247억원	
		청파공원	용산구 서계동	공원 : 4,013㎡, 지하주차장 : 2,680㎡ 도로 : 1,867㎡	293억원	도시정비과
		청파로 89길	용산구 서계동	총연장 332m(공사구간 216m) 폭원 15m	304억원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대상지 북측	404㎡	5억원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범위내 최고금액 3,389억원 적용('23.11. 감정평가) • 공공시설 설치내역 - 구역 내(시설) : 689억원 ①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39억원) -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②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46억원) ③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241억원) ④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363억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제공금액 인정기준 준용 (감정평가 기준)

위치	규모(㎡)	용도	금액	비고
업무시설2, 6,7층	- 전용면적: 3,831.42 - 연 면 적: 5,595.36	공공업무시설	363억원	

- 구역 외(비용) : 2,700억원
⑤ 관할자치구 미집행(중구, 540억원, 20.0%)
⑥ 장기미집행(270억원, 10%)
⑦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균형개발, 1,890억원)
-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청파공원(도시정비과, 293억원) - 청파로 89길 조성(304억원) -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5억원) ※ 주1) 시설설치제공시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주2) ④ :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 내 공공업무시설 규모 변동 가능 주3) ⑤ : 관할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설치비용은 자치구에 귀속됨 주4) ⑤, ⑥ :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며, 세부 시설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음 주5) 경미한 계획의 변경사항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보정 등에 의한 공공기여 총량의 변경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각 사업별 금액의 30%이내 범위내의 금액 변경 -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배제(삭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1)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4차 개정)(2018.11.13.)」에서 정한 '공공기여기준' 준수
2) 상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와 사전협상 결과(도시계획과-4729, '21.04.05.) 및 전문가 자문회의('21.09.17.)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함

○ 공공기여 내용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합계				3,389억원	
구역 내 (시설)	소계			689억원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연결브릿지: 286.36㎡, 폐쇄램프: 1,378.2㎡	39억원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대상지 남측	315.98㎡	46억원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대상지 동측	888.71㎡	241억원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업무시설2(6, 7층)	전용면적 : 3,831.42㎡, 연면적 : 5,595.36㎡	363억원	공공업무시설
구역 외 (비용)	소계			2,700억원	
	관할자치구 미집행	중구	20%	540억원	
	장기미집행	서울특별시	10%	270억원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균형개발)	서울특별시	-	1,890억원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서울특별시	-	1,288억원	
	청파공원	용산구 서계동	공원 : 4,013㎡ 지하주차장 : 2,680㎡ 도로 : 1,867㎡	293억원	도시정비과
	청파로 89길	용산구 서계동	총연장 332m(공사구간 216m) 폭원 15m	304억원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대상지 북측	404㎡	5억원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5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202583	주식회사 딜루션/장우석	서울 강남구 도선대로26길 36,2층(논현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3,기능계1)	영업정지 처분통지서 (23.08.10~ 23.09.08)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7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원)
광진구 긴고랑로22길 11-15 201호 (중곡동)	상하수도요금	20.08~23.08	19	683,840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성명	우편송달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0-201 제2층 제201호	조○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길 11-1 (중곡동)	주소불명	11026-0480-7758

3.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담당 박주현, ☎02-3146-27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77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6건																
1	20221491	01어0517	볼보 XC70D4	00004733921420120231025003193	종묘	0000:56	2023-09-04	12:18	2023-09-04	13:14	4,800	4,800	0	배O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97	폐문부재	2023-12-06
2	20221457	07주6069	렉서스 ES300h	00004733921420120231025003040	잠실역	0001:24	2023-09-21	11:21	2023-09-21	12:45	3,400	3,400	0	문O식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2	폐문부재	2023-12-06
3	20221599	08마1439	S450 4Matic L	00004733921420120231025002986	동대문	0001:02	2023-09-10	21:19	2023-09-10	22:21	4,600	4,600	0	(주)OOO모바일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10길6	이사불명	2023-12-06
4	20221332	100어7231	G80	00004733921420120231025002956	종묘	0003:51	2023-09-16	13:14	2023-09-16	17:05	18,800	18,800	0	황O준	경기도평택시송탄로170	폐문부재	2023-12-06
5	20221406	11고8486	BMW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00004733921420120231025002765	도봉산역	0010:16	2023-09-01	07:37	2023-09-01	17:53	10,500	10,500	0	허O강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748번길	폐문부재	2023-12-06
6	20221323	132소8285	토레스	00004733921420120231025002666	사당노외	0002:53	2023-09-06	18:54	2023-09-06	21:47	7,000	7,000	0	서O태	충청남도보령시신설5길	주소불명	2023-12-06
7	20221424	133노3603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AWD	00004733921420120231025002659	한강진역	0000:29	2023-09-11	14:13	2023-09-11	14:42	1,200	1,200	0	김O혁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34길23-28	폐문부재	2023-12-06
8	20221458	183로9387	캐스퍼(CASPER)	00004733921420120231025002177	천호역	0006:09	2023-09-01	07:48	2023-09-01	13:57	9,600	9,600	0	이O훈	경기도이천시이섭대천로1325	폐문부재	2023-12-06
9	20221357	194너5416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20231025002085	천호역	0004:03	2023-09-22	19:56	2023-09-22	23:59	12,700	12,700	0	김O주	서울특별시강남구헌릉로590길11	폐문부재	2023-12-06
10	20221595	208수1770	아반떼 Hybrid(AVANTE Hybrid)	00004733921420120231025002001	동대문	0003:56	2023-09-04	21:06	2023-09-05	01:02	8,600	8,600	0	유O상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21길	폐문부재	2023-12-0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1	20221475	225러1982	쏘렌토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2023 1025001924	구파발역	0000:16	2023-09-03	14:55	2023-09-03	15:11	300	300	0	송O규	경기도양주시장흥면가마골로9	폐문부재	2023-12-06
12	20221415	240우3672	K7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2023 1025001786	잠실역	0000:42	2023-09-07	20:14	2023-09-07	20:56	1,800	1,800	0	홍O국	경기도의정부시경의로132번길80	폐문부재	2023-12-06
13	20221442	246루4142	K3	0000473392142012023 1025001763	천호역	0001:00	2023-09-03	17:12	2023-09-03	18:12	3,100	3,100	0	김O별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11길18-8	폐문부재	2023-12-06
14	20221221	25다9202	C220 d	0000473392142012023 1025001719	동대문	0002:09	2023-09-03	22:40	2023-09-04	00:49	9,300	9,300	0	정O민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140번길	주소불명	2023-12-06
15	20221516	27어7643	쏘렌토	0000473392142012023 1025001603	종묘	0002:38	2023-09-23	12:56	2023-09-23	15:34	12,800	12,800	0	차O우	경기도평택시신대고잔길34-9	폐문부재	2023-12-06
16	20221585	290구4656	BMW 520d xDrive	0000473392142012023 1025001535	사당노외	0000:27	2023-09-13	16:57	2023-09-13	17:24	2,400	2,400	0	이O성	경기도양주시옥정로2길229	폐문부재	2023-12-06
17	20221571	313우2875	렉서스 CT200h	0000473392142012023 1025001397	수서역	0010:00	2023-09-01	08:33	2023-09-01	18:33	19,200	19,200	0	남O경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검정로3길63	폐문부재	2023-12-06
18	20221377	323러6811	K7	0000473392142012023 1025001320	신설동	0001:02	2023-09-26	14:15	2023-09-26	15:17	3,300	3,300	0	노O훈	경기도하남시신장로56번길16	수취인불명	2023-12-06
19	20221570	338고3863	벨로스터(VELOSTER)	0000473392142012023 1025001274	구파발역	0000:31	2023-09-30	09:37	2023-09-30	10:08	1,100	1,100	0	김O식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16길8-14	폐문부재	2023-12-06
20	20221366	367우4546	G80	0000473392142012023 1025001182	종묘	0001:21	2023-09-23	15:28	2023-09-23	16:49	6,800	6,800	0	박O희	전라북도김제시금산면원평11길10	폐문부재	2023-12-06
21	20221606	36더2438	스파크 1.0	0000473392142012023 1025001169	동대문	0001:44	2023-09-16	16:28	2023-09-16	18:12	3,700	3,700	0	김O례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로16번길33-8	폐문부재	2023-12-0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2	20221535	372다4971	BMW 530i	00004733921420120231025001115	마포유수지	0005:06	2023-09-05	19:08	2023-09-06	00:14	6,800	6,800	0	권O준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0다길12	폐문부재	2023-12-06
23	20221580	37마2784	Golf GTI	00004733921420120231025001053	사당노외	0003:30	2023-09-03	09:38	2023-09-03	13:08	16,800	16,800	0	이O윤	서울특별시관악구낙성대역12길8	폐문부재	2023-12-06
24	20221522	389다8191	니로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20231025001016	종묘	0000:37	2023-09-28	11:04	2023-09-28	11:41	1,600	1,600	0	황O호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139길	수취인불명	2023-12-06
25	20221356	38호6505	제네시스(GENESIS)	00004733921420120231025000974	종묘	0001:03	2023-09-22	16:01	2023-09-22	17:04	5,200	5,200	0	주식회사OOO렌트카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읍왕담로138	폐문부재	2023-12-06
26	20221340	46더4542	넥쏘 (NEXO) 수소전기차	00004733921420120231025000776	세종로	0001:08	2023-09-18	13:57	2023-09-18	15:05	1,200	1,200	0	김O건	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12길63-6	폐문부재	2023-12-06
27	20221294	51구5387	쏘렌토	00004733921420120231025000578	개화산역	0004:16	2023-09-06	12:40	2023-09-06	16:56	8,800	8,800	0	홍O역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355	폐문부재	2023-12-06
28	20221312	55어1010	BMW 520d	00004733921420120231025000463	동대문	0004:42	2023-09-09	16:56	2023-09-09	21:38	20,500	20,500	0	한O영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신로259	폐문부재	2023-12-06
29	20221500	60다3475	티볼리 에어	00004733921420120231025000334	종묘	0004:28	2023-09-09	18:37	2023-09-09	23:05	21,600	21,600	0	김O현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5길13-16	폐문부재	2023-12-06
30	20221393	61루8347	BMW 320d xDrive	00004733921420120231025000288	세종로	0001:17	2023-09-29	11:16	2023-09-29	12:33	6,800	6,800	0	이O희	경기도부천시상일로72	폐문부재	2023-12-06
31	20221321	63저3490	말리부 1.5 TURBO	00004733921420120231025000228	구로디지털단지역	0003:04	2023-09-04	21:54	2023-09-05	00:58	9,600	9,600	0	백O흠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남로17	폐문부재	2023-12-06
32	20221481	64무0379	SM3	00004733921420120231025000204	구파발역	0006:24	2023-09-10	11:52	2023-09-10	18:16	6,500	6,500	0	전O배	경기도고양시덕양구푸른마을로120번길34	폐문부재	2023-12-06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3	20221545	66노8545	쏘울	00004733921420120231025000166	영등포구청역	0002:20	2023-09-21	14:46	2023-09-21	17:06	7,200	7,200	0	김O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8길	주소불명	2023-12-06
34	20221396	68무0771	맥스크루즈 (MAXCRUZ)	00004733921420120231025000136	동구로	0004:35	2023-09-27	13:23	2023-09-27	17:58	17,600	17,600	0	임O규	경기도부천시소사로125번나길48-13	폐문부재	2023-12-06
35	20221490	68부4976	스포티지	00004733921420120231025000129	종묘	0000:42	2023-09-03	12:10	2023-09-03	12:52	3,600	3,600	0	김O남	경기도하남시풍산로270	폐문부재	2023-12-06
36	20221368	69가6388	ACCORD HYBRID	00004733921420120231025000105	복정역	0006:17	2023-09-21	13:08	2023-09-21	19:25	200	200	0	윤O준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134번길	주소불명	2023-12-0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8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전영배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74번길 17 3**호	위반일시: 2023-10-05 21:11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은동 217-2 흥제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6..6t, 초과값:4.6t 006다787*)	과태료: 7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황규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9*	위반일시: 2023-10-05 05:33 위반장소: 용산구 한남동 102-4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8m, 초과값:0.28m 세종86바326*)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신현상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진미로54번길 6*	위반일시: 2023-10-05 06:13 위반장소: 남산터널 한남고가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0.2t, 초과값:10.2t 경남82아281*)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이장복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6 116동 16**호	위반일시: 2023-09-11 14:45 위반장소: 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m, 초과값 0.2m 인천86아27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지정웅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13 105동 12**호	위반일시: 2023-09-18 10:55 위반장소: 금화터널 입구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2t, 초과값:1.2t 인천06아781*)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박병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0*	위반일시: 2023-09-09 14:39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 3가 16-48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9.7t, 초과값 7.7t 경기06모150*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0-27 납기일: 2023-12-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방호명	경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 503동 11**호	위반일시: 2202-08-02 08:56 위반장소: 가양대교 북단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5m, 초과값:0.25m 경기83사738*)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8-25 납기일: 2023-10-31
이찬호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30 11**호	위반일시: 2202-08-04 11:01 위반장소: 은평구 증산동 223-25 증산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43.5t, 초과값:11.5t 경기06조739*)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8-25 납기일: 2023-10-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84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7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3년 12월 29일(금)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10저2346	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0-15 16:21	마포01_강변북로(서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82루6153	김*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3-10-21 21:48	경기도 수원시 LG전자베스트샵(수원방면) 4차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08부3876	박*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0-22 11:57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05오4717	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0-26 21:24	마포01_강변북로(서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5	02다5590	윤*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10-27 16:40	마포02_월드컵경지장(월드컵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	서울81사7322	유*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0-28 06:54	용산02_강변북로(구리)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	43보7464	박*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31 15:39	은평07_증산로(DM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

나. 본 1회차 위반 경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문자 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가.핸드폰(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나.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다.이메일(smalleyesj@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85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48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1	01조1175	㈜*송지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0-01 23:22	용산03_강변북로(일산)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160,000원
2	02오7854	황*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0-01 14:48	중랑03_망우리고개 1차로	〃	〃
3	19러1375	변*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01 08:24	용산02_강변북로(구리) 3차로	〃	〃
4	48수4454	문*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03 19:51	강서02_개화역 1차로	〃	〃
5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3-10-05 17:11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1차로	〃	〃
6	40도8541	㈜*렌트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0-05 17:47	강남11_밤고개로 3차로	〃	〃
7	04구4213	마*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06 14:35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4차로	〃	〃
8	09더5877	김*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10-07 10:52	마포03_성산로(연희IC)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9	75부3592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3-10-08 16:14	구로06_개봉교후방 1차로	〃	〃
10	55나9536	김*응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10-12 12:21	강남07_삼성역 1차로	〃	〃
11	90루6225	박*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0-13 10:26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4차로	〃	〃
12	03부9655	황*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10-14 12:21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2차로	〃	〃
13	09모4838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0-14 10:18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	〃
14	33다7898	최*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0-14 15:53	서초04_사당IC진출로 1차로	〃	〃
15	46조3302	황*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0-16 12:19	금천03_시흥대로(시흥IC) 4차로	〃	〃
16	04우8777	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17 18:08	경기도 안산시 안산IC(안산방향) 2차로	〃	〃
17	09누7635	조*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10-17 00:29	용산02_강변북로(구리) 3차로	〃	〃
18	03모9273	김*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0-18 12:48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5차로	〃	〃
19	70어1538	김*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21 17:40	금천07_호암로 2차로	〃	〃
20	04너7024	해*에이치아이에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10-22 17:42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3차로	〃	〃
21	92어5352	김*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10-22 01:19	서초05_양재IC 4차로	〃	〃
22	04고636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23 15:34	마포03_성산로(연희IC) 1차로	〃	〃
23	12보7036	김*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0-23 21:29	강남04_강남대로(신사역) 2차로	〃	〃
24	34서8825	이*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0-23 21:41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4차로	〃	〃
25	47너8070	양*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24 16:09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	〃
26	05주4134	이 *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10-26 12:31	강남08_수서IC 2차로	〃	〃
27	65주5572	임*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0-26 12:19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IC)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28	93구4072	백*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0-26 12:54	은평04_구기터널(진흥로) 2차로	〃	〃
29	03보6592	주*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0-27 13:10	관악02_남부순환로(낙성대역) 3차로	〃	〃
30	70도5219	주-*리에프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10-28 17:56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31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28 14:41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	〃
32	02부8957	윤*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0-29 13:17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1차로	〃	〃
33	06구1063	장*혁(장*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0-29 17:44	용산02_강변북로(구리) 4차로	〃	〃
34	39다1060	㈜파*컴인프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0-29 20:08	강남11_밤고개로 3차로	〃	〃
35	70머2310	정*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0-29 17:55	중랑01_북부간선도로 1차로	〃	〃
36	02너8515	송*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0-30 02:26	용산01_서빙고로(한남역) 4차로	〃	〃
37	38다5060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0-30 12:06	마포01_강변북로(서울) 5차로	〃	〃
38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3-10-31 16:22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39	03버6346	이*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0-31 12:56	노원02_덕릉로(당고개) 2차로	〃	〃
40	05너7304	정*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10-31 15:11	강동05_상일IC 3차로	〃	〃
41	05우8927	채*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0-31 15:15	광진03_워커힐(아차산로) 1차로	〃	〃
42	34너9985	강*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10-31 17:32	강북01_우이제3교(덕릉로) 2차로	〃	〃
43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0-31 08:22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44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0-31 09:21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호평동방면 1차로	〃	〃
45	52소5164	C*I MEIYIN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0-31 16:12	용산03_강변북로(일산) 4차로	〃	〃
46	80로5380	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10-31 22:43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47	89오9838	이*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0-31 23:51	양천03_경인고속도로 4차로	"	"
48	서울40모5845	이*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10-31 18:16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 도로) 2차로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가.핸드폰(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나.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다.이메일(smalleyesj@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1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11.30. ~ 2023.12.14.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태혁종합건설㈜ (대표 이지혜)	건축공사업 1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05, 201호 (잠실동)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요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체납 세부내역 문의: 송파구 세무행정과 02-2174-3774)	지방세징수법제7조	영업정지 5개월 (2023.12.15.~2024.5.14.)	법 제83조 제11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등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 체 명 : 해주엔지니어링 주시회사
2. 대 표 자 : 강대성(1963. 10. 15.)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현로 75길 16, 4층(역삼동, 이호빌딩)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57호
6. 등록취소일자 : 2023. 11. 15.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8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30. ~ 12. 14.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3. 12. 28.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30412-003	11-12-08810	심재열	심*철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42길	100,000
2	봉안	19930416-005	11-12-08943	박의임	이*호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종로구 무악동	100,000
3	봉안	19930426-004	12-20-13251	진공자	진*준	2023-10-27	수취인불명	서울 중랑구 신내로	100,000
4	봉안	19930428-005	12-20-13254	엄명순	정*식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0,000
5	봉안	19930429-006	12-20-13255	최남석	최*인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부일로7길	100,000
6	봉안	19930430-003	11-12-08813	김지수	김*기	2023-10-27	폐문부재	강원 영월군 섭새길	100,000
7	봉안	19980401-004	11-21-10456	황학래	황*선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광정로	180,000
8	봉안	19980402-001	11-23-10914	김철회	김*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00,000
9	봉안	19980402-014	11-23-10906	곽근석	신*호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부흥로	100,000
10	봉안	19980403-010	11-13-09144	백순임	정*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71길	100,000
11	봉안	19980406-007	11-24-11154	김현숙	노*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중대로31길	180,000
12	봉안	19980407-007	12-01-04364	이옥자	한*용	2023-10-27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00,000
13	봉안	19980408-010	11-24-11201	이우직	이*창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방학로	100,000
14	봉안	19980409-002	11-24-11204	이정희	황*호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36다길	100,000
15	봉안	19980410-009	12-12-11666	조규선	조*원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41번길	100,000
16	봉안	19980412-014	12-08-05484	김재국	김*섭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0,000
17	봉안	19980415-003	11-24-11141	이병월	정*식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휴암로284번길	100,000
18	봉안	19980415-019	11-23-10994	지옥환	지*순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7길	100,000
19	봉안	19980416-006	11-24-11211	심재필	최*선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안곡로	180,000
20	봉안	19980416-007	11-24-11212	이성돌	이*선	2023-10-26	주소불명	경기 구리시 벌말로147번길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1	봉안	19980418-003	12-12-11674	신정균	신*현	2023-10-27	주소불명	경기 화성시 발안서로42번길	100,000
22	봉안	19980419-003	11-24-11322	송지현	박*로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해밀예당2로145번길	180,000
23	봉안	19980422-017	11-24-11178	유광석	신*순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난곡로24가길	100,000
24	봉안	19980423-004	11-24-11223	송덕순	김*철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옥돌내길	100,000
25	봉안	19980423-010	12-23-13835	김현근	김*근	2023-10-30	수취인불명	경기 양주시 꿈나무로	180,000
26	봉안	19980424-001	12-23-13842	유명자	전*은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100,000
27	봉안	19980424-010	12-23-13846	민성기	장*희	2023-10-25	수취인불명	충남 논산시 안심로	100,000
28	봉안	19980424-013	12-23-13850	조재철	조*식	2023-10-26	주소불명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0,000
29	봉안	20030401-043	66-01-30815	정준상	정*오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면목로11길	100,000
30	봉안	20030401-045	73-03-21306	공명길	공*희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오류로8라길	100,000
31	봉안	20030402-015	73-03-21321	이기영	강*봉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오정구 원종동	100,000
32	봉안	20030402-023	73-03-21329	허영숙	김*연	2023-10-26	주소불명	서울 마포구 신촌로28나길	100,000
33	봉안	20030402-037	73-03-21339	주덕효	주*옥	2023-10-27	폐문부재	충남 아산시 고불로	100,000
34	봉안	20030403-013	73-03-21352	김경배	김*준	2023-10-27	수취인불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00,000
35	봉안	20030403-030	61-01-02669	전환배	전*수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100,000
36	봉안	20030403-045	73-03-21374	윤계수	안*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조원로22길	25,000
37	봉안	20030405-002	73-03-21416	문복남	김*용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18번길	100,000
38	봉안	20030405-007	73-03-21419	최인자	최*철	2023-10-25	주소불명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00,000
39	봉안	20030405-008	73-03-21420	이용래	김*욱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100,000
40	봉안	20030406-027	73-03-21456	강행중	강*일	2023-10-26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연풍내길	100,000
41	봉안	20030406-034	66-01-30836	이우택	이*기	2023-10-26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2	봉안	20030406-038	73-03-21463	박면율	박*언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3길	25,000
43	봉안	20030406-049	73-03-21470	송달섭	송*식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139번길	100,000
44	봉안	20030406-051	66-01-30840	신인선	신*덕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000
45	봉안	20030407-013	73-03-21482	엄정환	엄*천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한내로	100,000
46	봉안	20030407-021	66-01-30842	정성엽	정*정	2023-10-27	폐문부재	부산 연제구 과정로348번길	180,000
47	봉안	20030407-028	73-03-21493	최민호	장*임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20길	25,000
48	봉안	20030407-043	73-03-21507	임선순	김*철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00,000
49	봉안	20030408-002	73-03-21510	유인규	유*현	2023-10-26	주소불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0,000
50	봉안	20030408-010	73-03-21518	양태원	양*근	2023-11-02	수취인불명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00,000
51	봉안	20030408-030	73-03-21536	이정수	서*덕	2023-10-27	폐문부재	전북 완주군 낙평장기로	100,000
52	봉안	20030409-035	73-03-21566	윤인순	서*숙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25,000
53	봉안	20030410-009	73-03-21587	박복식	박*식	2023-10-26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100,000
54	봉안	20030410-031	73-03-21605	박덕만	박*신	2023-10-26	주소불명	서울 노원구 광운로19가길	100,000
55	봉안	20030410-038	73-03-21609	박옥금	안*진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세미로1길	100,000
56	봉안	20030411-008	73-03-21629	안상술	안*호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100,000
57	봉안	20030411-022	73-03-20253	윤영희	윤*수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00,000
58	봉안	20030411-036	73-03-21657	이병순	한*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5길	100,000
59	봉안	20030412-019	73-03-21674	윤병태	윤*중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00,000
60	봉안	20030412-027	73-03-21682	곽외조	한*규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25,000
61	봉안	20030413-001	73-03-21695	김공호	김*원	2023-10-26	수취인불명	서울 도봉구 노해로	100,000
62	봉안	20030413-025	73-03-21717	오옥환	오*아	2023-10-27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5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63	봉안	20030413-034	73-03-21724	성성례	이*규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7번길	100,000
64	봉안	20030414-023	73-03-21749	김경옥	오*준	2023-10-27	폐문부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781번길	100,000
65	봉안	20030414-033	73-03-21757	나동찬	나*찬	2023-10-26	이사불명	전남 함평군 학교길	100,000
66	봉안	20030415-014	73-03-21779	김정임	신*구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00,000
67	봉안	20030415-028	73-03-21789	박종근	박*준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100,000
68	봉안	20030416-019	73-03-21816	주인식	주*열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32나길	100,000
69	봉안	20030416-021	73-03-21818	김재훈	김*석	2023-10-27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0,000
70	봉안	20030416-022	73-03-21819	정옥례	최*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100,000
71	봉안	20030417-004	73-03-21844	송재섭	송*필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59나길	100,000
72	봉안	20030417-014	73-03-21854	정하경	정*영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0,000
73	봉안	20030417-035	73-03-21871	서정환	서*호	2023-10-27	폐문부재	강원 강릉시 성덕로	100,000
74	봉안	20030418-001	73-03-21870	손태래	홍*현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오산시 법원로15번길	100,000
75	봉안	20030418-023	66-01-30867	김동복	김*범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동패로	25,000
76	봉안	20030419-002	73-04-21908	박창개	박*철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개봉로1길	200,000
77	봉안	20030419-016	73-04-21922	유현식	이*수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평택시 중앙로	75,000
78	봉안	20030419-017	73-04-21923	최영철	최*진	2023-10-27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200,000
79	봉안	20030419-020	73-04-21926	오질쇠	오*연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00,000
80	봉안	20030419-021	73-04-21927	김경심	홍*기	2023-10-27	주소불명	서울 금천구 독산동	200,000
81	봉안	20030419-024	73-04-21930	박영임	홍*화	2023-10-26	폐문부재	경기 광명시 오리로	75,000
82	봉안	20030419-030	66-01-30868	장덕환	장*옥	2023-10-25	수취인불명	대전 서구 계룡로329번길	200,000
83	봉안	20030419-044	73-04-21948	이경희	이*석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84	봉안	20030420-003	73-04-21953	권윤석	권*숙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비룡로331번길	200,000
85	봉안	20030420-021	73-04-21971	송장군	송*섭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75,000
86	봉안	20030421-001	73-04-21978	윤병규	윤*규	2023-10-27	수취인불명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0,000
87	봉안	20030421-008	73-04-21985	김수천	김*현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75,000
88	봉안	20030421-019	73-04-21996	정광훈	정*숙	2023-10-26	수취인불명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200,000
89	봉안	20030421-026	73-04-22001	김무영	김*성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54번길	200,000
90	봉안	20030421-033	73-04-22005	이창우	이*자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숭문길	200,000
91	봉안	20030421-036	73-04-22008	김홍천	김*식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난곡로22길	200,000
92	봉안	20030422-024	73-04-22029	윤화미	신*민	2023-10-27	폐문부재	전북 익산시 서동로21길	200,000
93	봉안	20030422-031	73-04-22036	신정균	신*근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200,000
94	봉안	20030422-040	73-04-22043	이복례	조*계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불광로11길	200,000
95	봉안	20030423-009	73-04-22056	고삼수	이*명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89길	200,000
96	봉안	20030423-011	73-04-22058	최명희	박*영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난곡로61길	75,000
97	봉안	20030423-018	73-04-22065	조행자	정*선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무하로111번길	200,000
98	봉안	20030423-023	73-04-22070	성한모	성*용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41번길	200,000
99	봉안	20030424-001	73-04-22085	최덕성	황*욱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93번길	200,000
100	봉안	20030424-020	73-04-22104	이재환	이*진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화성시 계곡촌길	200,000
101	봉안	20030424-022	73-04-22106	이인순	김*국	2023-10-26	폐문부재	경기 과천시 중앙로	200,000
102	봉안	20030425-003	73-04-22118	곽호영	곽*욱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200,000
103	봉안	20030425-005	73-04-22120	김문생	김*대	2023-10-27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삼봉로	200,000
104	봉안	20030425-041	66-01-30883	선명자	이*우	2023-10-26	폐문부재	충남 태안군 만리포1길	1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05	봉안	20030425-045	73-04-22154	서애기	정*상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불광로13길	200,000
106	봉안	20030426-002	73-04-22158	이정화	이*민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200,000
107	봉안	20030426-009	73-04-22165	방용태	방*근	2023-10-25	이사불명	경기 파주시 술이홀로895번길	200,000
108	봉안	20030426-023	73-04-22175	이사향	이*희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응봉동	75,000
109	봉안	20030426-024	73-04-22176	최근홍	최*영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가좌로10길	200,000
110	봉안	20030426-043	73-04-22194	이봉숙	김*민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새원길	200,000
111	봉안	20030427-005	73-04-22200	이강삼	이*규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19길	200,000
112	봉안	20030427-024	66-01-30888	강순남	강*용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성암로9안길	200,000
113	봉안	20030427-026	73-04-22214	최병식	최*욱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200,000
114	봉안	20030427-041	73-04-22225	이석락	이*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중계동	200,000
115	봉안	20030427-044	73-04-22226	노명한	노*상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포천시 넘마을1길	200,000
116	봉안	20030428-013	73-04-22240	기부례	황*종	2023-10-27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27번길	200,000
117	봉안	20030428-030	73-04-22255	남건우	남*원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천중로40길	200,000
118	봉안	20030428-036	73-04-22261	서봉식	서*국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200,000
119	봉안	20030428-037	11-11-08747	지한수	지*준	2023-10-27	수취인불명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200,000
120	봉안	20030428-041	73-04-22265	박순례	김*종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6길	200,000
121	봉안	20030429-005	73-04-22270	태복임	김*이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로4길	200,000
122	봉안	20030429-010	73-04-22273	이장휘	김*례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중구 신당5동	75,000
123	봉안	20030429-020	73-04-22283	김선덕	한*희	2023-10-27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비룡길23번길	75,000
124	봉안	20030429-024	73-04-22287	김문성	이*령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200,000
125	봉안	20030429-032	73-04-22295	박순자	배*인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13길	2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26	봉안	20030429-034	73-04-22297	임병주	임*호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0번길	75,000
127	봉안	20030430-033	73-04-22330	김영희	박*성	2023-10-26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시청로	75,000
128	봉안	20030430-034	73-04-22331	고용재	고*우	2023-10-26	수취인불명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75,000
129	봉안	20030430-044	73-04-22341	유종걸	유*규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200,000
130	봉안	20080403-001	62-01-12298	길영국	김*희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5길	75,000
131	봉안	20080407-005	62-01-12703	김학순	양*식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5,000
132	봉안	20080412-003	62-01-12886	김찬호	김*기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07번길	75,000
133	봉안	20080417-001	62-01-13178	차동환	차*희	2023-10-27	폐문부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2길	75,000
134	봉안	20080417-002	62-01-13188	박희대	박*희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로38길	75,000
135	봉안	20080420-008	62-01-13335	조춘오	홍*동	2023-10-26	주소불명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75,000
136	봉안	20080426-002	62-01-13694	이상덕	이*팔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000
137	봉안	20130402-006	11-18-10024	윤도순	윤*연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감일순환로	50,000
138	봉안	20130410-006	11-21-10375	이영자	김*환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25,000
139	봉안	20130410-008	11-21-10390	박기환	박*호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57번길	25,000
140	봉안	20130414-002	62-01-13650	우용택	우*연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	25,000
141	봉안	20130417-005	11-23-10725	김병규	김*경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종암로25길	25,000
142	봉안	20130426-001	11-24-11086	이옥순	이*주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은평로	25,000
143	봉안	20180401-003	10-24-08362	노길순	최*호	2023-10-26	수취인불명	서울 성북구 종암로36길	25,000
144	봉안	20180401-011	11-01-02357	박영자	임*빈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25,000
145	봉안	20180404-003	11-05-03205	이금순	신*제	2023-10-27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25,000
146	봉안	20180405-007	11-12-09030	이란순	신*환	2023-10-27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47	봉안	20180406-007	11-15-09514	임세재	윤*상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동남로23가길	25,000
148	봉안	20180411-016	11-23-10764	김선길	김*일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종로구 숭인동길	50,000
149	봉안	20180415-007	12-03-04791	고동규	고*혁	2023-10-26	수취인불명	서울 은평구 연서로	25,000
150	봉안	20180415-009	12-03-04795	이병모	이*상	2023-10-26	이사불명	경기 부천시 성오로127번길	25,000
151	봉안	20180416-008	12-05-05117	백창선	백*현	2023-10-27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대호길	50,000
152	봉안	20180418-004	12-09-05815	오순옥	황*연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000
153	봉안	20180418-007	12-09-05820	문복남	염*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마길	25,000
154	봉안	20180419-004	12-12-11680	원훈필	원*식	2023-10-26	주소불명	경기 파주시 교하로	25,000
155	봉안	20180421-012	12-18-12874	최은식	김*수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25,000
156	봉안	20180423-006	12-22-13635	유찬영	유*임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로31길	50,000
157	봉안	20180423-008	12-22-13694	김기순	정*권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13길	25,000
158	봉안	20180424-004	41-01-00001	김요숙	서*희	2023-10-27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1가길	25,000
159	봉안	20180426-015	12-26-14360	박재동	김*관	2023-10-26	수취인불명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332번길	25,000
160	봉안	20180429-004	41-01-00582	심명보	심*윤	2023-10-27	폐문부재	대전 동구 대학로	25,000
161	봉안	19930807-005	11-13-09085	문병호	문*철	2023-10-31	이사불명	서울 용산구 후암로	180,000
162	봉안	19930816-002	11-13-09118	허광	양*이	2023-11-01	수취인부재	경기 의정부시 누원로	100,000
163	봉안	19930817-002	12-19-13121	전종환	전*현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100,000
164	봉안	19930831-003	11-12-09015	백연순	김*은	2023-10-31	수취인불명	강원 횡성군 생운길	100,000
165	봉안	19980801-011	12-12-11759	이돈익	이*현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월계2동	25,000
166	봉안	19980805-002	12-13-11887	김대봉	김*룡	2023-10-31	이사불명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100,000
167	봉안	19980805-012	12-12-11763	이인규	이*성	2023-11-03	수취인불명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진덕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68	봉안	19980806-009	12-23-14035	김재복	김*현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청학로학교길	100,000
169	봉안	19980807-012	12-14-12111	박수명	이*인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포천시 원모루로	180,000
170	봉안	19980808-011	12-13-11861	이귀년	강*성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80,000
171	봉안	19980808-012	12-13-11862	강재선	강*성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80,000
172	봉안	19980808-013	12-13-11891	강학석	강*성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80,000
173	봉안	19980808-024	12-13-12020	손혜영	손*현	2023-10-30	주소불명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80,000
174	봉안	19980810-018	12-19-13213	박영규	박*우	2023-10-3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0,000
175	봉안	19980811-004	10-01-00112	신항철	신*호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신흥로36길	100,000
176	봉안	19980811-011	12-23-14047	박한영	박*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100,000
177	봉안	19980811-014	12-10-05890	서순엽	이*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00,000
178	봉안	19980812-009	12-23-14058	임지수	임*선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80,000
179	봉안	19980814-013	12-13-11866	방언연	지*석	2023-10-31	주소불명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100,000
180	봉안	19980814-015	12-13-11867	이정근	장*옥	2023-10-31	폐문부재	인천 서구 심곡로8번길	100,000
181	봉안	19980814-017	12-13-11869	김용배	김*관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194번길	100,000
182	봉안	19980814-018	12-13-11870	예태기	예*현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능곡로	100,000
183	봉안	19980815-018	12-13-11904	김광희	유*준	2023-10-31	주소불명	서울 도봉구 쌍문동	180,000
184	봉안	19980816-011	12-23-14061	김정숙	정*성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1나길	100,000
185	봉안	19980817-027	12-14-12143	박봉옥	이*용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토정로	100,000
186	봉안	19980818-022	12-13-11914	윤정호	박*영	2023-10-31	폐문부재	강원 원주시 단구동	180,000
187	봉안	19980819-010	12-13-11835	대종배	대*홍	2023-10-31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222번길	180,000
188	봉안	19980820-003	12-23-14074	이정근	이*수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20번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9	봉안	19980820-019	12-13-12011	송우동	송*철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100,000
190	봉안	19980820-021	12-13-12038	김영기	조*희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16길	100,000
191	봉안	19980821-028	12-17-12745	정성인	정*중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26번길	180,000
192	봉안	19980822-001	12-18-12870	김복녀	강*호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공릉로	100,000
193	봉안	19980822-010	12-14-12097	김창기	김*주	2023-11-01	폐문부재	전북 군산시 임사안2길	100,000
194	봉안	19980822-019	12-14-12262	김무영	김*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가좌로7라길	100,000
195	봉안	19980822-020	12-14-12263	김원자	조*호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동일로139나길	100,000
196	봉안	19980823-032	12-14-12168	기갑수	기*원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수색로	100,000
197	봉안	19980824-017	12-23-14095	임경빈	임*렬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00,000
198	봉안	19980824-022	12-13-12053	박동우	박*신	2023-11-01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행원용사촌길	100,000
199	봉안	19980824-028	12-14-12233	박필숙	김*정	2023-10-31	폐문부재	대전 서구 제비네1길	100,000
200	봉안	19980824-029	12-14-12271	최삼례	이*성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사당로9라길	100,000
201	봉안	19980825-007	12-14-12149	갈윤진	갈*덕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100,000
202	봉안	19980825-013	12-14-12175	권이택	권*근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100,000
203	봉안	19980826-006	12-18-12946	정진홍	정*린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198가길	180,000
204	봉안	19980826-018	12-15-12391	윤종걸	윤*오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범안로49번길	180,000
205	봉안	19980826-020	12-15-12393	유경욱	우*정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자운서원로	100,000
206	봉안	19980827-010	63-01-23990	장순자	박*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80,000
207	봉안	19980828-015	12-14-12242	서형택	서*현	2023-11-01	폐문부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49번길	100,000
208	봉안	19980828-022	12-15-12400	신화자	이*혁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180,000
209	봉안	19980829-021	12-14-12189	김기출	이*환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10	봉안	19980829-030	12-24-14116	김봉기	김*수	2023-10-31	폐문부재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100,000
211	봉안	19980830-015	12-15-12409	이종명	이*희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오목로30길	180,000
212	봉안	19980831-016	12-24-14126	장일경	이*숙	2023-10-31	폐문부재	대구 북구 학정동로	100,000
213	봉안	19980831-029	12-19-12996	이상순	김*석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16번길	180,000
214	봉안	20030802-001	73-04-22653	백주희	김*훈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	75,000
215	봉안	20030804-013	73-04-22661	김천석	김*곤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75,000
216	봉안	20030805-010	73-04-22665	김승호	김*희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국회단지21길	75,000
217	봉안	20030806-005	73-04-22670	김종현	김*옥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와룡로3번길	75,000
218	봉안	20030808-003	73-04-22674	정문자	박*식	2023-10-31	폐문부재	대전 서구 도솔로	75,000
219	봉안	20030809-001	73-04-22679	노일파	노*경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상봉로15가길	75,000
220	봉안	20030809-009	73-04-22683	곽막례	오*금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75,000
221	봉안	20030809-010	73-04-22684	임남옥	임*관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동일로123가길	75,000
222	봉안	20030812-001	73-04-22693	박동규	박*일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75,000
223	봉안	20030814-002	66-01-31052	조춘숙	송*주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00,000
224	봉안	20030814-006	73-04-22700	이병창	서*숙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매봉길	75,000
225	봉안	20030818-010	73-04-22713	정귀애	나*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37길	75,000
226	봉안	20030819-003	66-01-31057	장갑순	박*자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가락로21길	145,000
227	봉안	20030822-001	73-04-22722	노현영	정*원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75,000
228	봉안	20030823-001	66-01-31064	박애지	전*호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27길	200,000
229	봉안	20030824-001	66-01-31065	최귀영	최*진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75,000
230	봉안	20030825-009	73-04-22732	김창부	김*범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곡란로90번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31	봉안	20030826-002	73-04-22735	도화순	예*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75,000
232	봉안	20030828-001	63-01-22724	김이달	김*수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양화로	75,000
233	봉안	20030829-001	73-04-22745	임병철	임*현	2023-10-31	수취인불명	경기 파주시 장승배기로	75,000
234	봉안	20030829-003	66-01-31066	김원진	김*근	2023-10-31	수취인불명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70번길	165,000
235	봉안	20030830-007	66-01-31068	진전기	진*술	2023-10-30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75,000
236	봉안	20070214-001	66-01-31367	우동옥	우*택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2길	75,000
237	봉안	20080801-005	63-01-17267	김관묵	김*웅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은평로	75,000
238	봉안	20080801-008	63-01-17327	방경숙	김*숙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75,000
239	봉안	20080802-001	63-01-17383	김세훈	김*현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	75,000
240	봉안	20080807-008	63-01-17604	신광협	오*실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75,000
241	봉안	20080807-009	63-01-17606	허광화	허*삼	2023-10-31	이사불명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4번길	75,000
242	봉안	20080808-001	63-01-17608	이홍순	이*은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장문로15길	75,000
243	봉안	20080810-001	63-01-17665	김길훈	김*경	2023-10-31	폐문부재	충북 음성군 대학길190번길	75,000
244	봉안	20080813-002	63-01-17784	강흠임	김*우	2023-10-31	폐문부재	충남 공주시 창말길	75,000
245	봉안	20080815-003	63-01-17828	석성균	최*순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100,000
246	봉안	20080817-002	63-01-17917	이순이	윤*숙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동일로76가길	75,000
247	봉안	20080818-003	63-01-18082	장운용	장*준	2023-10-30	수취인불명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로	75,000
248	봉안	20080818-006	63-01-18159	유영복	유*식	2023-11-01	폐문부재	강원 정선군 망하길	75,000
249	봉안	20080824-001	63-01-18866	정순원	이*빈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8길	75,000
250	봉안	20080827-004	63-01-19103	박광석	박*현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75,000
251	봉안	20080828-001	63-01-19130	김순남	이*우	2023-10-31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55번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52	봉안	20080829-002	63-01-19413	이가영	이*순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75,000
253	봉안	20130802-002	12-18-12943	김영선	안*훈	2023-11-01	폐문부재	울산 동구 남목11길	25,000
254	봉안	20130804-002	12-18-12988	이구연	한*례	2023-11-01	이사불명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5,000
255	봉안	20130804-007	12-19-13059	박남현	박*현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11길	25,000
256	봉안	20130807-003	12-19-13173	천삼용	천*훈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2길	25,000
257	봉안	20130807-004	12-19-13196	서순칠	서*식	2023-11-01	수취인불명	서울 강북구 삼양로63길	25,000
258	봉안	20130809-012	12-20-13383	김상호	김*빈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25,000
259	봉안	20130812-005	12-21-13491	신봉선	강*순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은평구 갈현로45가길	25,000
260	봉안	20130813-004	12-22-13542	강성룡	성*숙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마천로61가길	25,000
261	봉안	20130814-003	12-22-13564	박순금	김*하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오리로	25,000
262	봉안	20130814-004	12-22-13569	김옥분	박*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5,000
263	봉안	20130817-001	12-22-13658	한준엽	한*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92길	25,000
264	봉안	20130819-002	41-01-00478	유지선	유*수	2023-11-0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5,000
265	봉안	20130820-001	41-01-00763	이덕용	이*일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50,000
266	봉안	20130823-007	41-01-00470	김인수	김*택	2023-10-31	폐문부재	대전 동구 백룡로21번길	25,000
267	봉안	20130825-003	41-01-00559	강건우	박*숙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겸재로61가길	25,000
268	봉안	20130827-002	41-01-00660	원숙자	김*길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용현로	50,000
269	봉안	20130827-003	41-01-00661	박영채	오*석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25,000
270	봉안	20130829-007	41-01-00950	윤인섭	윤*윤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96번길	25,000
271	봉안	20180802-008	71-08-05314	최덕재	최*용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7길	50,000
272	봉안	20180802-010	71-08-05362	이태호	이*숙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73	봉안	20180807-007	72-10-07491	이경택	이*호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강서구 월정로32길	25,000
274	봉안	20180807-011	72-10-07691	진안순	정*돈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도농로중촌2길	25,000
275	봉안	20180807-013	72-10-07803	김동휘	김*선	2023-10-31	주소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120번길	25,000
276	봉안	20180807-016	72-10-08043	김유진	신*인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25,000
277	봉안	20180808-003	72-10-08137	황의권	황*경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53길	25,000
278	봉안	20180809-004	72-11-08714	양영희	정*석	2023-11-0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11길	25,000
279	봉안	20180811-008	72-12-09484	이근태	이*욱	2023-10-31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오가리길	25,000
280	봉안	20180811-011	72-12-09687	김남수	김*규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신림동5가길	25,000
281	봉안	20180811-014	72-12-09932	한명섭	한*훈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용주서원길	25,000
282	봉안	20180812-002	72-12-10160	김해식	김*성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25,000
283	봉안	20180813-001	72-13-10422	김영화	유*근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9나길	25,000
284	봉안	20180815-002	72-14-11585	박종후	박*경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	50,000
285	봉안	20180816-007	72-15-12559	석윤정	최*서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46가길	25,000
286	봉안	20180817-004	72-16-13206	한간양	한*숙	2023-11-01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25,000
287	봉안	20180818-002	72-16-13485	이용기	이*우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용산구 백범로90다길	25,000
288	봉안	20180818-011	72-16-13914	이호규	이*옥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우현로	25,000
289	봉안	20180822-003	73-01-15592	문이순	박*호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6길	25,000
290	봉안	20180823-004	73-01-15912	심재오	심*보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신장로56번길	25,000
291	봉안	20180824-003	73-01-16268	조창은	조*실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교하로	25,000
292	봉안	20180825-003	73-02-16848	민혜숙	손*균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동패로8번길	50,000
293	봉안	20180827-005	73-02-17652	이동준	이*진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94	봉안	20180828-007	73-02-17967	김형국	김*철	2023-10-31	수취인불명	경기 화성시 방축길	25,000
295	봉안	20180830-010	73-03-19045	장상기	장*곤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오산시 여계산로	25,000
296	봉안	20180830-012	73-03-19077	이상옥	이*화	2023-10-31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14길	25,000
297	봉안	20180831-014	73-03-19568	김태호	김*상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8길	50,000
298	분묘	19980803-001	18120005	유병호	유*재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137,500
299	분묘	19980805-004	18120011	백계희	윤*원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137,500
300	분묘	19720822-007	300515	김봉석	김*남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1,600
301	분묘	19850813-004	2017137	이윤성	이*진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가길	767,750
302	분묘	19931115-001	16020053	주태홍	주*식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610,500
303	분묘	19980403-003	18080011	오필부	오*도	2023-10-30	수취인불명	서울 마포구 독막로	137,500
304	분묘	19980403-005	18080013	박현남	김*석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도봉로99길	137,500
305	분묘	19980410-003	18080041	김명희	김*운	2023-10-31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7,500
306	분묘	19980414-007	18080069	신연숙	김*현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수유6동	137,500
307	분묘	19980415-004	18080077	이정선	이*기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가길	137,500
308	분묘	19980417-005	18080086	박만덕	박*철	2023-11-01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증산로	137,500
309	분묘	19980417-006	18080087	김승주	김*훈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 강동구 상암로21길	137,500
310	분묘	19980420-002	18080098	강익만	강*식	2023-11-01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137,500
311	분묘	19980420-003	18080099	조길환	조*훈	2023-10-31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7,500
312	분묘	19980420-006	18080102	한우경	한*기	2023-10-31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7번길	137,500
313	분묘	19980425-002	18090001	정동주	정*주	2023-11-01	폐문부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37,500
314	분묘	19980430-009	18090024	한영식	한*욱	2023-10-31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137,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15	분묘	19890711-010	2038061	이종복	이*안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숭문길	767,750
316	분묘	19921214-003	302587	설윤희	설*애	2023-10-31	폐문부재	부산 연제구 금련로21번길	280,370
317	분묘	19941213-008	19030284	조요과	유*재	2023-11-01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걸재천로39번길	610,500
318	분묘	19960416-001	11010018	이병은	김*남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41,600
319	분묘	19970310-006	11060697	김근옥	임*오	2023-10-31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5길	141,600
320	분묘	19980227-001	18060729	오연두	오*영	2023-11-01	폐문부재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610,500
321	봉안	19930413-003	11-14-09238	차성재	차*식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322	봉안	19930426-006	11-15-09516	이수만	이*진				100,000
323	봉안	19980419-008	11-24-11168	윤재홍	윤*구				100,000
324	봉안	20030412-037	73-03-21692	김종명	김*천				100,000
325	봉안	20030415-020	73-03-21783	김유곤	김*삼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326	봉안	20030423-010	73-04-22057	송대자	송*상				200,000
327	봉안	19980823-031	12-14-12167	김기례	강*신				100,000
328	봉안	20030819-005	66-01-31058	강의전	박*하				75,000
329	봉안	20080809-006	63-01-17636	정철주	정*석				75,000
330	분묘	19980405-004	18080019	양필선	김*수				137,500
331	분묘	19800705-005	102444	유형기	유*석				280,3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30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 ***호 (궐동)	일시: 2023-09-21 10:39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9m 초과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15만 원 납기일: 2023. 12. 31.
㈜티*이** *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제***호 중 *호(마전동)	일시: 2023-08-31 10:22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1.44t 초과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12. 31.
문*기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51번길 **-* (원종동)	일시: 2023-09-18 08:17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2.42t 초과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23. 12. 31.
김*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53번길 **, *동 ***호 (조원동)	일시: 2023-09-23 09:41 장소: 마곡 MICE 복합지구 CP1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의무 소홀	처분일: 2023. 10. 31.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12.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벽*건* (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호(도화동)	일시: 2023-07-31 09:30 장소: 목동서로 387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3. 9. 11.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23. 10. 31.
이*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 ***호 (원흥동)	일시: 2023-08-04 19:34 장소: 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3. 9. 11.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3. 10. 31.

4. 공고기간: 2023. 11. 30.~2023. 12. 13.

5. 납부기한: 2023. 12.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304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 (04-005484)	기술사사무소 동보토목이엔씨 (113-23-03923)	조성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6, 913호(가산동, 에이스태세라타워)	2023.11.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9)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31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02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알리고자, 업체 소재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
2. 처분사전통지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한미도시정비 (대표 김한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14-0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4길9, 5층 매트릭스빌딩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업무정지 2회)	2023.12.20.(수) 10:00 주거정비과 13층 청문실	변호사 김권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314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11.30. ~ 2023.12.14.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소노이엔씨 종합건설 (대표 오주현)	건축 공사업 01-3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2, 402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명: 오봉초 외 1교(당현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하도급사: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하도급액: 44,528,000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23.12.21.(목) 14:00 건설혁신과 청문실	변호사 한민구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319호

2023년~20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20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시행시기	2023.12.1.~ 2024.3.31. (4개월)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대상차량 /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지역 ※ 경기, 인천 공동시행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차량 등 -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소상공인은 과태료 면제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문의(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훈 령]

◈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1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전문직위 지정 업무 및 직급(제12조 관련)

전문직위	지정 직급
공익제보업무	교육행정 직렬 주사
빅데이터분석업무	교육행정 또는 전산 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국제협력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노사협력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공익법인업무	교육행정 직렬 주사
교육환경평가업무	교육행정 또는 보건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학교 감염병 관리업무	보건 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학교설립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학생배정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교육공간기획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재산관리업무	교육행정 직렬 사무관부터 주사보까지
사이버침해대응업무	전산 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교육지원청 학생배치업무	교육행정 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교육지원청 학원관리업무	교육행정 직렬 주사 또는 주사보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를 운영하면서 행정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문직위를 신설(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추가) 전문직위 및 이유

- 공익법인업무
  · 공익법인 설립·해산, 임원 승인, 정관 변경, 기본 재산 처분허가 등 업무 수행 시 법률·판례 검토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직위 지정 필요
- 교육공간기획업무
  · 재개발·재건축, 인구감소와 학생 이동 등으로 발생된 폐교 또는 학교 이전적지의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 지정 필요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3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 위원회의 통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목적, 정의, 지정 신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임기(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위원 결격사유, 위촉 해지(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회의, 수당 등, 간사(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서면·조사 요구, 운영성과 평가, 운영세칙(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3999-605, FAX 02-6973-9944
○ 이메일: y4888@sen.go.kr

4. 입법(안) - 붙임자료 참고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위임된”을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을 “운영성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3조, 제4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 중 “특목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장”을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현장”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특목고의 지정 및 운영”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계열별 지정 운영부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구 분	지정·지정 취소	운영·평가
과학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디지털· 혁신미래교육과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
국제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
예술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중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계열	지정·지정취소	운영·평가
국제중학교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체육중학교	학교지원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제3조 관련)

<table>
<tr><td colspan="11">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상학교</td><td>학교명칭</td><td colspan="8">중학교 (한자)</td></tr>
<tr><td>학교위치</td><td colspan="6">(우) (주 소)</td><td>남녀공학 여부</td><td colspan="2">남/여/공학</td></tr>
<tr><td rowspan="7">신청인</td><td rowspan="2">공.사립</td><td>교 장</td><td>성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d>성별</td><td colspan="2"></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8">(주간) (핸드폰)</td></tr>
<tr><td rowspan="5">사립</td><td>법 인 명</td><td colspan="8">학교법인 학원 (한자)</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8">(우) (주 소)</td></tr>
<tr><td>대 표 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 colspan="2"></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8">(주간) (야간)</td></tr>
<tr><td colspan="2" rowspan="7">신청내용</td><td rowspan="6">학교 규모 계획 (향후 5개년)</td><td>학년도별</td><td>학급수</td><td colspan="3">학생 정원</td><td colspan="2" rowspan="2">비고</td></tr>
<tr><td></td><td></td><td>1학년</td><td>2학년</td><td>3학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개 교 일</td><td colspan="8">년 월 일 (※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예정일 작성)</td></tr>
<tr><td colspan="1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td></tr>
<tr><td colspan="2">붙임 자료</td><td colspan="9">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기타</td></tr>
</table>

(붙임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1.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취지

◦ 지정 신청의 취지, 목적 및 발전계획 등을 명시

◦ 학교 구성원의 의지 기술
※ 증빙자료 : 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회의 회의록 등

◦ 기타

2. 재정운영 현황 및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2-1. 학교 회계 현황(공립)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항목	예산액	정책사업	예산액
국고보조금		인적자원 운용	
비법정이전수입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본적 교육활동	
학교회계간이전수입		선택적 교육활동	
민간이전수입		교육활동 지원	
등록금		학교 일반운영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시설 확충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학교 재무활동	
사용료및수수료			
자산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계		계	

※ 증빙서류 :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

2-2. 학교회계 세입현황 및 계획(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학교비 회계 세입 총액					등록금대 법인전입금 비율(A:B)
	등록금(A)	법인전입금 (B)	재정결함 보조금	기타	계	
평균						

2-3. 학교회계 현황(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0000학년도>

세입예산				세 출 예산		
관	항	목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중앙정부이전수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인적자원 운용	교원보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직원보수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직원기타보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사립학교보조금수입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기타이전수입	사학법인이전수입	법인법정부담금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법인이전수입			기숙사관리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다른학교회계전입금			보건관리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교육격차해소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			학생장학지원	
학부모부담수입	등록금	입학금			기타학생복리서비스	
		수업료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창의적체험활동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활동비			평생교육	
		현장체험학습비			직업교육	
		청소년단체활동비			국제교육	
		졸업앨범대금			독서활동	
		교과서대금			교기육성	
		기숙사비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지원금수입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생활지도운영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연구학교운영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학습지원실운영	
		입학금지원금수입			교육여건개선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일반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시설장비유지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일반행정관리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학교운영협력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학부모지원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기숙사지원금수입		학교재무활동	반환금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및수수료			예비비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계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지난년도수입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이월사업비				
계						

2-4. 학생 1인당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수업료(A)	입학금(B)	소계(C=A+B)	학교운영지원비(D)	합계(E=C+D)

2-5.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책정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특기적성 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비	기숙사비	기타	합계

3.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계획

3-1. 기본 시설

학교명	교지 면적	체육장 면적	총면적
	( )㎡	( ) ㎡	( ) ㎡

3-2. 신청대상학교의 규모 및 기본여건(최근 3년/지정이후 5년)

해당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남학생	여학생	계		남학생	여학생	계		남학생	여학생	계		남	여	

3-3. 교사 시설

구분		수
관리실 ( )실	교장실	
	교무지원실	
	행정지원실	
	학운위회의실	
	교사연구실	
	교사휴게실	
	숙직실	
교과교실	보통교실	
	수준별교실	
	홈베이스	
	과학탐구실	
	수학실	

구분		수
교과교실 ( )실	기술·가사실	
	음악실	
	미술실	
특별교실 ( )실	시청각실	
	사이버교실	
	도서정보실	
	어학실	
	토론학습실	
	강당(자율관)	
지원실	진로상담실	
	정보처리실	
	문서인쇄실	

구분		수
지원실 ( )실	방송실	
	교재실	
	보건실	
	서고	
학생복지 및 부속실 ( )실	식당	
	샤워탈의실	
	학생탈의실	
	학생화장실	
	교직원화장실	
	장애우화장실	
	기계실	
	기숙사동	

※ 기타 특별교실 현황은 학교별 작성시 수정 가능

4.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증가,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사학의 교육역량과 교육개선 내용 기술

※ 언론보도, 교육부·교육청 수상실적 등 “표”로 작성하여 기재
(관련자료 별도 첨부)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등 기타 학교 운영 성과

(붙임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1.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지정이전/이후 5년간)

2. 교육과정 특성화 · 다양화 계획

3. 창의·인성 교육 계획

4.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5.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붙임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1. 입학전형 실시 계획 2.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의 모집 및 입학 전형 방법 3.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계획

(붙임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1. 교직원 현황

1-1. 직급별 교원현황(※ 신설학교의 경우, 신설계획(확보계획)에 따라 작성)

(0000.00.00. 현재)

구분		교 원				사무직원			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정규	남				명				
	여								
기간제	남								
	여								
강 사	남								
	여								
총계									
※ 별첨: 교사는 교과별/학년별 정규 · 기간제 · 강사 현황 제출									

1-2. 교과별 교원현황

(0000.00.00. 현재)

		교장	교감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가정	기술	체육	보건	영양	기타	계
											영어	제2 외국어								
정원																				
현원	남																			
	여																			
	계																			

1-3. 교육경력별 교원 현황

(0000.00.00. 현재)

구분	6년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계	비고
남									평균 경력 ( )년, 석사()명, 박사( )명
여									
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운영성과----------.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특성화

현 행	개 정 안
	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교육감----------.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제7조 (생 략)	제8조·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 행	개 정 안
	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7일 전----------.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0조 (생 략)	제12조·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목고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조사 요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현장---.
제12조(운영성과 평가) 특목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성과 평가)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신 설>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목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16.11.14.>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구 분 / 지정·지정 취소 / 운영·평가** 과학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중등교육과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중등교육과 국제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중등교육과 예술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중등교육과 체육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체육건강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진로직업교육과 / 진로직업교육과 <신 설>	[별표 1] 계열별 지정 운영부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 · 운영 부서** 구 분 / 지정 · 지정 취소 / 운영 · 평가 과학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국제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예술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중등교육과 체육계열 고등학교 / 학교지원과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진로직업교육과 /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중학교 계열별 지정 · 운영 부서** 계열 / 지정 · 지정취소 / 운영 · 평가 국제중학교 / 학교지원과 / 중등교육과 체육중학교 / 학교지원과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제3조 관련)**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대상학교 / 학교명칭 / 중학교 (한자) / 남녀공학 여부 / 남/여/공학 학교위치 (우) (주 소) 신청인 공사립 / 교 장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연 락 처 (주간) (핸드폰) 신청인 사립 / 법 인 명 / 학교법인 이사회 (한자) 소 재 지 (우) (주 소) 대 표 자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연 락 처 (주간) (야간) 신청내용 / 학교 규모 계획(향후 5개년) / 학년도별 / 학급수 / 학생 정원 1학년 2학년 3학년 / 비고 개 교 일 년 월 일 (※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예정일 작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자료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기타

현 행	개 정 안

(붙임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1.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취지

- 지정 신청의 취지, 목적 및 발전계획 등을 명시
- 학교 구성원의 의지 기술
  ※ 증빙자료 : 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회의 회의록 등
- 기타

2. 재정운영 현황 및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2-1. 학교 회계 현황(공립)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항목	예산액	정책사업	예산액
국고보조금		인적자원 운용	
비법정이전수입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본적 교육활동	
학교회계간이전수입		선택적 교육활동	
인간이전수입		교육활동 지원	
등록금		학교 일반운영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시설 확충	
학부모부담전환금수입		학교 복무활동	
사용료및수수료			
재산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충금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계		계	

※ 증빙서류 :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

2-2. 학교회계 세입현황 및 계획(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회년도	학교비 회계 세입 총액					등록금대 법인전입금 비율(A:B)
	등록금(A)	법인전입금 (B)	세정결함 보조금	기타	계	
평균						

2-3. 학교회계 현황(사립, 지정 이전 5년간) (단위 : 천원)

<0000회년도>

세입예산				세출 예산		
항	관	목	예산액	정책사업	프로그램	예산액
주식발행수입액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인적자원 운용	교원보수	
현물출자수입액	비법정이전수입	시도교육청전입금			사무직원보수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공무직원 보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수업료및입학금전입금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적립	
기타이전수입	사립학교지원수입	법인회계지원금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지원	
		법인보조수입			기숙사운영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대학입시지원금			도서지원	
		기타학교회계이전수입			교육복지지원소	
	기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학생상담지원	
자산수입(운영)	등록금	입학금			기타수익자부담지원소	
		수업료		기본적교육활동	교육과정	
		학교보험료수입			정규수업운영부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교육	
		방과후학교운영비			예술교육	
		보건위생관리비			독서교육	
		졸업앨범비			특성화	
		교복구입비			교육수련	
		기숙사비			기타수익자부담지원부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교무업무지원	
기타수입	이월금및전입금	급식전입금		교육활동지원	정보화교육	
		방과후학교운영전입금			연구학교교육	
		기타회계간이전입금			학생진로교육부	
		법인회계전입금			교육시설관리	
		이월금(운영)		학교시설 확충	시설/환경개선	
		학교보험료전입금			정보화기기	
		방과후학교운영전입금		학교복무활동	학교운영지원	
		보건위생관리비전입금			학교보건업무	
		졸업앨범비전입금			학생교육비	
		교복구입비전입금		학교지원기관	시설관리공단	
		기숙사비전입금		학교재무회계	예비비	
예비비적립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및수수료		계		
	기타수입	기타수입				
		이월금(운영)				
		기타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				
재산수입(운영)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보조금	보조금(시도)				
		기타금				
계						

현 행	개 정 안

2-4. 학생 1인당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수업료(A)	입학금(B)	소계(C=A+B)	학교운영지원비(D)	합계(E=C+D)

2-5.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책정계획(지정이전년도/지정 이후 5년간) (단위 : 천원)

학년도	특기적성 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비	기숙사비	기타	합계

3.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계획

3-1. 기본 시설

학교명	교지 면적	체육장 면적	총면적
	( )㎡	( ) ㎡	( ) ㎡

3-2. 신청대상학교의 규모 및 기본여건(최근 3년/지정이후 5년)

해당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남학생	여학생	계		남학생	여학생	계		남학생	여학생	계		남	여	

3-3. 교사 시설

구분		수
관리실 ( )실	교장실	
	교무지원실	
	행정지원실	
	학운위회의실	
	교사연구실	
	교사휴게실	
	숙직실	
교과교실	보통교실	
	수준별교실	
	홈베이스	
	과학탐구실	
	수학실	

구분		수
교과교실 ( )실	기술/가사실	
	음악실	
	미술실	
특별교실 ( )실	시청각실	
	상의배교실	
	도서정보실	
	어학실	
	토론학습실	
	강당(자율관)	
지원실	진로상담실	
	정보처리실	
	문서인쇄실	

구분		수
지원실 ( )실	방송실	
	교재실	
	보건실	
	서고	
학생복지 및 부속실 ( )실	식당	
	샤워탈의실	
	학생탈의실	
	학생휴게실	
	교직원휴게실	
	장애우화장실	
	기계실	
	기숙사동	

※ 기타 특별교실 현황은 학교별 작성시 수정 가능

1.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증기,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사학의 교육역량과 교육개선 내용 기술
※ 언론보도, 교육부교육청 수상실적 등 "표"로 작성하여 기재
(관련자료 별도 첨부)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등 기타 학교 운영 성과

현 행	개 정 안

(붙임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1.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지정이전/이후 5년간)

2. 교육과정 특성화 · 다양화 계획

3. 창의·인성 교육 계획

4. 전학 및 진로지도 계획

5.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붙임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1. 입학전형 실시 계획

2.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의 모집 및 입학 전형 방법

3.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계획

(붙임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1. 교직원 현황

1-1. 직급별 교원현황(※ 신설학교의 경우, 신설계획(확보계획)에 따라 작성)

(0000.00.00. 현재)

구분		교원				사무직원			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정규	남				명				
	여								
기간제	남								
	여								
강사	남								
	여								
총계									

※ 붙임: 교사는 교과별/학년별 정규 · 기간제 정사 현황 제출

1-2. 교과별 교원현황

(0000.00.00. 현재)

	교장	교감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가정	기술	체육	보건	영양	기타	계
										영어	제2 외국어								
정원																			
현원 남																			
현원 여																			
현원 계																			

1-3. 교육경력별 교원 현황

(0000.00.00. 현재)

구분	6년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계	비고
남									평균 경력 ( )년, 석사( )명, 박사( )명
여									
계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3년 월 일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23-1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1-46호(2021.3.26.)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23-155호(2023.2.9.), 광진구고시 제2023-89호(2023.8.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변경없음) : 광진구 광장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규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6(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3. 사업위치(변경없음) :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원

4. 사업계획 승인내역(변경)

1) 사업구역의 면적

토지구분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구역면적	광장동 188-2번지 일원	대, 전	12,206.0	
대지면적			12,206.0	
소 계		-	12,206.0	

2)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변경없음) : 12,206.0㎡

나. 연 면 적(변경) : 46,771.11㎡

다. 건 폐 율(변경) : 20.63%

라. 용 적 률(변경) : 193.33%

마. 높 이(변경없음) : 48.60m

바. 용 도(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1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시행기간(변경) : 2021. 11월 ~ 2025. 8월

5.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 기타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등

6. 도시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한강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원	12,206.0	-	12,20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한강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결정도 변경	구역 내 지적분할 반영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06.0	-	12,206.0	100.0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도지역 · 지구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	구역 내 지적분할 반영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획지 번호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계획	①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원	12,206.0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 분	획지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계획	①	가구 및 획지 형태 변경	구역 내 지적분할 반영

2) 건축물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전용시설 제외)	허용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190% 이하	
	허용	•200% 이하	
	상한	•250% 이하 ※ 상한=허용×(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 · 건축물)	
높이		•15층 이하	
배치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도시스카이라인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	
색채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건축한계선		•사업대상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6m 지정 - 한강변, 차량주·부출입구변 : 3m - 그 외 지역 : 6m	결정도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통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사업대상지 북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내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B=3m) 계획	결정도 참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 출입구	• 사업대상지 남측의 구천면로 변에 차량주출입구 1개소, 아차산로78길변에 차량부출입구 1개소로, 총 2개소 계획	

7.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전화:02-450-9703)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및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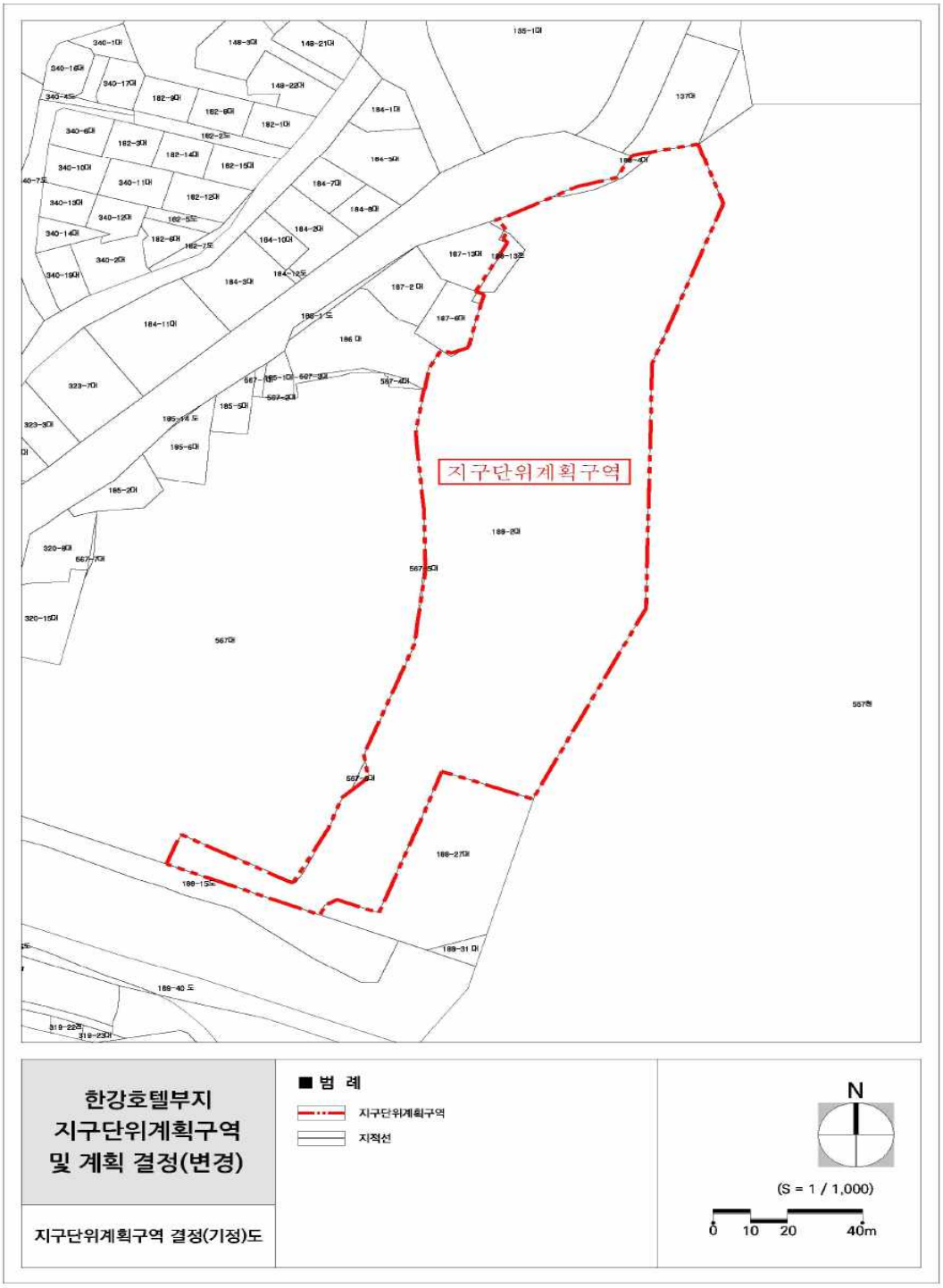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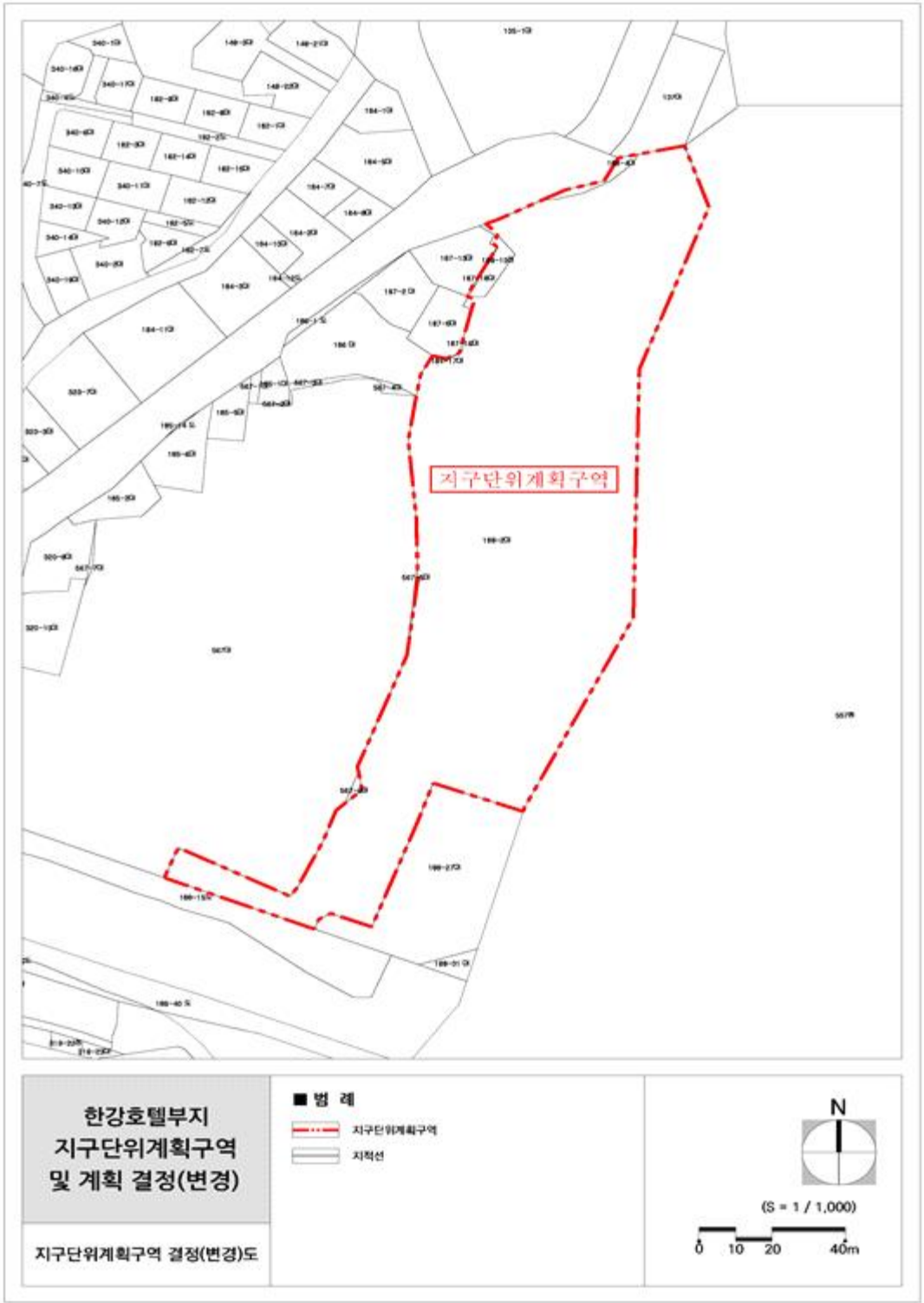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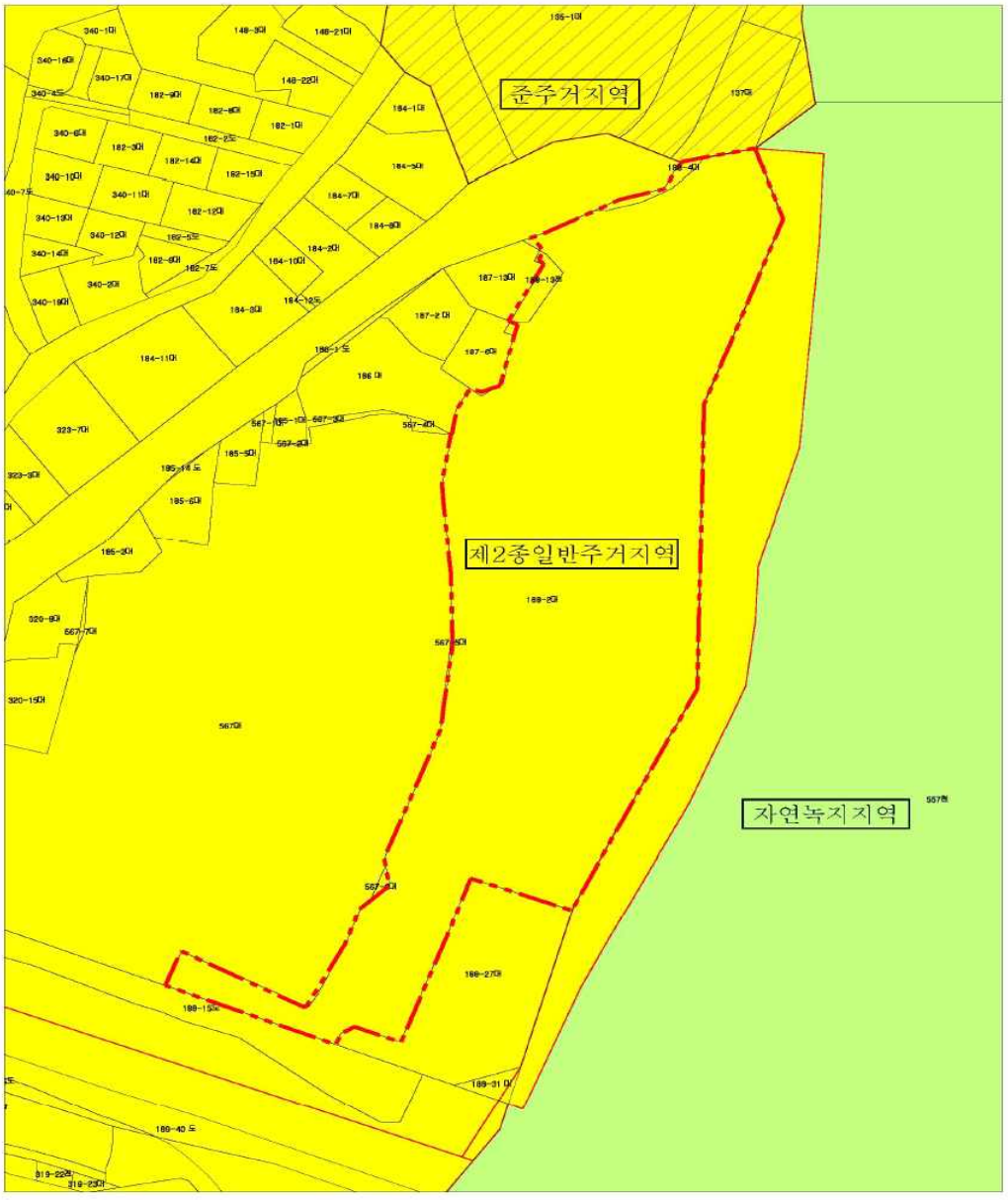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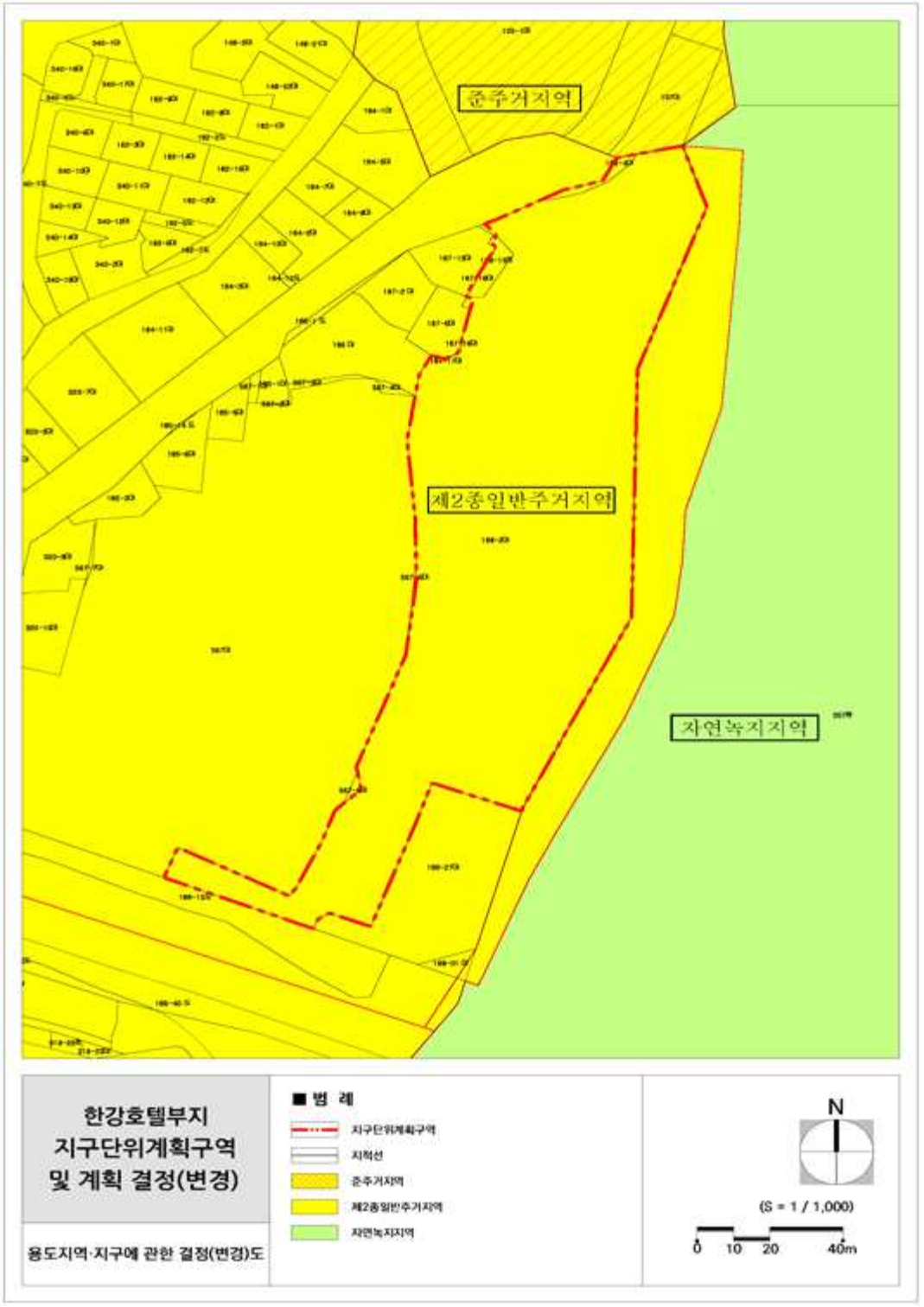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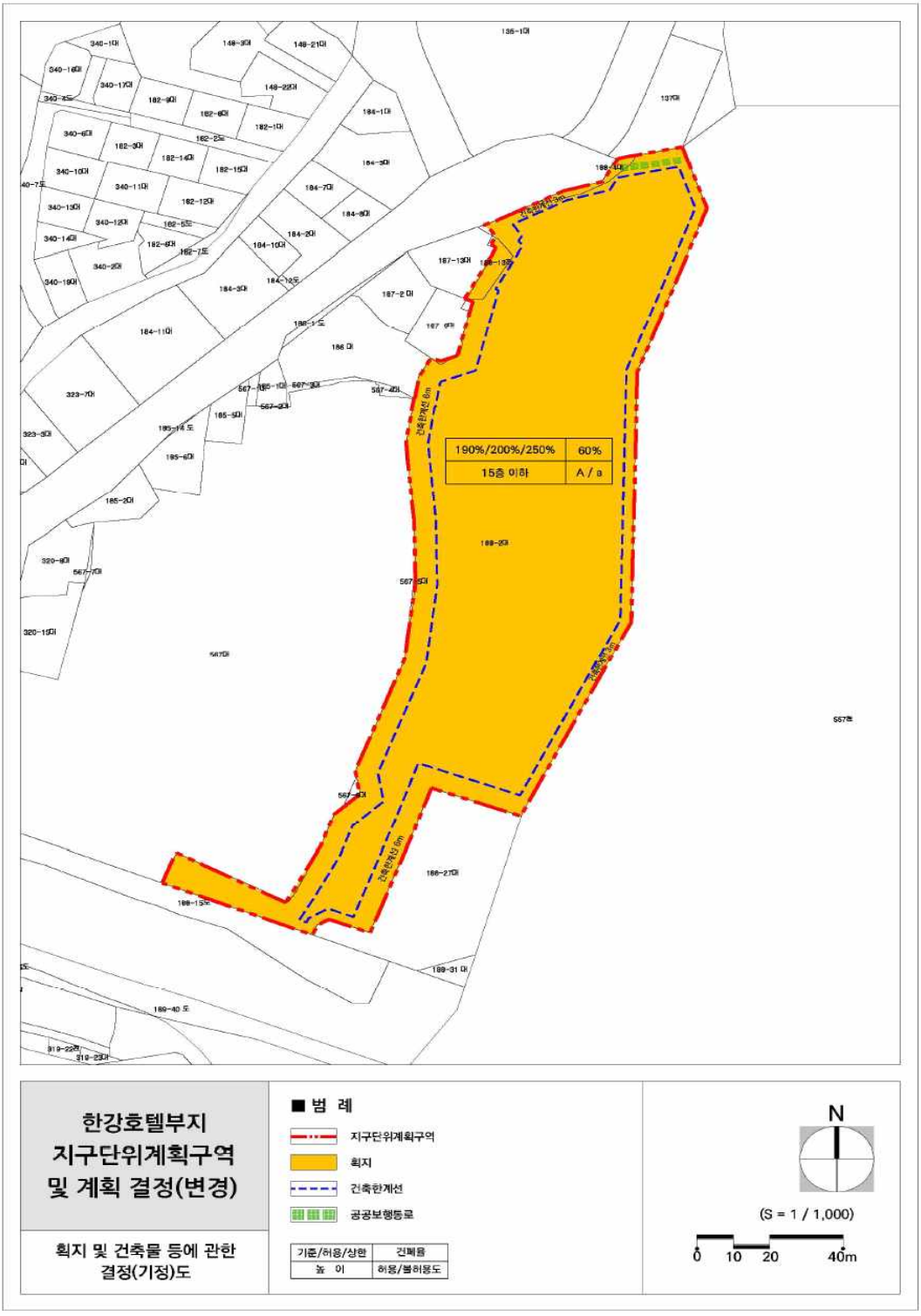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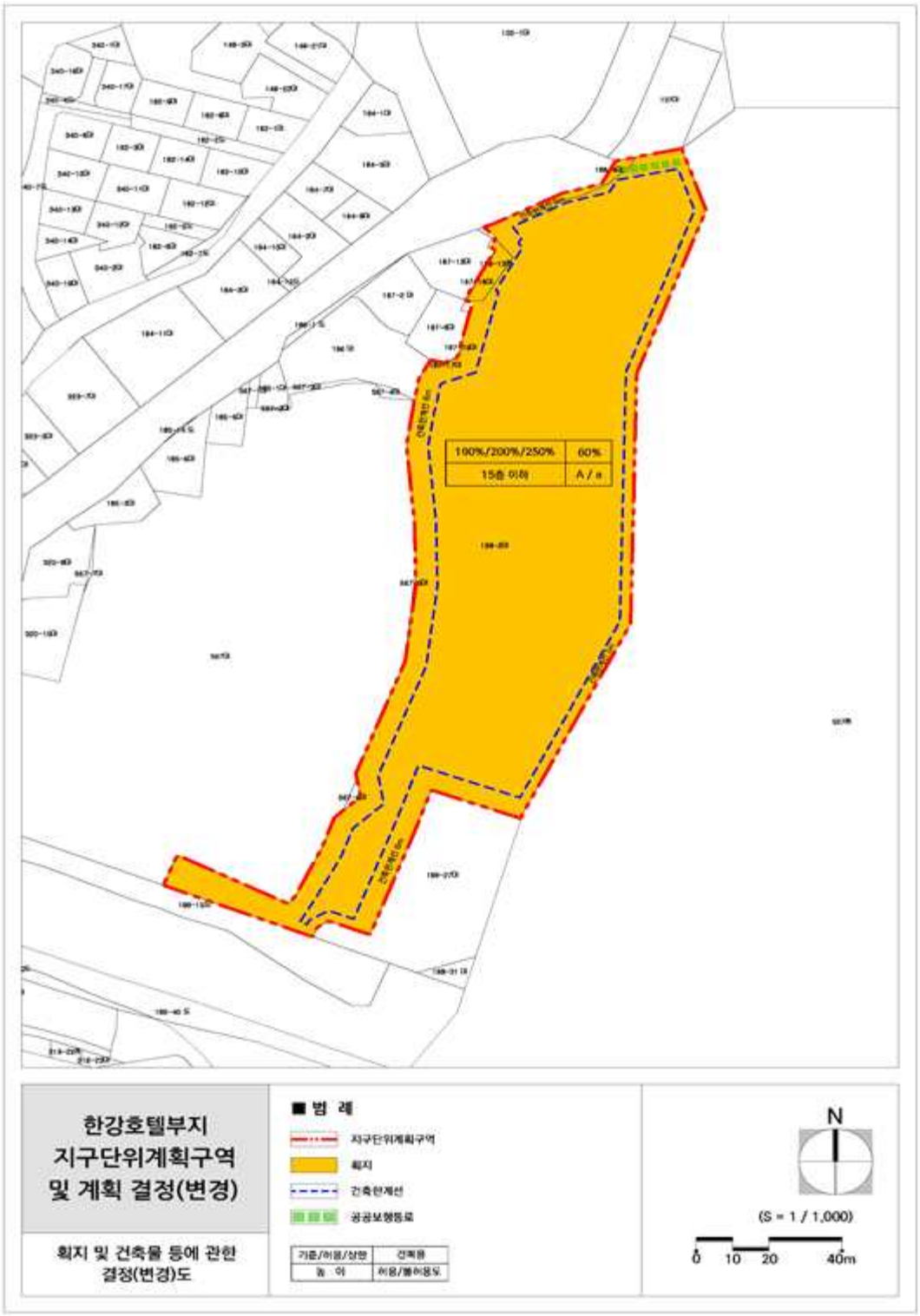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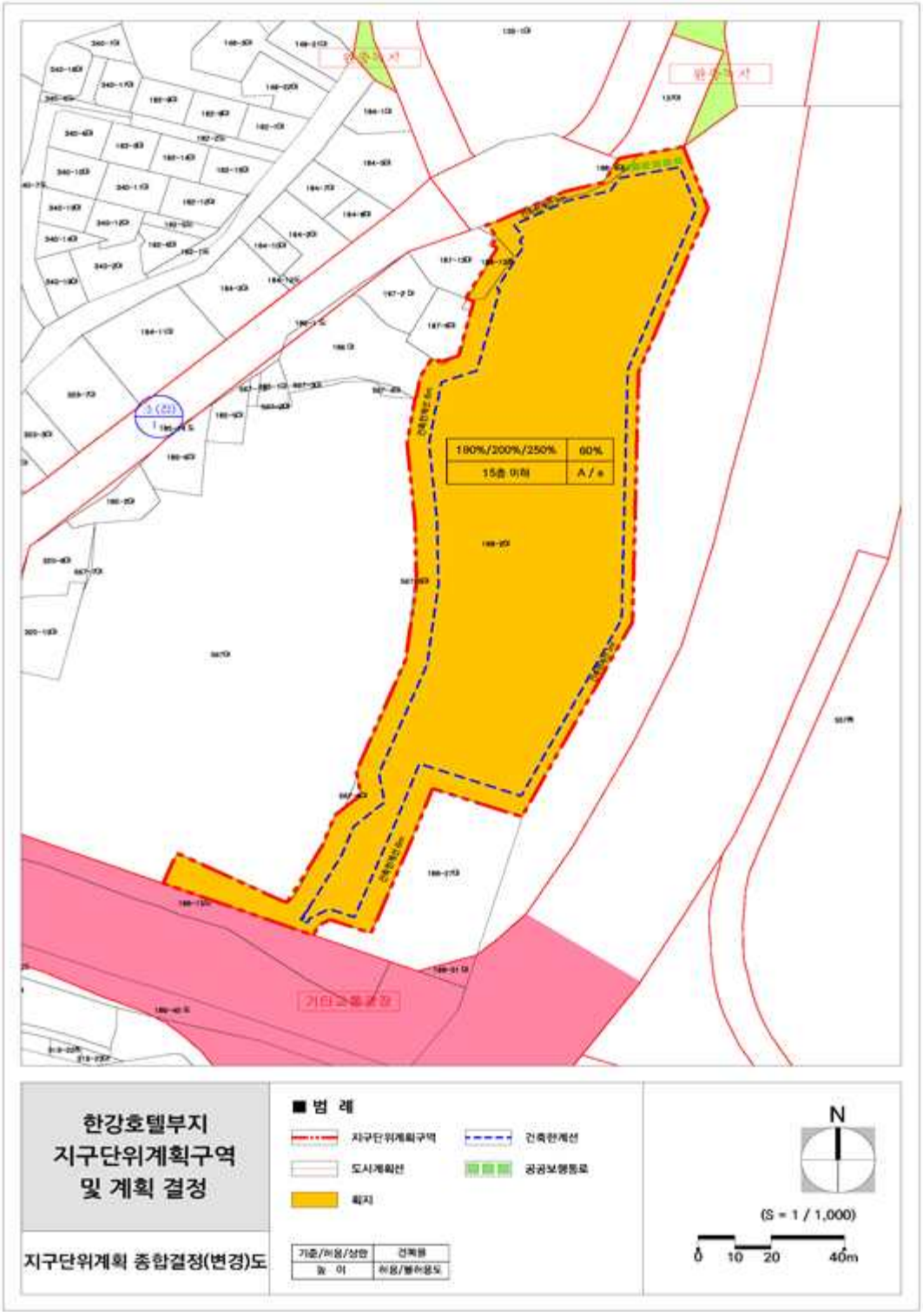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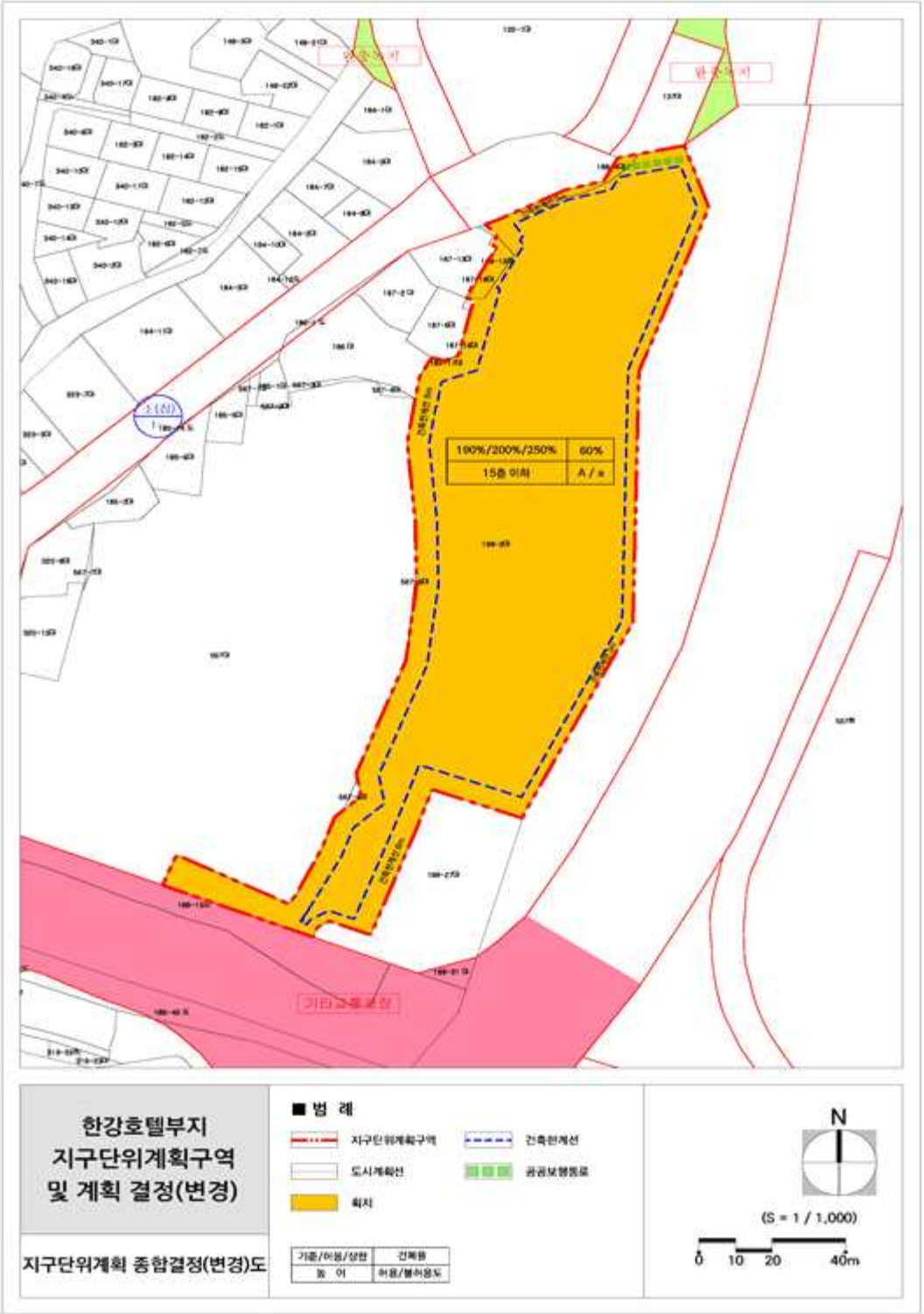

◈ 동대문구고시 제2023-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98호(2023.08.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1287호(2023.10.26.)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된 「천호대로75길(답십리동 487-9 ~ 276-13) 도로확장」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5길(답십리동 487-9 ~ 276-13)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천호대로75길 도로확장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8m, 연장 75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2127-4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천호대로75길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답십리동	276-14	도로	85	47	윤선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107동 2802호(비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2				
					47	윤보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3, 110동 2202호 (비산동, 그린빌주공아파트)	1/2				
2	답십리동	276-19	대	50	39	박삼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56,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01-1503	1/1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천호대로75길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규격및 구조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답십리동	276-19	건물 (1층)	세멘조	51.24	박삼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56,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01-1503				

◈ 마포구고시 제2023-2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59호(2020.10.22.)로 변경 결정된 마포구 연남동 369-1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6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유치원

3. 사업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26,466.40㎡
   나. 규모
      1) 학교 개요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 정	26,466.40	6,390.74	24,806.41	82.13	24.15
변 경	26,466.40	6,729.63	27,587.94	89.62	25.43
증 감	-	증) 338.89	증) 2,781.53	증) 7.49	증) 1.28

      2) 동별 건물 개요

구 분	건축면적(㎡)	연 면 적(㎡)	지상층면적(㎡)	높 이(층)	비 고
체육관	627.00	627.00	627.00	지하0/지상1	전체해체
유치원	965.89	3,408.53	2,611.16	지하1/지상3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학교법인 홍익학원
   나.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2023. 11. 30.까지
   나.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연남동 369-1	대	26,466.40	26,466.40	학교법인 홍익학원	상수동 72-1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02-3153-9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3-201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Ⅰ. 결정(변경)취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도로(소로 1-34, 1-35)의 실효 및 획지 동의여건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및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고 노후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기정	광로	3	2	35~54 (45)	주간선	4,750 (1,602)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 64호 (1978.3.29)	경인로
	변경	광로	3	2	35~54 (45)	주간선	4,750 (1,602)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 64호 (1978.3.29)	일부구간 폭원변경 ※ 결정도 참조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신설	소로	1	39	8~11	국지	83 (83)	구로동 600-57	구로동 589-12	일반 도로	-	-

※ 폭원 및 연장의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변경조서에서 표기한 도로 외 기타 도로 변경사항 없음

■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광로3-2	광로3-2	•도로폭원 변경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대상지 북측 경인로변 차도, 식수대 및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한 광로 3-2 일부 구간 확폭(5~6m)
신설	-	소로1-39	•도로 신설 - 폭원 8~11m - 연장 83m	•기결정되어 있던 대상지 주변 소로 1-34 및 1-35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실효(서울시고시 제2020-268호) 및 광로 3-2가 변경고시(구로구고시 제2023-112호)됨에 따라 대상지 남측 도로 신설을 통해 경인로를 통한 진출입을 도모하기 위해 폭원 8~11m로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최소 · 최대개발규모(미적용)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가구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B6, B7, B8, B9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B6, B7, B8, B9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간선가로를 기준으로 5개 지역으로 구분 •C5가구 도로 신설에 따른 가구선 변경 ※ 결정도 참조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C5	1		589-12대, 589-13대, 596-2도, 600-12대 600-14대, 600-57대, 600-59대, 600-60대 600-61대, 600-73대, 602-5대, 602-6주	4,518.6	획지선지정	-
변경		1	가	589-12대, 589-13대, 596-2도, 600-60대, 600-73대, 602-5대, 602-6주	3,435.5	획지선지정	-
			나	600-14대, 600-59대, 600-61대	1,066.0	획지선지정	-

※ 변경조서에서 표기한 획지 외 기타 획지 변경사항 없음

3)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변경

1)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폭 20m 이상)	경인로변	3m	3~11m	광로 3-2 변경(구로구고시 제2023-112호) 반영
		십자로변	3m	3m	
	이면도로변		1~2m	1~2m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		2~3m	2~3m	보차혼용통로로 활용
	대형필지		6~8m	6~8m	가로공원, 수림대로 활용
	개발완료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		1~3m	1~3m	-

※ 개발완료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일 가구내 상이한 건축한계선 폭원 일부 조정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변경

1) 차량 출입불허구간 : 변경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적용대상
기정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 결정도 참조
	C5-1 획지		

■ 차량 출입불허구간 변경 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C5-1 획지의 획지계획에 따른 차량 출입불허구간 일부 위치 조정
	C5-1 획지		

2) 공동 주차출입구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 변경없음

4.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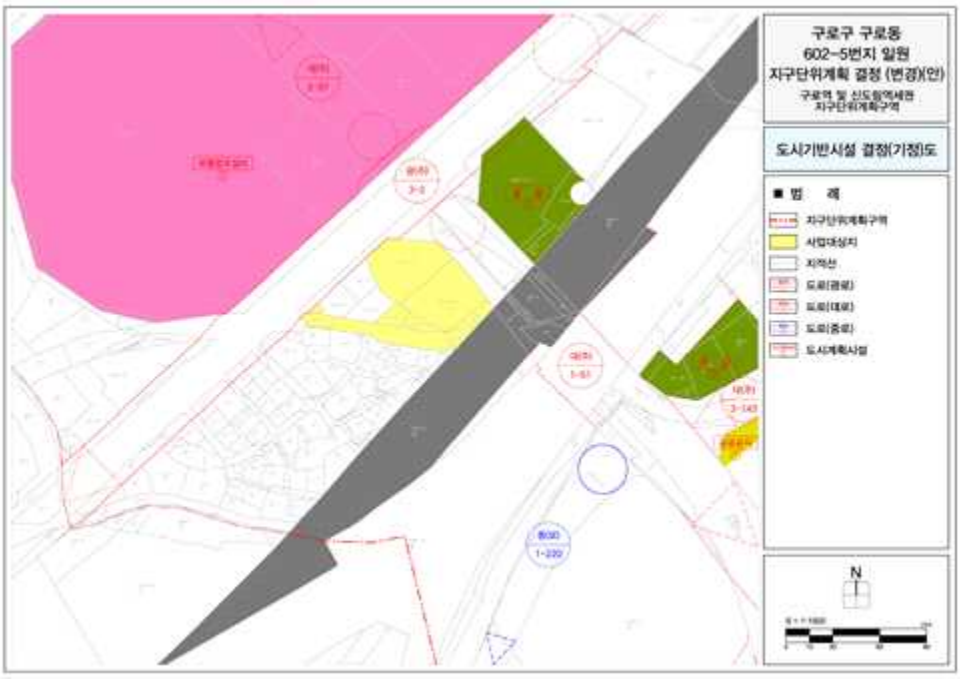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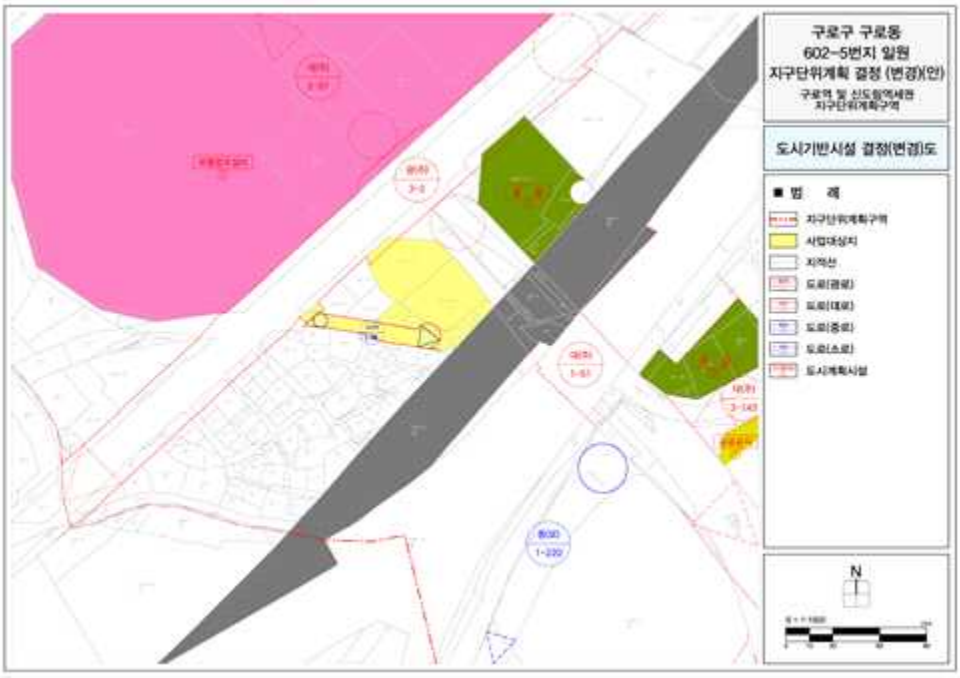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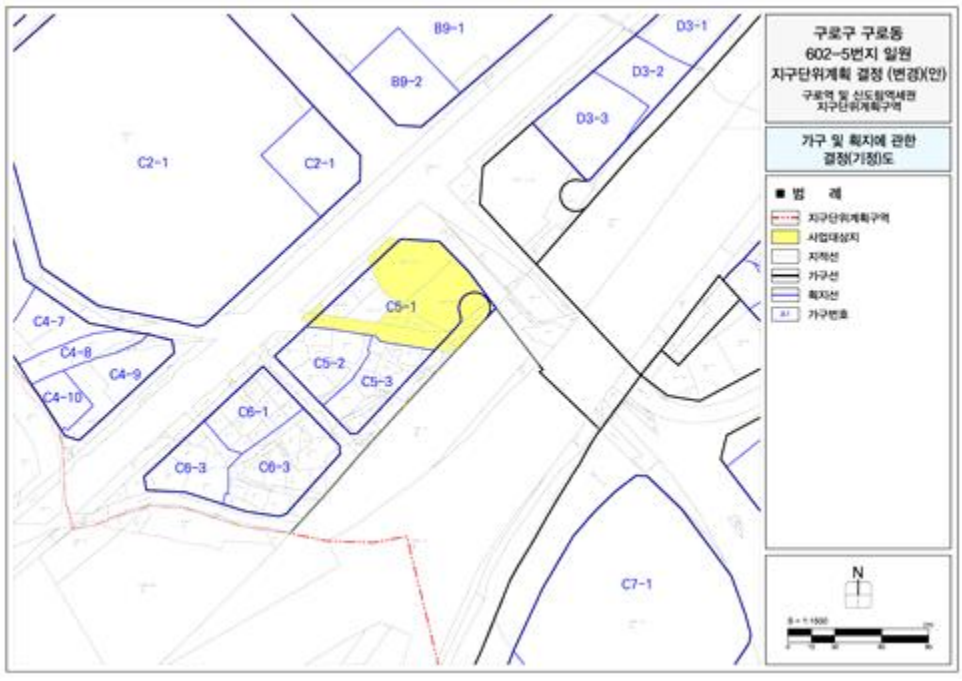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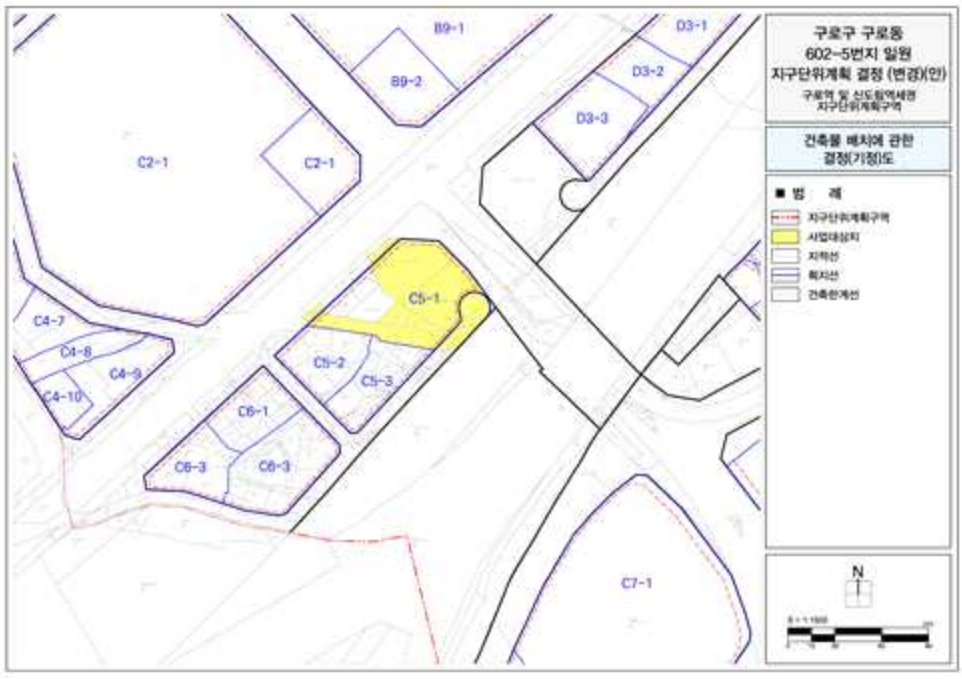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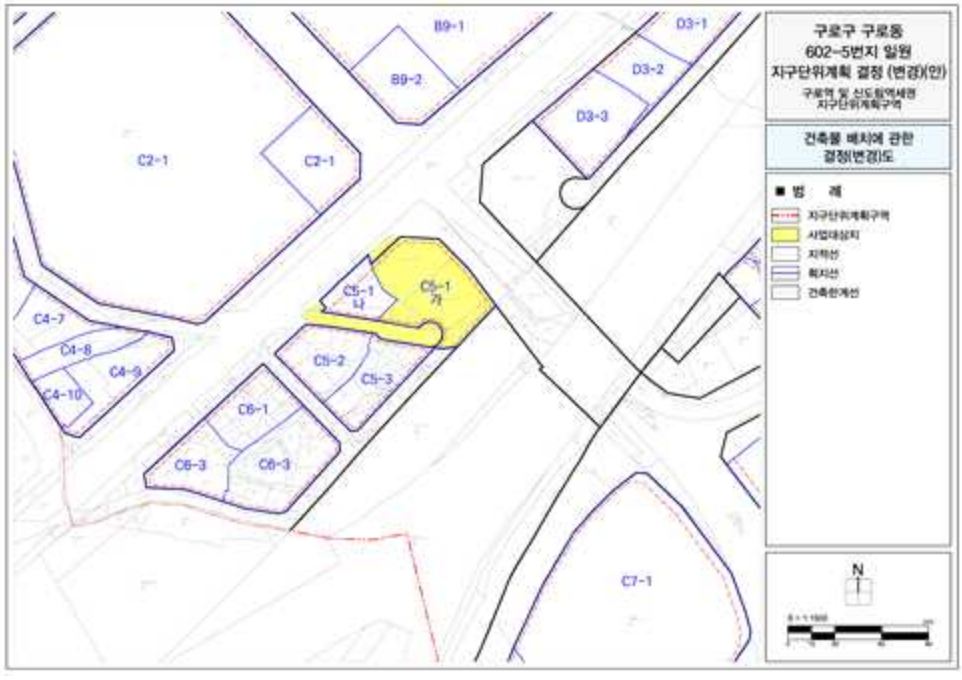

[기타사항(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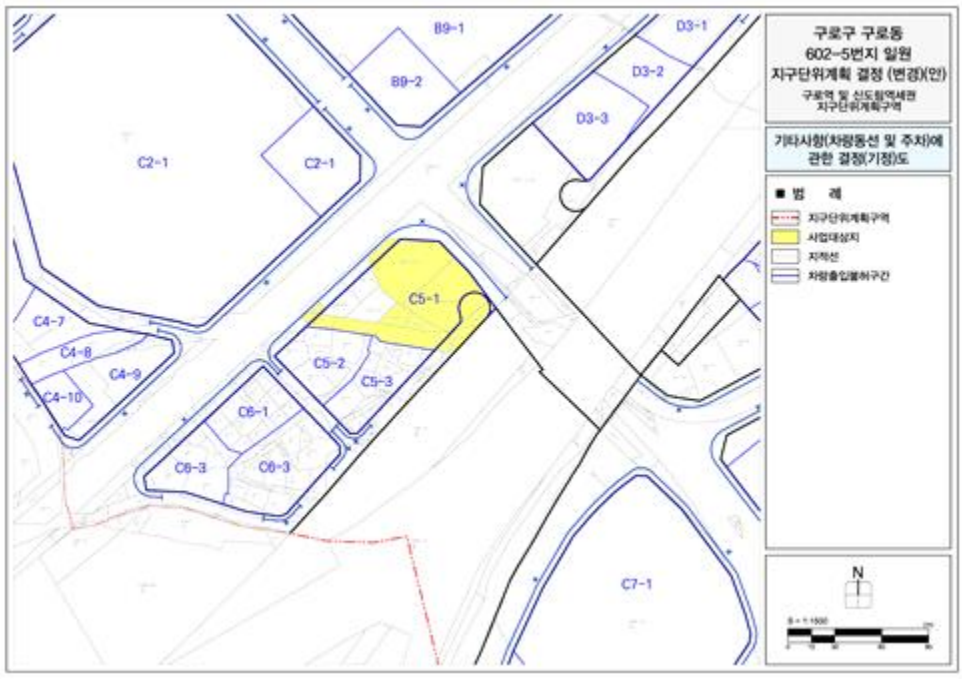

[기타사항(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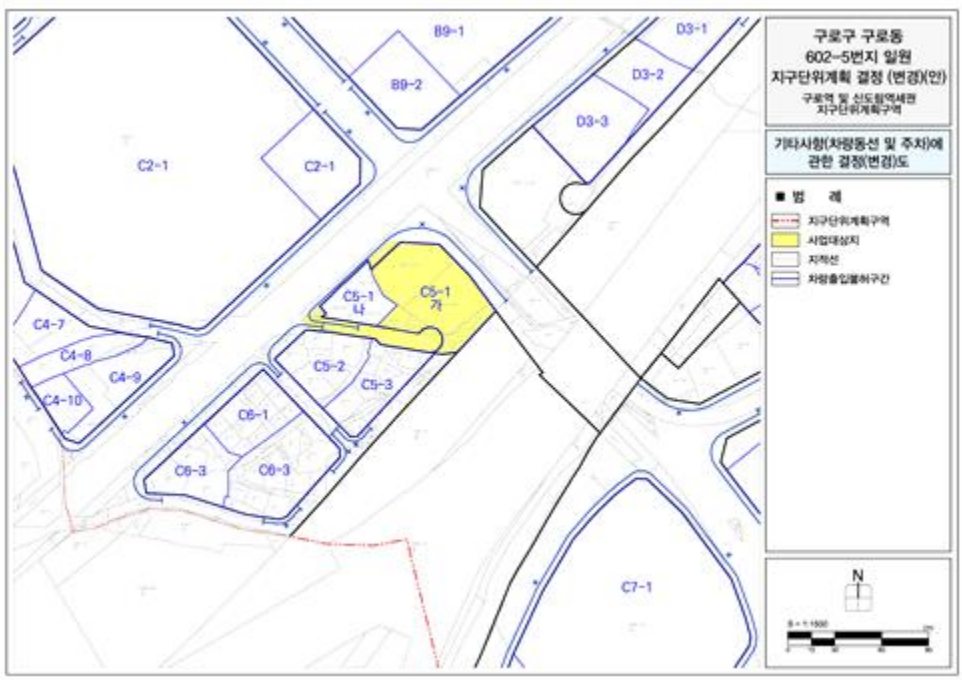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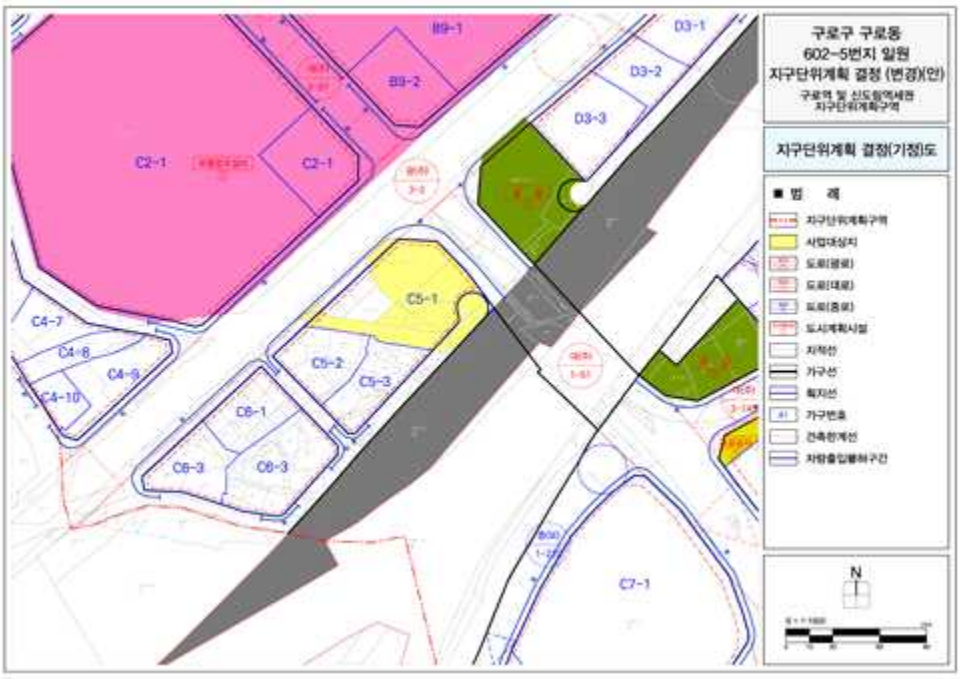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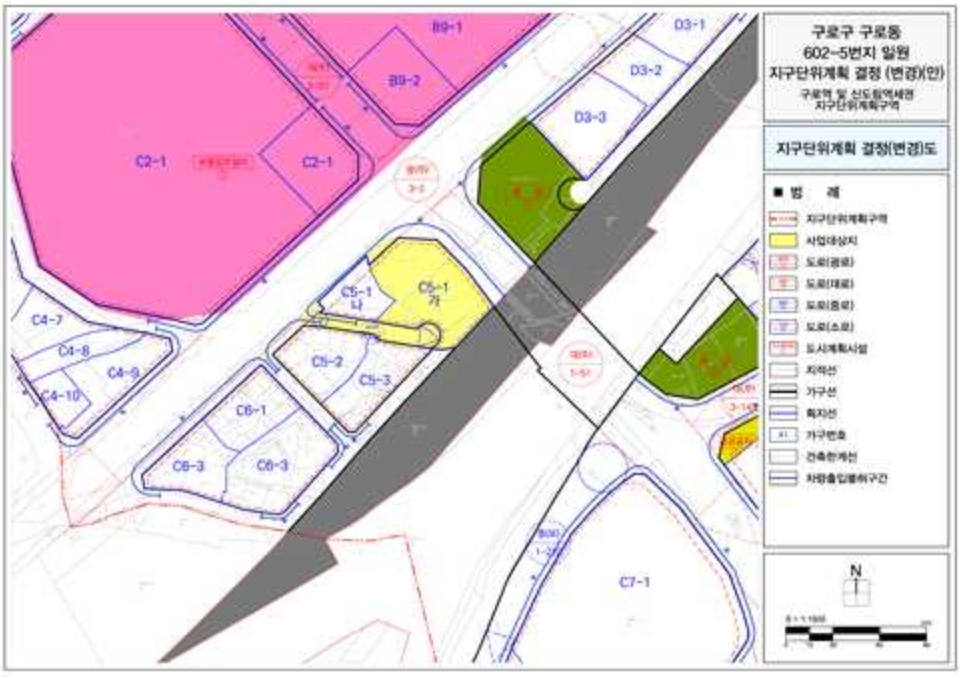

◈ 금천구고시 제2023-12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금천구고시 제2023-104호(2023.10.26.)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금천구공고 제2023-1729호(2023.11.2.)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 비치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독산동 890-1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 명 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3. 사업면적 : 477.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4.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붙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독산동 890-1	대지	112.6	112.6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동 ***호(호계동)	위*윤	1/4				
2					강동구 양재대로95길 **-*(성내동)	남*수	1/4				
3					강남구 자곡로 175, ***동****호(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박*연	1/4				
4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31-11, ***호	정*호	1/4				
5	독산동 890-40	대지	121.5	121.5	관악구 대학14길 65-8, ***호(신림동)	조*경	1/4				
6					동대문구 천호대로45가길 *-**(용두동)	박*근	1/4				
7					강남구 삼성로69길 20, ***호(대치동)	임*혜	1/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8					영등포구 디지털로48가길 16(대림동)	권*휘	1/4				
9	독산동 890-41	대지	121.5	121.5	동작구 사당로16가길 12-12, ***호(사당동)	박*진	1/4				
10					강남구 강남대로 321, ***호(서초동)	최*연	1/4				
11					서초구 마방로4길 16-12, ***호(양재동)	음*미	1/4	종로구 세종대로 163(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근저당권	
12					금천구 문성로 24-1, ***호(독산동)	김*영	1/4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구로디지털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관악구 남부순환로****-**	이*용	근저당권	
13	독산동 890-42	대지	121.5	121.5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허 *	1/4				
						김*순					
14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36, ***동 ***호(용두동)	안*자	1/4				
15					금천구 문성로 26, ***호(독산동)	조*진	1/4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근저당권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1, ***동 ***호(호계동)	위*식	근저당권	
16					관악구 행운2길 15-**, ***호(봉천동)	김*정	1/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의 명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독산동 890-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20.8	주택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동 ***호(호계동)	위*윤				
2						강동구 양재대로95길 **-*(성내동)	남*수				
3						강남구 자곡로 175, ***동****호(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박*연				
4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31-11, ***호	정*호				
5	독산동 890-4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39.36	주택	관악구 대학14길 65-8, ***호(신림동)	조*경				
6						동대문구 천호대로45가길 *-**(용두동)	박*근				
7						강남구 삼성로69길 20, ***호(대치동)	임*혜				
8						영등포구 디지털로48가길 16(대림동)	권*휘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9	독산동 890-4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39.36	주택	동작구 사당로16가길 12-12, ***호(사당동)	박*진				
10						강남구 강남대로 321, ***호(서초동)	최*연				
11						서초구 마방로4길 16-12, ***호(양재동)	음*미	종로구 세종대로 163(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근저당권	
12						금천구 문성로 24-1, ***호(독산동)	김*영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구로디지털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관악구 남부순환로****-**	이*용	근저당권	
13	독산동 890-4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39.36	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허 *				
							김*순				
14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36, ***동 ***호(용두동)	안*자				
15						금천구 문성로 26, ***호(독산동)	조*진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근저당권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1, ***동 ***호(호계동)	위*식	근저당권	
16						관악구 행운2길 15-**, ***호(봉천동)	김*정				

◈ 강남구고시 제2023-199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table>
<tr><td>정비 기간</td><td colspan="3">2023년 11월 17일 ~ 2027년 12월 31일</td></tr>
<tr><td>대상 소하천</td><td colspan="3">율현천, 대왕천</td></tr>
<tr><td>총사업비</td><td>16,417,000 천원</td><td>총길이</td><td>1.35km</td></tr>
<tr><td rowspan="2">목적 및 정비 효과</td><td>재해예방</td><td colspan="2">· 홍수에 의한 제방 등 하천시설물 피해방지
· 주택 및 농경지, 주민 수해방지</td></tr>
<tr><td>생활환경개선</td><td colspan="2">· 주변 공원(돌산체육공원, 수서역세권 근린공원)과 연계한 친수 휴식공간 개선
· 친환경호안 적용, 하천유지유량 확보 등을 통한 친환경적 소하천 조성
·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한 생활환경개선</td></tr>
</table>

열람서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2.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강남구고시 제2023-200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예정지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폐지) 사유
한 강	율현천	세곡동 82-1번지 등 79필지	18,93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
	대왕천	세곡동 82-7번지 등 13필지	7,856	

첨부서류: 1.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율현천 소하천예정지 지정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비고
	시구	리						
1	강남	세곡	82-1	도	1,453	73	서울특별시	
2	강남	세곡	82	전	948	97	유재상	
3	강남	세곡	82-2	구	676	657	서울특별시	
4	강남	율현		무	-	4		
5	강남	율현	137-1	도	976	1	서울특별시강남구	
6	강남	율현	산10-1	임	26,319	21	에스케이해운주식회사	
7	강남	율현	149	답	549	38	정종호	
8	강남	율현	146-31	답	985	83	최옥덕	
9	강남	율현	146-30	답	922	125	임진규	
10	강남	율현	146-29	답	902	91	신혜성	
11	강남	율현	146-28	답	1,388	208	김무준	
12	강남	율현	146-11	답	1,835	31	이정순	
13	강남	율현	146-10	답	2,470	64	정수진	
14	강남	율현	146-49	답	913	167	조상태	
15	강남	율현	151-4	답	826	55	장순자	
16	강남	율현	150-5	답	348	71	국(국토교통부)	
17	강남	율현	150-7	답	188	27	국	
18	강남	율현	150-2	답	494	3	국(국토교통부)	
19	강남	율현	149-4	천	209	15	서울특별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비고
	시구	리						
20	강남	율현	146-50	답	603	484	국	
21	강남	율현	146-48	답	298	212	국	
22	강남	율현	146-24	답	471	373	정현정	
23	강남	율현	146-45	답	362	233	에스에이치공사	
24	강남	율현	103-11	임	20	20	김광출	
25	강남	율현	88-6	전	1,322	8	에스에이치공사	
26	강남	율현	88-4	전	66	22	에스에이치공사	
27	강남	율현	88-5	전	36	35	에스에이치공사	
28	강남	율현	88-2	전	79	51	에스에이치공사	
29	강남	율현	103-15	답	328	154	에스에이치공사	
30	강남	율현	103-9	임	588	477	에스에이치공사	
31	강남	율현	89-6	전	420	159	에스에이치공사	
32	강남	율현	103-14	답	609	350	에스에이치공사	
33	강남	율현	103-3	답	582	192	에스에이치공사	
34	강남	율현	149-8	천	259	259	서울특별시	
35	강남	율현	149-5	천	4,748	4,748	서울특별시	
36	강남	율현	146-32	답	1,161	199	김용조	
37	강남	율현	146-36	답	1,322	144	김용조	
38	강남	율현	146-37	답	1,322	69	김기범	
39	강남	율현	146-38	답	1,322	2	김정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비고
	시구	리						
40	강남	율현	146-33	천	3,203	3,203	서울특별시	
41	강남	율현	102-16	전	135	34	에스에이치공사	
42	강남	율현	102-2	잡	231	153	에스에이치공사	
43	강남	율현	103-1	답	20	17	에스에이치공사	
44	강남	율현	101-2	잡	311	268	에스에이치공사	
45	강남	율현	100-2	잡	58	29	에스에이치공사	
46	강남	율현	100-15	잡	52	32	에스에이치공사	
47	강남	율현	146-23	답	2,155	119	에스에이치공사	
48	강남	율현	146-44	답	912	667	에스에이치공사	
49	강남	율현	146-8	답	1,455	3	윤광식	
50	강남	율현	143-1	전	786	117	에스에이치공사	
51	강남	율현	142-5	답	674	118	에스에이치공사	
52	강남	율현	142-18	전	871	528	에스에이치공사	
53	강남	율현	142-17	전	298	247	에스에이치공사	
54	강남	율현	142-16	전	106	106	에스에이치공사	
55	강남	율현	142-15	전	112	21	에스에이치공사	
56	강남	율현	77-26	도	749	51	에스에이치공사	
57	강남	율현	75-2	전	1,736	62	에스에이치공사	
58	강남	율현	76-4	전	493	286	에스에이치공사	
59	강남	율현	76-5	전	436	261	에스에이치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비고
	시구	리						
60	강남	율현	77-16	전	2,429	680	에스에이치공사	
61	강남	율현	78-1	전	1,547	250	에스에이치공사	
62	강남	율현	79-3	전	673	178	에스에이치공사	
63	강남	율현	79-2	전	581	148	에스에이치공사	
64	강남	율현	84-3	전	1,083	224	에스에이치공사	
65	강남	율현	85-4	전	828	219	에스에이치공사	
66	강남	율현	86-6	전	2,872	386	에스에이치공사	
67	강남	율현	87	전	3,749	31	에스에이치공사	
68	강남	율현	86-3	전	23	18	에스에이치공사	
69	강남	율현	86-7	전	128	83	에스에이치공사	
70	강남	율현	100-11	잡	88	42	에스에이치공사	
71	강남	율현	100-7	잡	106	59	에스에이치공사	
72	강남	율현	93-5	천	163	98	서울주택도시공사	
73	강남	율현	99-8	잡	194	37	에스에이치공사	
74	강남	율현	100-14	천	39	11	에스에이치공사	
75	강남	율현	100-10	천	1	1	에스에이치공사	
76	강남	율현	100-9	천	557	106	에스에이치공사	
77	강남	율현	101-1	잡	319	12	에스에이치공사	
78	강남	율현	101-15	임	83	4	에스에이치공사	
79	강남	율현	101-17	잡	67	1	에스에이치공사	

□ 대왕천 소하천예정지 지정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비고
	시구	리						
1	강남	세곡	82-7	구	2,134	2,034	서울특별시	
2	강남	세곡	54	천	48,055	4,828	서울특별시	
3	강남	세곡	43-20	답	1,578	108	강윤구	
4	강남	세곡	81-9	답	378	30	이웅수	
5	강남	세곡	78-1	전	5,544	67	이웅수	
6	강남	세곡	43-10	전	5,375	48	김경순	
7	강남	세곡	43-5	전	856	113	표상기	
8	강남	세곡	78-2	답	1,064	119	이웅수	
9	강남	세곡	77-1	전	1,653	121	김재순	
10	강남	세곡	43-12	전	6,231	110	김경순	
11	강남	세곡	77-9	전	1,053	61	홍연이	
12	강남	세곡	77-2	답	2,288	49	곽정순	
13	강남	세곡	75-2	전	14,463	168	김영석	

□ 지형도(대왕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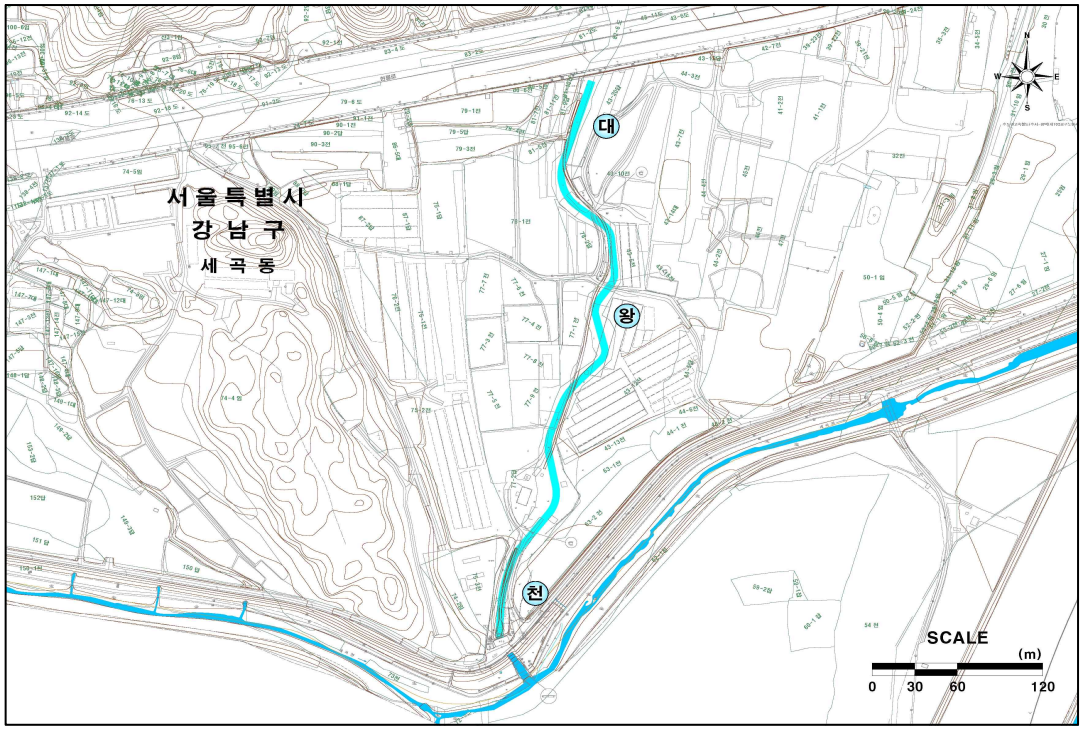

□ 지형도(율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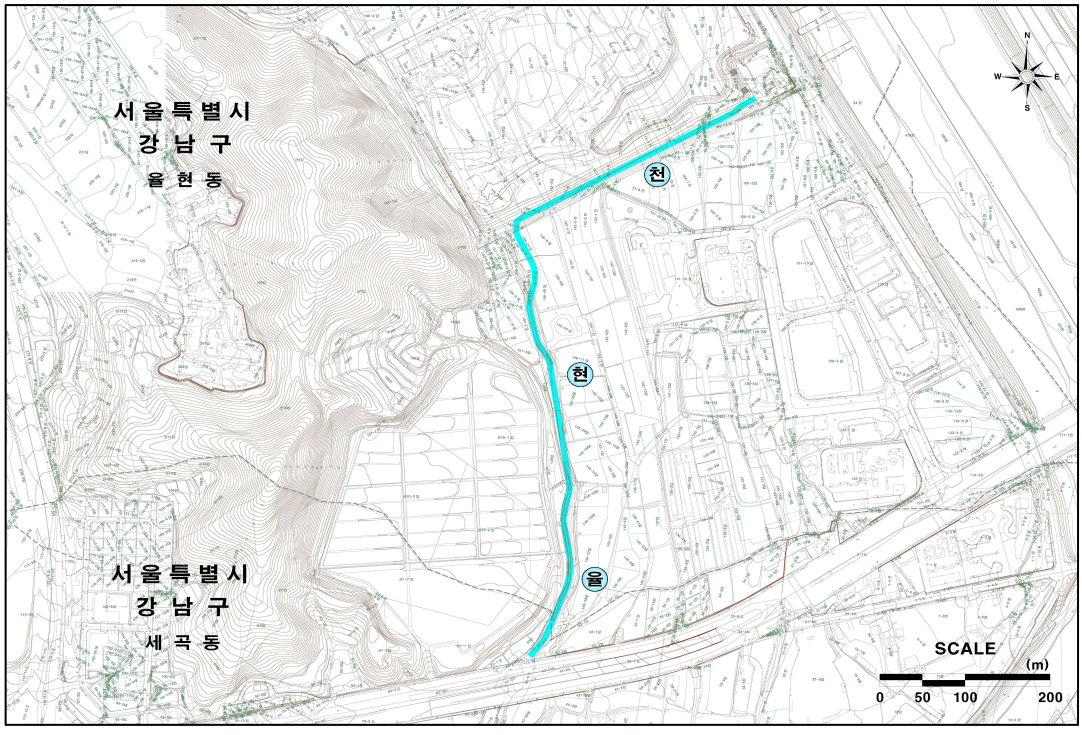

□ 위치도(대왕천)

□ 위치도(대왕천)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3-1468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649호(2023.05.1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0.2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02-2148-2813, fax 02-2148-5830)

다.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대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획지계획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기정	획지선	북촌7구역 율곡로구역 특별계획구역 삼청동 157-83번지 외4필지 북촌6구역	• 간선가로변 일대 및 대규모부지의 필지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고 획지 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 가구 및 획지 15-1의 건축행위는 안동별궁 별채 보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변경	획지선	북촌7구역 율곡로구역 특별계획구역 삼청동 157-83번지 외4필지	• 간선가로변 일대 및 대규모부지의 필지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고 획지 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북촌6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 가구 및 획지 15-1의 건축행위는 안동별궁 별채 보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기정	대지 분할 가능선	특별계획구역	• 대지의 여건과 효용성을 위하여 분할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정함

※ 향후 가구 및 획지 15-1에 경우 획지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신설	16	1	북촌길 및 진입가로 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 구역	소격동	144-2	1,513.5㎡	1,728.4㎡	획지선 지정
			북촌6구역		소격동	148-5	214.9㎡		

※ 16-1 획지에서 증축 시 높이기준은 증축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계획 신설 사유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1	획지선 지정	144-2, 148-5번지는 동일 소유 필지로 148-5번지의 맹지해소 및 기존 문화·전시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획지계획의 지정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보행 통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전체	• 기존 골목길을 포함하여 공동개발 시 인접부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골목길의 형태를 따르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권장 •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분 1층부를 피로티 형태 (높이 6m이상)로 조성가능 • 연결되는 인접대지 및 골목길과 일치하는 포장재료 사용	• 본 지침 제19조에 의한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한 건축물배치와 연계
		대규모 획지 내	• 대규모 획지로 단절된 가로 간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대지 내 보행통로 조성을 권장함	-
변경	공공보행 통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전체	• 기존 골목길을 포함하여 공동개발 시 인접부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골목길의 형태를 따르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권장 •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분 1층부를 피로티 형태 (높이 6m이상)로 조성가능 • 연결되는 인접대지 및 골목길과 일치하는 포장재료 사용	• 본 지침 제19조에 의한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한 건축물배치와 연계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대규모 획지 내	• 대규모 획지로 단절된 가로 간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대지 내 보행통로 조성을 권장함	-
		획지 16-1	• 남측 현황 골목길에서 율곡로1길로 이어지는 구간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신설

■ 공공보행통로 변경 사유서

구분	적용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 16-1	• 신설 1개소 - 148-5번지 일원 - B = 1.5m 이상, L= 20m	• 보행로 확보를 위해 현황 골목길에서 율곡로1길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 공공보행통로 신설	신설

라)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연락처(열람장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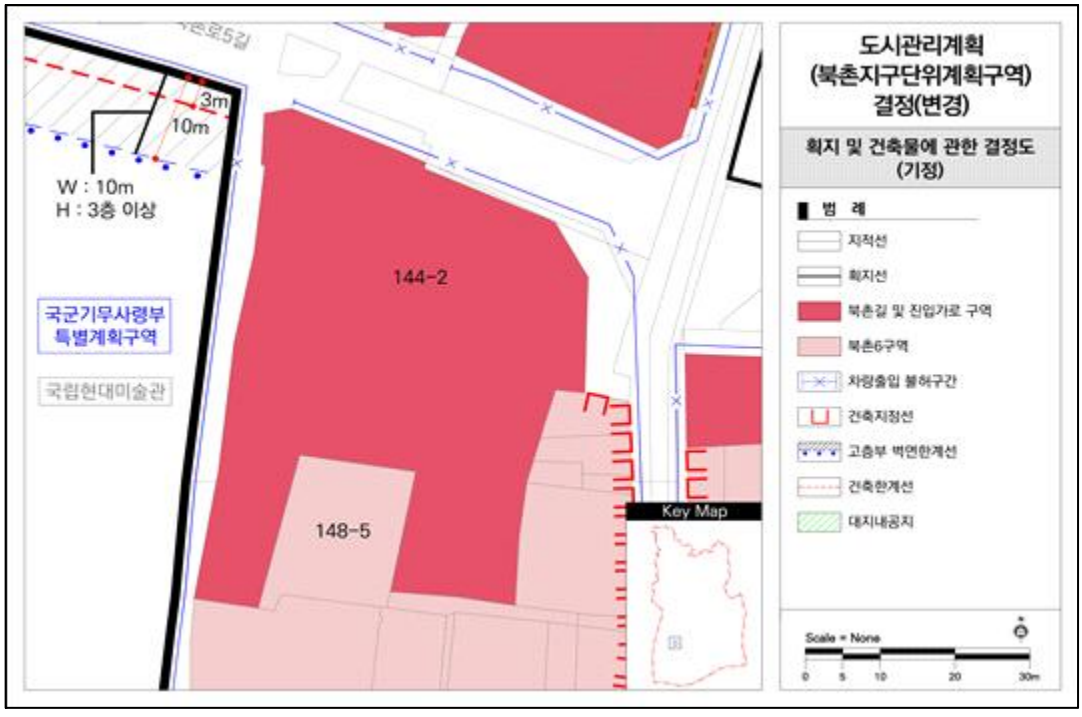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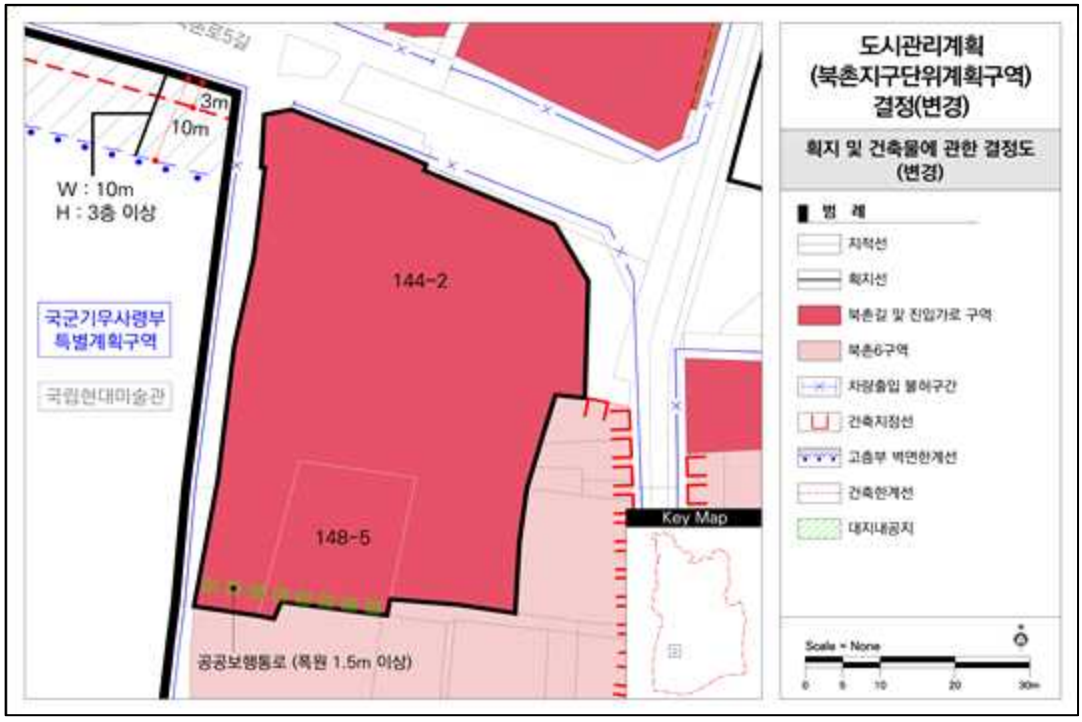

◈ 중구공고 제2023-1046호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8호(2022. 3.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중림동 500-4~419-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00-4~419-9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명 칭 : 중림동 500-4~419-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 규모 : 도로개설 폭10m, 연장 8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중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중림동 500-4~419-9간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중림동 438-1	대	0.6	0.6	김O임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김O하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김O형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2	중림동 438-2	대	0.8	0.8	김O임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김O하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김O형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3	중림동 488	대	105.8	0.4	최O순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00층				
4	중림동 489	대	46.3	18.6	최O순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00층				
5	중림동 491	대	89.9	5.1	최O순	서울시 중구 중림동 000, 00층				
6	중림동 498-1	대	28.6	28.6	서울특별시 중구					
7	중림동 498-2	대	1.9	1.9	서울특별시 중구					
8	중림동 500-4	도	339.1	339.1	서울특별시 중구					
9	중림동 501	도	39.4	39.4	서울특별시 중구					
10	중림동 564	대	29.4	7.6	김O례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OOO	서울특별시 중구			
11	중림동 565	대	28.4	4.7	김O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0길00, 000호				
					한O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OOO,OOO				
12	중림동 566-1	대	15.5	4.5	서울특별시					
13	중림동 584-5	도	108.5	108.5	서울특별시					

※ 상기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정정 예정임.

◈ 노원구공고 제2023-179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51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2116-3864)
다. 공고방법 : 2개 일간지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 고시·공고), 시보, 구보,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게재
라.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산 51번지	-	증) 7,426	7,426	

- 건축물의 범위

시 설 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비 고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산51번지	20 이하	50 이하	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7,426㎡	●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주변지역의 노후복지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공공서비스를 향상

마.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바.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3-17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0-83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12호(2022.02.0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235호(2022.12.22.)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흥동 261-3~338-5 외 6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 변경, 물건조서 추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3. 본 내용을 물건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개선과(☎ 02-3153-9754)에 비치하오니,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및 물건조서 추가
나.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라. 사업규모(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20.06.25. ~ 2025.12.31.(기정 2023.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변경 없는 토지조서 생략)
아. 열람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

붙임 : 물건조서 1부. 끝.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대흥동 328-85	건물 및 담장	연와조 (1층)	6	㎡	주택	박*선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대흥동)				
2	대흥동 401-1	건물	연와조 (1층)	1	㎡	주택	박*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대흥동)				
3	대흥동 328-86	건물 및 담장	연와조 (1층)	2	㎡	주택, 근린생활 시설	문*선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대흥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신천동), **지점	*** **** 중앙회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대흥동 ***-**
4		발코니 및 계단	연와조 (2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5		진입계단	연와조 (2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유*목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대흥동)				
6	대흥동 401-1	건물 및 담장	연와조 (1층)	2	㎡	주택, 근린생활 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7	대흥동 340-1	건물	목조 (1층)	9	㎡	근린생활 시설	정*악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동 ***호 (대흥동, 마포나루타운)				
8		건물	목조 (1층)	9	㎡	근린생활 시설						
9		화장실	목조 (1층)	2	㎡	근린생활 시설	정*달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동 ***호 (대흥동, 마포나루타운)				
10	대흥동 401-1	건물 및 담장	목조 (1층)	7	㎡	근린생활 시설						
11	대흥동 341-2	건물	연와조 (1층)	23	㎡	주택 (다가구)	오*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2	대흥동 401-1	건물	연와조 (1층)	4	㎡	주택 (다가구)						
13	대흥동 346-1	건물	목조 (1층)	7	㎡	근린생활 시설	김*덕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동 ****호(상수동, 상수두산위브아파트)				
14		건물	목조 (1층)	9	㎡	근린생활 시설						
15		건물	목조 (2층)	17	㎡	근린생활 시설						
16	대흥동 401-1	건물	목조 (1층)	1	㎡	근린생활 시설	신*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동 ****호(상수동, 상수두산위브아파트)				
17		건물	목조 (2층)	1	㎡	근린생활 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8	대흥동 401-1	건물 및 담장	연와조 (1층)	4	㎡	주택	정*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대흥동)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망원동 57-433 ~ 57-448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망원동 57-432 망원동 57-423 망원동 57-434	계단, 데크	연와조 (1층)	4	㎡	주택, 근린생활시설	김*정 (33.31/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2		건물	연와조 (1층)	2	㎡	주택, 근린생활시설						
3		건물	연와조 (1층)	9	㎡	주택, 근린생활시설	김*석 (46.26/1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 ***호 (신사동, 선정아파트)				
4		창고	연와조 (1층)	2	㎡	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옥 (20.43/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5		대문	-	1	식	주택, 근린생활 시설						
6		건물	연와조 (2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7	망원동 57-329	대문	-	1	식	주택	이*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기존 무허가
8		건물	세멘조 (1층)	20	㎡	주택						
9		건물	세멘조 (1층)	5	㎡	주택						
10	망원동 57-328	건물	연와조 (지층)	6	㎡	주택, 근린생활 시설	김*심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망원동)				
11		건물	연와조 (1층)	6	㎡	주택, 근린생활 시설						
12		건물	연와조 (2층)	6	㎡	주택, 근린생활 시설	박*우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 (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13		가건물 (창고)	연와조 (1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대문	-	1	식	주택, 근린생활 시설						
15		수도계량기	-	1	식	주택, 근린생활 시설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상수동 356-14 ~ 272-2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상수동 356-22	철제구조물 및 담장	일반 철골구조 (1층)	6	㎡	근린생활 시설	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호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A)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망원동 57-53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전*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4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5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4층)	1	㎡	주택, 근린생활 시설						
6	망원동 375-18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층)	0.8	㎡	주택, 근린생활 시설						
7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층)	0.5	㎡	주택, 근린생활 시설						
8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층)	0.5	㎡	주택, 근린생활 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9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4층)	0.5	㎡	주택, 근린생활 시설						
10	망원동 57-534	건물	부락조 (1층)	21	㎡	주택	이*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건물 미등기
11		담장	-	1	식	주택						
12		대문	-	1	식	주택						
13	망원동 57-536	건물	세멘조 (1층)	21	㎡	주택	윤*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기존 무허가
14		담장	-	1	식	주택						
15		대문	-	1	식	주택						
16	망원동 57-538	담장	세멘조 (1층)	2	㎡	주택						
17	망원동 57-548	건물	조적조 (1층)	10	㎡	주택	태*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가길 **, ***동 ***호 (양평동6가, 동양아파트)				
18		계단	조적조 (1층)	3	㎡	주택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9		건물	조적조 (2층)	10	㎡	주택						
20		건물	조적조 (3층)	10	㎡	주택						
21		건물	조적조 (4층)	15	㎡	주택						
22	망원동 57-559	계단, 기둥	연와조 (지층)	1	㎡	근린생활시설	주식회사다*** ***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길 **, ***-***호 (구로동, 디지털탑프라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가), 테헤란로 금융센터	주식회사* ***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망원동 **-*** [건물] 양천구 신정동 *** 외 *필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23		계단, 기둥	연와조 (1층)	1	㎡	근린생활시설						
24		계단, 기둥	연와조 (2층)	1	㎡	근린생활시설						
25		계단, 기둥	연와조 (3층)	1	㎡	근린생활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26	망원동 57-560	담장	연와조 (1층)	3	㎡	주택	박*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망원동)				
27	망원동 57-531	건물	세멘 부럭조 (1층)	21	㎡	근린생활 시설	김*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 삼풍아파트 ***				
28		건물 및 가건물	세멘 부럭조 (1층)	6	㎡	근린생활 시설						
29		통로	세멘 부럭조 (1층)	4	㎡	근린생활 시설						
30	망원동 57-514	대문	-	1	식	주택, 근린생활 시설	홍*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				
31		담장	-	1	식	주택, 근린생활 시설						
32	망원동 57-516	대문	-	1	식	주택	이*림 (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망원동, *층)				
33		담장	-	1	식	주택	이*재 (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번길 **-*, ***호(보정동, 경성아트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34	망원동 57-347	대문	-	1	식	주택						
35		담장	-	1	식	주택						

◈ 구로구공고 제2023-217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로구공고 제2023-1119호(2023.06.08.)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280)

다.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34,212.0	-	134,212.0	100.0	-
주거지역	소 계	134,212.0	-	131.510.3	98.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990.6	감) 2,701.7	116,288.9	86.6	
	준주거지역	15,221.4	-	15,221.4	11.3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2,701.7	2,701.7	2.0	

※ 상기면적은 CAD 면적으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련도면 : 생략 (열람장소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3-19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23호(2016.7.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45호(2019.6.27.), 제2019-69호(2019.8.16.), 제2020-70호(2020.6.18.), 제2021-283호(2021.12.2.)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16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2지역)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123 등 12필지
- ○ 면 적 : 60,553㎡
- ○ 내 용 : 토지보상 60,553㎡,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3-191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고시 제2020-60호(2020.06.04.), 제2020-172호(2020.11.19.), 제2022-181호(2022.12.08.)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 ○ 면 적 : 15,964㎡
- ○ 내 용 : 공원조성(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장물 1동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23-205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1-37호(2021.02.25.) 및 송파구고시 제2021-48호(2021.03.11.)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고시되고, 송파구고시 제2021-261호(2021.12.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철도 5호선 방이역과 도시철도 8호선 장지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 기 정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17-2번지 일대(방이역), 장지동 216-2번지 일대(장지역)

○ 변 경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216-2번지 일대(장지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기 정
- 명 칭: 5호선 방이역 2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8호선 장지역 1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 변 경
- 명 칭: 8호선 장지역 1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기 정
- 면 적: 5호선 방이역 205.1㎡(일시 151.8㎡), 8호선 장지역 197.1㎡(일시 252.2㎡)

○ 변 경
- 면 적: 8호선 장지역 197.1㎡(일시 252.2㎡)
- 규 모: 외부 에스컬레이터 1200형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교통공사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1.12.30. ~ 202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2),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02-6110-5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계 내 한강 (암사2취수장 인근)	선박 2척 (362㎡)	암사2취수장 지반조사	2023.11.24. ~ 2023.11.25.	2023.11.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 내 한강 (광진교 인근)	선박 2척 (362㎡)	광진교 조류방지망 설치 중 선박운항	2023.11.27. ~ 2023.11.29.	2023.11.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가양대교 ~ 아라갑문 인근)	선박 3척 (1,274㎡)	자재운송	2023.11.27. ~ 2023.11.28.	2023.11.23.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7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이수엔지니어링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4층 A4-68호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468

 - 면 적 : 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시추조사 및 토질시험 시료채취
 - 개 요 : 시추조사 1개소(장비면적 3m x 6m)

5. 점용기간 : 당초 2023.10.16. ~ 2023.12.14.
 변경 2023.10.16. ~ 2024.03.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24
 - 면 적 : 770m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 내 역 : (당초) 반려견 놀이시설 2개소, 이동형 펜스, 소변기 4개소, 배변봉투함 2개소 등
 (변경) 당초 시설물에 보안등 4개소, CCTV 2개소 추가 설치

5. 점용기간 : 2023.09.14. ~ 2028.12.31.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3개월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